

2021 인재양성 프로그램

연구자 최종 결과보고서

환경문제의 인권적 전환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Human Rights Transition of Environmental Problem

Focusing on the residents environmentally vulnerable areas in northwestern

Chuncheongnam-do

2022. 1. 31

김민성(특정주제연구자)

제 출 문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환경문제의 인권적 전환: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의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31일

연구 원 : 김민성(특정주제연구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초록

연 구 원	김민성	구분	특정주제연구자
연구제목	한글	환경문제의 인권적 전환: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영문	Human Rights Transition of Environmental Problem: Focusing on the residents environmentally vulnerable areas in northwestern Chungcheongnam-do	
연구기간	2021. 3. 1. ~ 2021. 12. 31.		
색인어	한글	인권, 환경권, 인권사회학,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발전권, 인권정전, 권리의 순환, 권리조건, 권리주장, 권리효과, 권리꾸러미, 권리의 난제	
	영문	Human Rights, Environmental Rights, The Sociology of Human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s Human Rights, Rights to Development, Human Rights Canon, Rights Circulation, Rights Conditions, Rights Claims, Rights Effects, Rights Bundles, Rights Puzzle	

본 연구는 권리의 난제로 설정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과 환경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전달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환경권이 세대별 인권개념을 가로지르는 통합적 구조를 내재하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초월한 ‘집단으로서의 연대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추동하는 개념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의 원인시설들로 인해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충남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례를 ‘인권정전’과 ‘권리의 순환’을 통해 설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결과,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은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개발 및 발전할 권리,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에 저항·의견을 표현할 권리’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권리주장이 형성된 배경에는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세계화의 이름으로 각국에 도입된 형평성, 정의, 지속가능성을 배제한 경제개발정책, 성장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정치·사회적 권리조건이 존재한다. 이에 편승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유해물질 최대배출원인 대규모 산업시설과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인구가 적고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특정 지역에 집중시켰다. 현재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은 정부

의 단기 이익 중심적 환경정책의 역효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가령 석탄화력발전시설이 밀집해 있는 당진은 전국에서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 도시로 꼽혔고, 주민들은 에너지 불평등, 토지와 대기 등 생태자원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지역 내 기업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고 및 안전 관리와 대처에 안일하였고, 민주적 논의로의 진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금전으로 재난 피해를 무마하려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 지역의 ‘권리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 장수 권리꾸러미’,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꾸러미’, ‘평안할 권리꾸러미’, ‘환경행동과 발전 권리꾸러미’, ‘자연의 번성 권리꾸러미’를 제시하고 새롭게 형성될 권리조건 또한 예측하였다.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존 인간중심적 가치나 제도적 관행을 생태적 원리를 중심으로 재편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가, 시민사회, 시장 영역의 행위자는 기존의 배타적 권위 관계를 버리고 생태적 관점을 바탕으로 연대하며 결합해야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environmental problems that can be set as a 'rights puzzle' are describ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actual pain that residents are feeling. Through this,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more deeply abou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that have not been noticed. This research proves that environmental rights have an integrated structure that crosses the generations of Human rights and strongly drives the need for 'solidarity rights' beyond individual rights.

To this end, cases of residents in northwestern Chungcheongnam-do, who have been suffering from facilities that cause the climate crisis for a long time, were explained through 'human rights canon' and 'rights circulation' and a solution was sought.

According to the survey, residents of northwestern Chungcheongnam-do require these environmental rights: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ecological environment, the right to enjoy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 right to develop in satisfactory living conditions, the right to assistance in all disasters, protecti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and to express opinions etc.

Behind the formation of these 'rights claims' are industrial structures that depend on carbon energy,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excluding equity, justice, and sustainability introduced in each country in the name of globalization, also political and social 'rights conditions' buried in economic growth ideology.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is has concentrated large-scale industrial facilities and coal-fired power plants, which are the biggest sources of harmful substances, in certain areas with small populations and concentrated vulnerable groups.

Currently, residents of environmentally vulnerable areas in northwest Chungcheongnam-do were feeling changes due to energy policy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Chungcheongnam-do. In particular, they were facing the adverse effects of the government's short-term profit-oriented environmental policy. For example, Dangjin, where a thermoelectric power plant is concentrated, was considered the city with the greatest risk of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the country. Residents were subjected to

economic discrimination in which they were not paid an appropriate price for energy inequality and ecological resource use. The immature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further fueled inequality in the city. Companies neglected about the safety management required by residents. In addition, despite the possibility of democratic progress, they tried to cover up disaster damage with mone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ed 'Healthy longevity rights bundles', 'Personality intact developmental rights bundles', 'Peaceful rights bundles', 'Environmental behavior and development rights bundles', and 'Nature prosperity rights bundles'. These five 'rights bundles' supplement the traditional approach that has been proposed to solve local problems, while specifically presenting the form of environmental rights required for the region and extending the form of infringed right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facing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areas in northwest Chungcheongnam-do is possible when the existing anthropocentric values or institutional practices are reorganized around ecological principles. To this end, actors in the areas of the state, civil society, and market must abandon the existing exclusive authority relationship and combine them in solidarity based on an ecological perspective.

요약문

I. 제목

- 환경문제의 인권적 전환: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권리의 난제 해결을 위한 인권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 충남 서북부에 밀집된 산업시설로 주민 거주 환경 및 안전 저해, 지역공동체 파괴
 - 산업시설이 초래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집중하는 전통적 접근방식 보완 필요
 - 인권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인권사회학적 접근으로 권리의 난제 해결 방안 모색
- 인권사회학적 이론틀로 분석한 환경문제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제시
 - 국제인권 개념에 근거해 사회문제를 ‘인권사회학적’ 이론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연구 수행
 - ‘권리의 순환’이라는 인권사회학적 분석틀로 환경문제를 분석하여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입증
 - 환경과 인권의 중첩영역을 발굴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제안 도출

III.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대안 도출
- 공간적 범위
 - 당진시 고대1리, 고대2리, 교로1리, 교로3리, 삼봉4리, 서산시 독곶1리, 화곡1리(총 7개 마을)
- 시간적 범위
 - 2021년 2월~2022년 1월

IV. 연구의 주요 발견

○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입증

-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고유의 권리꾸러미* 제시

*건강 장수 권리꾸러미,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꾸러미, 평안할 권리꾸러미, 환경행동과 발전 권리꾸러미, 자연의 번성 권리꾸러미

- 인권정전 분석하여 재산권, 생명권 등에 한정되었던 환경권 구체화 및 외연 확장

○ 의무담지자-권리보유자 규정 및 역할 확인

- 인권 가해 주체로서의 국가, 가해의 매커니즘을 형성하는 사회구조, 가해의 수단이 되는 기업의 인권 의무와 책임 확인
- 성장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국가의 의도로 인권침해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었음을 확인
- 인권 책임의 물리적, 논리적, 내용적 층위 개념을 제시하여 환경권 실현 대상을 확장

○ 권리의 난제 해결을 위한 인권사회학의 이론적 가능성 확인

- 인권 문제의 구조적 분석을 통한 문제의 근본 원인 파악
- 인권당사자에 환경권이라는 언어를 부여하여 인권 상황 진단 및 증진 방안 제시
- 인권운동과 환경운동의 통합 필요성 확인

V. 타 논문들과의 차별점 및 기여

○ 실증사례를 인권이론과 결합시킨 연구

-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인권침해에 노출된 지역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 권리 목록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
- 한국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으로 인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지역과 공동체에 대안 제시

○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문제를 다루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연구

○ 주로 법리적 이해에 한정되었던 인권을 본격적인 사회학 담론으로 확대

○ 인권사회학이라는 최신 이론을 통해 환경 논의의 수준 향상, 인권실현 목표 제시, 한국 사회에서 제도권 인권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

VI.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공론화 방안 모색
- 국내 상황에 맞는 환경약자 개념 보완과 발전 방안 모색
- 인권사회학을 통한 국내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대안 제시
- 학회지 투고 및 단행본 발간

목 차

1. 서론

가. 연구배경과 목적	1
나. 연구범위	5
다. 연구방법	6
라. 조사 질문 및 분석의 근거	12
마. 분석틀: 권리의 순환과 권리꾸러미	22

2. 이론적 검토

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24
1) 환경권의 형성	24
2) 환경권의 종류	30

3. 본론

가.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조건	36
1) 국제사회의 구조적 조건	36
2) 구조적 조건	41
3) 실재적 조건	48
나.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주장과 권리효과	52
1)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속에서 발전할 권리	52
2)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개발 및 발전할 권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환경약자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보호 및 지원	59
3)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에 저항·의견을 표현할 권리	64

4) 권리효과	66
5) 환경을 이유로 강제퇴거 되지 않고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권리, 모든 재난에 대한 원조를 받을 권리	68
다.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꾸러미	72
1) 건강 장수 권리꾸러미: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요한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 ..	73
2)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꾸러미: 자신의 재능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	75
3) 평안할 권리꾸러미: 전쟁, 범죄, 구조적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	79
4) 환경행동과 발전 권리꾸러미: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 저항, 의사 표현하는 데 필요한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	81
5) 자연의 번성 권리꾸러미: 자연 고유의 내재적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 조성하는 데 필요한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	83

4. 결론

가. 권리조건	85
나. 권리주장	87
다. 권리효과	87
라. 제언: 예상되는 권리조건	89

참고문헌	91
------------	----

부록	99
----------	----

표 목 차

[표 1-1] 표본 추출 기준	6
[표 1-2] 설문조사지의 구성과 질문별 의도	9
[표 1-3] 심층면접 대상자	11
[표 1-4] 인권정전에서 인정하는 환경권의 책임과 의무	13
[표 1-5] 인권정전에서 인정하는 환경권	17
[표 3-1] 설문응답자의 건강상태	49
[표 3-2] 마을의 자연환경 상태	50
[표 3-3] 발전소 및 산업시설이 미친 가장 큰 영향	51
[표 3-4] 마을환경으로 인한 피해 여부	51
[표 3-5] 마을의 자연환경 상태 응답에 따른 피해 인식 여부(교차분석)	52
[표 3-6] 거주지별 마을의 환경이 나쁜 이유(교차분석)	53
[표 3-7] 질병의 종류	55
[표 3-8] 정신적 건강 상태	55
[표 3-9] 가장 피해받은 대상	56
[표 3-10] 가장 피해받은 내용	56
[표 3-11]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 이용에 불편한 점	57
[표 3-12] 마을환경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대상	60
[표 3-13] 마을환경에 대한 정보 출처	60
[표 3-14] 의사표현을 하게 만든 동기	61
[표 3-15] 의사표현의 내용	65
[표 3-16] 마을환경에 대한 책임	66
[표 3-17] 환경문제로 인한 배·보상 경험(교차분석)	69
[표 3-18] 배·보상 규모 및 내용에 대한 응답 상세	70
[표 3-19] 배·보상 당시 및 이후 상황에 대한 응답 상세	70

그림 목차

[그림 3-1] 생산대비 소득 비율	43
[그림 3-2] 소득의 순유출규모와 순유입규모 추이	44
[그림 3-3] 거주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 만족도(명, %)	49
[그림 3-4] 마을의 환경이 나쁜 이유-환경오염의 심화 때문에 상세(명, %)	54
[그림 3-5] 피해받은 경우 의견을 나타낸 방법(명, %)	65

1. 서론

가. 연구배경과 목적

충남 서북부지역은 기후위기의 원인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석탄화력 발전소 30기가 밀집된 이 지역에서는 국내 총 발전전력량의 18.9%에 달하는 전력이 생산되며(한국전력공사, 2020)¹⁾, 그중 62% 이상이 수도권에 공급된다(송병훈, 2019). 당진석탄화력발전소(이하 당진화력) 동쪽 30km 반경 이내에는 철강 및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서산에는 대규모 화학공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첫째, 지역경제 구조가 바뀌고 인구가 증가했다. 석유화학단지와 당진화력, 각종 산업단지가 완공되면서 농·어업 위주의 지역 경제가 2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대기업들의 지역 투자가 이어졌다. 산업시설과 관련된 소규모 작업장도 생겨났다.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주인구가 밀집된 도시 중심엔 산업시설의 배후지원역할을 하는 3차 산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둘째,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오염물질은 당진화력과 같은 공공발전시설과 산업시설 내 공정로 및 연소시설이 운영되는 전 과정에 걸쳐 배출된다. 벤젠, 다이옥신 등의 유해인자, 중금속 성분이 섞인 비산먼지 또한 끊임없이 생성된다. 에너지산업 및 제조업 연소 과정에서 필요한 냉각수는 해양으로부터 얻는데, 공정 이후 인근 해역에 배출되는 온배수는 해양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김, 미역 등의 조류 양식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며, 주민들은 물 부족 및 산업시설 배출 폐수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이인희, 2015). 각종 송전시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당진시에는 765kV급 초고압 송전탑이 80기, 서산시에는 14기가 들어서 있으며 총 163km, 168km의 송전선로가 각 도시를 관통한다.

셋째, 위와 같은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2013년 충남도 내 주요 환경오염지역인 발전소 인근 4개 지역, 당진철강단지 및 서산석유화학단지 주변 등에 거주하는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 인원 다수에서 기준치를

1) 2020년 9월 기준, 한국은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충남에는 18,178MW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단지(서부발전의 태안화력 1~10호기,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10호기, 중부발전의 보령화력 1~8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가 들어서 있다.

넘는 요충 비소가 검출되었으며 철강단지 인근에서 그 수치가 가장 높았다(단국대학교 의료원 환경보건센터·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2014). 발암물질과 유기화합물 배출 또한 심각한 문제다. 주민들은 호흡기계 질병과 스트레스성 질환을 다수 앓고 있으며(명형남, 2014), 당진화력 주변 지역 주민들의 경우 우울 및 공포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이 가장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단국대학교 의료원 환경보건센터·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2014).

산업재해 사고도 충남 서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숨진 사람 62명이다. 현대제철은 2013년 국내 사업장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연합뉴스, 2019). 지역 주민 또한 안전사고에 자주 노출된다.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당진시는 8건, 서산시 10건의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화학물질안전원, 2021년 3월 18일 검색).

넷째, 이러한 문제에 추산되는 사회적 비용²⁾이 증가하고 있다. 충남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4조 5,601억 원이다.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8,486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총 사회적 비용 추정액 2조 2,502억 원 중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한다(이인희, 2013b). 여기에 주민건강과 안전, 지역 내 갈등과 공동체 파괴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등 실제 집행되는 비용은 연간 600억 원 정도다(최정석, 2018). 발전소 5km 반경 주변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³⁾

위의 네 가지 변화는 산업시설 입지 후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룬 언론보도 및 지방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설명하고 행정적 변화를 모색하려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측정 가능한 수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는 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유병요인만을 측정하며,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을 부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나 산업단지에서 발생

2) 사회적 비용은 오염유발요인에 의한 인체 피해,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의 요인을 고려해 추산한 금액이다.

3) 당진시(2015)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보통이다 50.5%, 불만족한다 26.8%), 기금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보통이다 47.4%, 불공정하다 30.4%)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모두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어렵다고 본 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단국대학교 의료원 환경보건센터·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2014: 129). 체감환경에 대한 의견 또는 기술적 한계로 측정할 수 없는 오염은 명확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여겨지며, 측정 가능한 수치로 환원할 수 있는 오염만이 실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한계 속에서 문제 해결 방안은 환경오염 수준의 수치화 및 감축 목표의 지표화, 그리고 적정수준의 오염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자연을 도구적 수단으로 이해한다. 지역의 변화는 대부분 경제적 성장 또는 발전을 위한 척도에 따라 평가된다. 산업시설의 증가로 인해 훼손되거나 사라진 연안 환경 및 야생동물 서식지, 마을의 풍습이나 마을공동체 의식 등은 변화의 결과로만 여겨질 뿐 주요 측정지표나 변수로써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자 개발수단으로 여겨지며, 이용가능성만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자연보호 및 복원을 위한 의무는 명시적 비용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이는 산업시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등을 변인으로써 고려하지 못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이인희·오혜정, 2013: 27).

셋째, 피해 주민들을 수혜자로 바라본다. 언론보도나 정책 연구에서 지역 주민의 환경운동은 대체로 국가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항의, 저항, 갈등 또는 보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다뤄진다. 이들의 대응은 경성에너지체제의 붕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운동이라기보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여겨진다. 주민들이 경험하는 실제적 피해는 산업 발전에 따른 부수적 결과물로 인식된다. 이러한 관점은 피해 주민과 지자체가 받는 보상 비용을 언급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제도 수용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충남 서북부지역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환경문제의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한 패러다임 속에서 발생해 온 ‘전통적인 접근방식’에 의존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접근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충남 서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았으며 왜 권리의 구현을 거부당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의 관점으로 문제를 훑아볼 필요가 있다.

인권사회학자 마크 프레초는 불평등, 착취, 문화 훼손과 환경파괴 등의 형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동안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조치로도 잘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를 ‘권리의 난제’라 이름 붙이고, 사회학적 이론 및 방법론을 차용

하여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마크 프레초, 2020: 88).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인권 문제가 종합된 하나의 응축점으로써, ‘권리의 난제’로써 다뤄져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양한 인권 문제가 피해 지역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제로 사람들이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인권으로써 개념화되거나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해당 문제에 인권을 도입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대중화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구축된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경험을 인권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해당 문제에 특화된 권리꾸러미를 도출함으로써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과 환경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권과 환경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인권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 또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문제를 인권의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3세대 인권인 환경권과 연대권을 입증하고, 그동안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보완한다.

둘째, 단순히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사례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순환’이라는 인권사회학적 개념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선행연구 및 심층면접조사 등을 바탕으로 ‘권리조건’을 파악해 문제의 구조적 서사를 이끌어내고, 환경권 개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집단행동과 같은 ‘권리주장’에 이르게 된 배경과 조건을 알아본다. 또한 그동안의 인권보장 요구에 따른 정치·사회적 변화를 말하는 ‘권리효과’를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예상되는 권리조건을 도출한다.

셋째,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환경과 인권이 중첩되는 정책영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부각시켜 유사한 사례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제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요구되는 인권의 종류들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종합해 ‘권리꾸러미’ 형태로 개념화한다. 또한 구조적 차원의 분석을 토대로 권리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기업, 시민의 역할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시도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다소 소홀하게 여겨져 왔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환경권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와 함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시도는 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운동 영역에 걸쳐 인권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권리 증진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과거 오랜 기간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토개발계획으로 인해 충남 서북부지역과 같이 개발로 인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매우 많다. 본 연구가 위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과 공동체에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석탄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그동안 충남 시민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 및 건강위해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충남도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시설,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등 산업시설이 몰려있는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해 왔다. 2014년, 2015년에는 2013년 실시된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환자대조군을 연구하였고 2017년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보고서의 결과에 기반하여 주민건강 상황 및 환경인식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위 연구의 대상지 중 인구, 연령대, 발전 및 산업시설과의 거리, 마을의 환경 상황, 마을공동체의 활동 상황, 지리적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당진시 고대1리, 고대2리, 교로1리, 교로3리, 삼봉4리와 서산시 독곶1리, 화곡1리 총 7개 마을로 선정하였다.

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각종 문서와 충남도 발간 보고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공문, 언론보도 등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양적·질적 조사를 함께 활용하는 혼합적 연구방법⁴⁾을 채택해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설문지는 총 150부가 배포되었고, 이 중 87.3%인 131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응답자는 조사지역의 인구, 거주지, 연령을 고려하여 유의표집으로 추출하였다.

4)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결합시키는 연구방법을 삼각측량(triangulation)(윤택림, 2004), 또는 삼각검증법(강진숙, 2017)이라고도 한다.

[표 1-1] 표본 추출 기준

(단위: 명, 부)

조사지역			인구	배포부수	회수부수
당진시	송악읍	고대1리	547	23	16
		고대2리	355	14	14
	석문면	교로1리	271	13	12
		교로3리	569	24	13
		삼봉4리	1,444	59	34
서산시	대산읍	독곶1리	147	7	13
		화곡1리	246	10	24
기타			-	-	5*
합계			3,579	150	131

* 주: 기타 응답자 5명은 조사지 인근 마을인 삼봉5리(1명), 초락도리(1명), 화곡2리(2명), 무응답(1명) 거주자로, 조사지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환경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표본에 포함하였음.

* 출처: 각 읍·면 관할주민센터 내부자료. 2021년 2월 9일 기준.

설문조사지는 일상과 건강에 대한 질문, 환경상황에 대한 질문, 환경 인식에 대한 질문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별로 아래 ‘[표 1-5] 인권 정전에서 인정하는 환경권’에서 범주화한 13가지 환경권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외에 통계를 위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또한 인권조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항목의 구성에 OHCHR(2012)의 〈Human Rights Indication〉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설문은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을 혼용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의 경우 구술된 응답을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폐쇄형 질문은 다항선택형 질문과 평정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평정형 질문의 경우 인식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좋다~대체로 좋다~보통이다~대체로 나쁘다~매우 나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항에서 얻어진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Pearson’s X^2 Test), 상황에 따라 피셔의 정확도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SPSS 26.0을 활용하였다.

또한 응답을 표준화할 수 있어 분석과 비교가 용이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문자 보다는 구술 문화에 익숙한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표본 개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2015년경부터 충남지역 문제를

다루는 환경운동단체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현지 주민 일부와 라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을 핵심 정보원으로 하여 심층면접 대상 선정에 이장, 어촌계장, 청년회장과 같은 마을 핵심 지도층은 물론 일반주민 및 지역 내 환경문제 전문가 등 연구 관계자 등과 광범위하게 접촉하였고, 최종적으로 마을과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11명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참여자1]을 시작으로 1회씩 최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자 및 면접 내용을 안내하였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라. 조사질문 및 분석의 근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준비하였다.

〔표 1-2〕 설문조사지의 구성과 질문별 의도

구성	질문 의도*	문항번호	질문 내용
일상과 건강에 대한 질문	6. 행복과 존엄을 주는 환경 속에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8.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SQ5 1 2 2-1 2-2 3	○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가 ○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만한 환경인가 ○ 정신적, 신체적으로 평안한가
환경상황에 대한 질문	4.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속에서 발전할 권리 5.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개발 및 발전할 권리 7.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9. 환경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 1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12. 환경약자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보호 및 지원	4 4-1 5 6	○ 도로, 가로등, 복지관, 경로당, 보건시설, 수도, 전기 등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평등하게 충족시키는 환경인가 ○ 대기, 땅, 바다 등 자연환경은 온전한가 ○ 안전한 생태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 오염이나 환경파괴,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활동에서 자유로운가 ○ 과거에 비해 생활조건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인가
환경 인식에 대한 질문	1. 환경을 이유로 강제퇴거 되지 않고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권리 2.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 3. 환경과 문화를 보존 및 증진하고 환경오염에 저항할 권리	7 8 8-1 8-2 8-3 8-4	○ 현재의 마을환경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재의 마을환경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에 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 지역에서 생산된 부와 자원이 어디에 가장 많이 기여

구성	질문 의도*	문항번호	질문 내용
		9 10 10-1 10-2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오염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오염에 대한 저항을 해 본적이 있는가 ○ 자신이 가진 환경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가 ○ 오염에 대한 저항 시 지지받거나 정당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오염에 대한 저항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가 ○ 현재의 마을환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배상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가 ○ 배·보상관련 결정에 참여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가 ○ 배·보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만족스러운가 ○ 배·보상관련 내용이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13. 재난 등의 이유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원조받을 권리		
	11. 환경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	11	○ 환경관련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받고 있는가
통계를 위한 질문		SQ1 SQ2 SQ3 SQ4	○ 주거형태, 경제적 정보 등 개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 수집은 최대한 지양하고 성별, 거주기간, 연령대, 생업 등 통계 분석에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출

* 질문 의도 아래 기입된 각 항목별 번호는 [표 1-5] 인권정전에서 인정하는 환경권에서 정리된 범주 번호임.

[표 1-3] 심층면접 대상자

구분	성별	나이	지역	거주 기간	소속	특이사항
참여자1	남	50대	당진	30년 미만	○○○○발전소 민간환경 감시센터	해당 센터는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정문 기준 반경 450m 이내에 위치
참여자2	여	30대	당진	10년 미만	당진○○	지역언론사
참여자3	남	40대	당진	20년 미만	○○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 감시센터	해당 센터는 현대제철 고로 맞은편에 있으며, 정문 기준 반경 2km 이내에 위치
참여자4	여	40대	서산	10년 미만	서산태안 ○○○○연합	해당 단체는 대산일반산업단지 반경 25km 이내에 위치
참여자5	남	60대	당진	평생	고대1리 주민	고대1리는 현대제철 정문에서 반경 1.5km, KG동부제철 반경 900m 이내에 위치. 참여자5는 해당 마을에 거주.
참여자6	남	50대	서산	10년 미만	한○○○	석유화학기업으로 대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
참여자7	남	80대	당진	평생	가곡리 주민	가곡리는 현대제철 반경 5km 내에 위치. 참여자7은 현대제철(구 한보철강) 입지 전 해당 부지 소유 및 거주
참여자8	남	60대	당진	30년 미만	교로3리 주민	당진화력발전소와 맞닿아 있는 마을 거주
참여자9	남	50대	서산	20년 미만	○○○○○○ 폭발사고 비상 대책위원회	대산일반산업단지 인근 거주
참여자10	남	40대	당진	타지역 거주	○○제철	제철소로 현대제철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
참여자11	여	40대	충남	타지역 거주	충남연구원	충남 서북부지역 보건환경 전문가

라. 조사 질문 및 분석의 근거

인권과 환경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례로 인권 향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원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환경권, 식량에 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적절한 환경에서 주거할 권리, 자결권 등에 영향을 미친다. 조운재(2019)는 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접근성,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공참여, 사법절차 접근성 확보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어떤 의무가 존재하고, 누가 의무를 부담하며, 책임을 통해 누구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요구한다.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를 국가의 권리 존중의무(respect), 보호의무(protect), 실현의무(fulfill)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행위자 등을 인권법 체제 속에 위치시켜 제재할 수 있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각 의무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역할을 부과하여 권리 이행의 한계를 지운다. 이를 재고하여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인권의 추동력을 반영한 것이 바로 인권정전이다. 인권정전은 국제조약 및 선언, 논평 등의 문헌을 통칭하여 가리키는 용어다. 국내외 인권 관련 기구 또는 위원회, 풀뿌리 단체 등은 인권 증진의 도덕적·정치적 기준을 위해 인권정전을 활용한다(마크 프레초, 2020: 324). 국제사회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인권과 환경과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인권정전을 형성해왔다. 아래의 [표 1-4] 과 [표 1-5] 는 환경권의 지표가 되는 인권정전을 정리한 것으로, ‘2-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서 논의하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 및 의무-권리의 관계를 종합 및 범주화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수행을 위한 질문과 분석의 근거가 된다. 인권정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각 내용의 번호는 각 근거의 번호와 대응한다.

〔표 1-4〕 인권정전에서 인정하는 환경권의 책임과 의무

범주		내용	근거
1	지구와 생명 공동체를 보호할 의무	1. 다양성을 지닌 지구와 생명체에 대한 존중 2. 이해와 동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생명 공동체의 보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할 의무 3.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려로 대할 책임 4. 국가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온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 존중	1. 지구헌장 원칙1 2. 지구헌장 원칙2 3. 지구헌장 원칙15 4.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22조
2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1.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 2. 세대 간(현재세대-미래세대) 요구를 공정하게 충족하면서 환경을 개발할 책임 3. 환경보호, 빈곤퇴치,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4. 지속가능한 개발의 선행조건으로서 성적 평등과 형평을 이룰 책임	1. 스톡홀름 원칙1 2. 리우 원칙3 3. 리우 원칙1, 원칙4, 원칙5, 원칙6 4. 지구헌장 원칙11
3	환경보호를 고려한 자원이용	1. 지구의 능력과 야생동물, 천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자원을 이용할 책임 2. 자국의 자원 개발 시 자국 외 지역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 3. 광물과 화석연료의 채취와 사용에 있어 고갈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 4. 지구의 재생 능력과 인권, 사회의 안녕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소비, 재생의 형태를 적용할 책임, 또한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책임	1. 스톡홀름 원칙2, 원칙3, 원칙4, 원칙14, 원칙15 2. 리우 원칙2 3. 지구헌장 원칙5 4. 지구헌장 원칙7
4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적 대처	1. 생태계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자연의 정화 능력을 넘는 오염을 중단하고 오염을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할 책임 2. 국가의 환경 보호, 보전 및 개선 장려 3. 지구의 생명 부양계를 지키고 종 다양성을 유지하며 자연의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자	1. 스톡홀름 원칙6, 원칙7 2. 산살바도르 의정서 제11조 3. 지구헌장 원칙5

범주		내용	근거
		연과 지구의 보호지역을 수립하고 지킬 책임, 또한 위기에 처한 종, 야생종, 유전자 변형 생물종 등에 대한 조절 노력과 생태계 건강을 관리할 책임 4. 환경보호의 최선책으로 유해요소(독성물질, 군사적 행동 등)를 제거하고 지식이 한정 되었을 경우 예방적 접근을 시도할 책임	4. 지구헌장 원칙6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기업, 각종 국제기구의 지원 및 협력	1.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구 상태를 조성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경제적 지원 및 조치 2. 환경악화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평등하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 증진 3. 발전권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외적 상황을 형성할 책임, 국가간 주권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을 촉진할 의무 4.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 수단과 시설 제공 5. 늘어나는 자유, 지식, 그리고 힘과 함께 공익을 증진할 책임 6. 정의, 참여, 지속성,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 건설, 모든 사회에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 잠재력 실현 기회 제공, 또한 안락하고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증진할 생태적 책임 7.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기구가 투명하게 공익을 위해 행동할 책임,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	1. 스톡홀름 원칙8, 원칙9, 원칙10, 원칙11, 원칙12, 원칙13 2. 리우 원칙12, 원칙16 3. 발전권 선언 제3조 4. 발전권 선언 제4조 5. 지구헌장 원칙2 6. 지구헌장 원칙3 7. 지구헌장 원칙10
6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시행	1. 기본인권에 대한 편견없이 인간환경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펼 책임 2.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제거, 적절한 인구정책 촉진 및 효과적인 환경법칙 규정 마련 3. 발전을 위해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 복지 향상 등 적절한 국가발전 정책을 이행할 의무 4. 교육, 보건, 식량, 주거, 고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 보장, 이익의 균등한 분배와 성평등 및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개혁 수행	1. 스톡홀름 원칙16 2. 리우 원칙8, 원칙11 3. 발전권 선언 제2조, 제4조 4. 발전권 선언 제8조 5. 지구헌장 원칙5

범주		내용	근거
		5. 모든 영역에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과 규제를 채택하여 개발 초기에 환경보존과 복원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게 할 책임	
7	온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및 정책 시행	1. 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국가기관을 수립하고 임무를 위임할 책임 2. 환경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인간 및 인민의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위원회 설립, 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자료 수집, 연구, 조사 수행, 심포지엄 및 회의 조직, 정보 보급, 정부에 의견 제시 및 권고 4. 규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의 한도와 각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경제적, 기술적 국제협력 또는 입법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 채택 5. 온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 및 입법 차원의 다양한 조치 채택 6. 모든 단계에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기구들을 강화시키고, 조직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의사결정에 모든이의 참여를 유도해 정의의 구현을 위한 책임	1. 스톡홀름 원칙17 2. 리우 원칙15, 원칙17 3. 아프리카 헌장 제30조, 제45조 4. 산살바도르 의정서 제1조, 제2조 5.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22조 6. 지구헌장 원칙13
8	환경위험 교육 및 과학, 기술, 문화의 공평한 발전을 위한 조치	1. 환경위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교육하고 관련된 과학과 기술을 공평하게 사용할 책임 2. 과학, 문화 등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조치 시행 및 국제적 협력 3. 공교육과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통합	1. 스톡홀름 원칙18, 원칙19, 원칙20 2. 산살바도르 의정서 제14조 3. 지구헌장 원칙14
9	환경오염 피해의 책임 및 배상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 발전에 적극 협력	1. 오염피해자 및 개발도상국 등이 환경피해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받고 최선진국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법 등 협력 방법을 강구할 책임 2.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 회복시키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협력할 책임, 동시에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을 고려한 선진국의 더 많은 책임 3. 환경오염 및 위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 발전에 협력할 책임	1. 스톡홀름 원칙22, 원칙23, 원칙24 2. 리우 원칙7, 원칙14, 원칙18, 원칙19, 원칙27 3. 리우 원칙13
10	무력 및 환경 분쟁에	1.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보장하고 핵무기와 대량학살무기를 즉각	1. 스톡홀름 원칙25, 원칙

범주		내용	근거
	대한 평화적 해결	- 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 2. 상호의존의 관계를 형성하는 평화, 발전,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무력분쟁, 환경분쟁에 대한 평화적 또는 적절한 해결 3. 인종적 차별이나 지배와 점령 등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제거,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할 조치 수행, 완전한 군비축소	26 2. 리우 원칙24, 원칙25, 원칙26 3. 발전권 선언 제5조, 제6조, 제7조
11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 조치	1. 다른 국제협약,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아프리카의 관행, 법적 관습, 판례와 학설 등을 법 원칙 결정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고려 2. 압제, 지배, 점령된 지역의 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 3.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생태적 사회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치관, 전통, 제도 등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전할 책임 4. 개발도상국 또는 각 문화권 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진척시키고 습득된 지식의 자율적인 교류와 폭넓은 적용을 촉진할 책임 5. 토착민과 소수자들의 권리에 각별히 관심 쏟고 자연 및 사회환경에 대한 권리를 차별 없이 부여할 책임	1. 아프리카 헌장 제61조 2. 리우 원칙23 3. 지구헌장 원칙4 4. 지구헌장 원칙8 5. 지구헌장 원칙12
12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장	1.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및 산업 위생 모든 부문의 개선 2. 국민 건강 보호, 질병에 걸리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 3. 직장에서의 안전과 위생, 18세 미만자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하는 모든 작업 금지 4. 건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으로서의 건강 인정, 기본적인 필수적인 보건진료 제공 및 보건 서비스 확장, 직업병 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교육 시행,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상의 요구 충족	1. ICESCR 제12조 2. 아프리카 헌장 제16조 3. 산살바도르 의정서 제6조 4. 산살바도르 의정서 제10조
13	환경보호를 위한	1. 개인 및 타인과의 결사 등을 보장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	1.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범주		내용	근거
	의사결정,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보장	2. 발전과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모든 분야의 대중참여 장려	초안 21조 2. 발전권 선언 제8조

위의 13가지 범주, ‘1. 지구와 생명 공동체를 보호할 의무, 2.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3. 환경보호를 고려한 자원이용, 4.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적 대처,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기업, 각종 국제기구의 지원 및 협력, 6.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시행, 7. 온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및 정책 시행, 8. 환경위험 교육 및 과학, 기술, 문화의 공평한 발전을 위한 조치, 9. 환경오염 피해의 책임 및 배상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 발전에 적극 협력 10. 무력 및 환경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11.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 조치, 12.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장, 13. 환경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은 환경권 형성의 권리조건과 권리효과를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인권정전에서 인정하고 있는 환경권은 다음과 같다.

[표 1-5] 인권정전에서 인정하는 환경권

범주		내용	근거
1	환경을 이유로 강제퇴거 되지 않고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권리	1. 환경오염피해 시 구제 및 배상 등 사법적·행정적 절차 접근성 향상 2.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이나 토지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 또한 퇴거에 관한 배상, 보상 및 관련 결정에 참여하고 협의할 권리, 환경 피해 및 환경 위협에 대해 행정 및 사법절차로부터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 받을 권리 3. 정의에 접근할 권리	1. 리우 원칙10 2.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11조, 20조 3. 오르후스 협약
2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1. 환경관련 의사결정 참여 2. 환경 관련 의사 결정에서의 대중 참여	1. 리우 원칙10 2. 오르후스 협약

범주		내용	근거
	표현할 권리	3.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결정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4. 환경에 대한 의견을 갖고 표현하며 사상과 정보를 배포할 권리 5. 환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활동과 과정에 능동적으로 의미있게 참여할 권리, 제안된 계획의 환경적·발전적·인권적 결과를 사전에 평가할 권리, 결사할 권리 6. 발전과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모든 분야에 참여할 권리	3.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2조 4.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16조 5.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18조, 19조 6. 발전권 선언 제 8조
3	환경과 문화를 보존 및 증진하고 환경오염에 저항할 권리	1. 오염 관련 정당한 저항에 대한 지원 2. 공기, 토양, 물,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과정과 영역을 보호하고 보존할 권리 3. 개인 및 타인과의 결사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권리 4. 개인적, 집단적으로 발전할 권리, 또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할 권리 5. 관용, 비폭력, 평화의 문화를 증진시킬 책임과 권리	1. 스톡홀름 원칙6 2.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6조 3.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21조 4. 발전권 선언 제2조 5. 지구헌장 원칙16
4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속에서 발전할 권리	1.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2.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 3. 자신에게 유리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발전해나갈 권리	1. ICESCR 제11조 2. 아프리카 헌장 제20조 3. 아프리카 헌장 제24조
5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개발 및 발전할 권리	1. 고갈 위험에 대비하는 지구 자원의 사용, 모든 인류의 공평한 자원 이용, 또한 자국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 2. 국제적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에 따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 3. 자국과 부와 천연자원을 자유롭게 공평하게 처분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 인류 공동의 유산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발전할 권리	1. 스톡홀름 원칙5, 원칙21 2. 리우 원칙2 3. 아프리카 헌장 제21조, 제22조 4. 발전권 선언 제2조 5. 발전권 선언 제2조,

범주		내용	근거
		4.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인민의 자결권 5. 발전의 중심적인 주체로써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 6. 자연 자원을 소유하며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 7. 모든 경제행위와 경제제도에서 부의 평등한 분배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보장받을 권리	제3조 6. 지구헌장 원칙2 7. 지구헌장 원칙10
6	행복과 존엄을 주는 환경 속에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1. 인간 삶에 행복과 존엄을 주는 환경 안에서 자유, 평등, 합당한 삶의 지위를 영위할 기본권 2.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3. 생존의 권리, 불가양의 자결권 4. 유한한 지구에서 삶의 질과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1. 스톡홀름 원칙1 2. ICESCR 제11조 3. 아프리카 헌장 제20조 4. 지구헌장 원칙7
7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1.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모든 이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2. 시민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인권과 연계된 안전하고 건강하며 온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 또한 그런 곳에서 살아갈 권리 3. 현세대의 필요를 평등하게 충족시키고 미래세대의 권리 또한 해치지 않는 적절한 환경에 대한 권리 4. 국경 내외의 오염, 환경파괴, 지속적 발전 등을 위협하는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향유할 권리 6. 건강과 후손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	1. 산살바도르 의정서 제11조 2.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1조, 9조, 10조, 13조 3.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4조 4.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5조 5. 발전권 선언 제1조 6. 지구헌장 원칙7
8	도달 가능한 최고	1.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의 향유	1. 리우 원칙1

범주		내용	근거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2.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3.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 4.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향유를 의미하는 건강에 대한 권리 5. 최고 수준의 신체적, 감정적 및 지능의 개발을 향유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영양에 대한 권리 6. 환경침해로부터 자유로운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에 대한 권리 7. 자신의 안녕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	2. ICESCR 제12조 3. 아프리카 헌장 제16조 4. 산살바도르 의정서 제10조 5. 산살바도르 의정서 제12조 6.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7조 7.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8조
9	환경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	1. 환경문제에 대해 교육받고 언론 등으로부터 환경 개발 및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자연 정보 취득 2. 환경과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3.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교육받고 자원을 얻을 권리	1. 스톡홀름 원칙19 2.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17조 3. 지구헌장 원칙9
1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1.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 2.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얻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력 형성 3.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4. 과학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1. 스톡홀름 원칙20 2. 리우 원칙9 3. ICESCR 제15조 4. 산살바도르 의정서 제14조
11	환경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	1. 유해물질 처리 정보 및 공공기관의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2.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 3. 환경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정보 수집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며 시의적절하고 분명한 정보를 재정적 부담 없이 얻을 권리	1. 리우 원칙10 2. 오르후스 협약 3.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15조
12	환경약자의	1. 여성, 청소년, 토착 원주민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1. 리우 원칙20, 원칙21,

범주		내용	근거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보호 및 지원	1. 원주민들이 토지, 지역, 자연 자원, 전통적 생활양식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받을 권리 2. 원주민들이 토지, 지역, 자연 자원, 전통적 생활양식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받을 권리	원칙22 2.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14조
13	재난 등의 이유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원조받을 권리	1. 자연 및 기술적, 인적 재해에 대해 시기적절한 원조를 받을 권리 2.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할 경우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권리	1.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 12조 2. 지구헌장 원칙9

마찬가지로 위의 13가지 범주, ‘1. 환경을 이유로 강제되지 않고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권리, 2.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 3. 환경과 문화를 보존 및 증진하고 환경오염에 저항할 권리, 4.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속에서 발전할 권리, 5.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개발 및 발전할 권리, 6. 행복과 존엄을 주는 환경 속에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7.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8.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9. 환경과 인권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 1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11. 환경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 12. 환경약자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보호 및 지원, 13. 재난 등의 이유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원조받을 권리’는 환경권을 형성하는 권리주장의 분석 근거가 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질문 구성 또한 위의 내용에 기반해 있다.

마. 분석틀: 권리의 순환과 권리꾸러미

인권의 증진은 일부 권리가 아닌 모든 권리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으로 구분되는 인권의 기존 분류방식을 보완할 통합적 접근은 중요하다(조효제, 2018). 마크 프레초(2020)는 사회학이 추구하는 총체성과 이에 기반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인권실현을 위한 통합적 접근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어떻게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으며, 왜 해당 권리의 저하와 증진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인권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권리의 난제’로 상정한다. ‘권리의 난제’ 속에는 침해받거나 보장되고 있는 권리의 역학이 존재하는데, 이는 ‘인권의 순환’, 또는 ‘권리의 순환’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해체 및 결합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권리의 순환’은 서로 ‘권리조건, 권리주장, 권리효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권리의 범주를 가로질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권리들의 모듬을 뜻하는 권리꾸러미와 관계 맺고 있다.

권리조건은 주변화된 집단이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고 힘을 합치게 만드는 사회적 상황 또는 제반 조건을 의미한다. 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 이해관계자 등이 인권 피해 상황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권리주장과 권리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분석하는 데 정치경제-발전사회학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권리주장은 시민단체, 운동가, 시민과 같은 인권 이해당사자들이 인권정전 및 기존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기업 등 의무담지자에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이때 요구에 사용되는 정책, 제도, 문화, 사회, 환경 등과 관련한 명확한 언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리주장은 사회운동론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운동과 국제적 논의를 결합한 ‘인권정전에서 인정하는 환경권’이라는 틀을 통해 권리주장을 분석한다.

권리효과는 권리주장 덕분에 나타나는 실제적 효과이다. 정책 책임자,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공무원들이 권리주장에서 요구된 언어들을 개념화하여 정책으로 입안하거나 이전보다 증진된 권리를 이행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권리주장으로 마련된 법과 제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포함된다. 정치사회학을 통해 권리효과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어떠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행위자들은 권리조건, 권리주장, 권리효과의 과정을 거쳐 제도, 법, 규제, 사회문화적 환경과 인식 등을 사회구조를 변화시킨다. 변화된 사회구조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제도, 법, 규범, 고정관념, 변화된 인식,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 등과 맞물려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

다. 변화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받은 다양한 행위자들은 또 다른 권리의 조건을 인식하거나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사회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다시 추동한다. 이는 기존의 인권 환경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즉, 구조화되어있지만 개방적 성격을 가진다. 이로써 사회구조와 행위자 모두의 인권 인식, 조건 등은 이전에 비해 개선된다. 권리 조건이 구성되어 권리 변화를 주장하고 실질적인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과정을 권리의 순환이라고 한다. 권리의 순환은 개인 및 사건 관계자, 인권을 침해받은 집단 등이 그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제도와 사회·문화·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세대별 인권 구분법을 비판해나가면서 인권이론과 실천을 더욱 섬세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권리꾸러미(rights bundles)는 물권법(property law)에서 차용된 개념으로, 서로 분리되거나 떨어져서 고려될 수 없는 권리들의 집합, 즉 현재 존재하는 질서의 비판자들이 제안하고 옹호하는 연결된 권리들의 뭉치를 의미한다. 권리꾸러미를 탐색한다는 말은 기존의 인권정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에 소극적 차원이라 여겨지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적극적 차원이라 여겨지던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 권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마크 프레초가 제시하는 다음의 권리꾸러미를 옹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건강 장수 꾸러미(the right to longevity)’가 있다. 이는 건강하게 긴 수명을 영위하고 음식과 물에 대한 접근성, 의식주, 위생, 의료, 건강한 생태계를 누릴 권리이다. 다음으로 ‘인격의 온전한 발달 꾸러미(the right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person)’가 있다. 이 꾸러미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포괄한다. 이 권리꾸러미의 충족을 위해서는 정신적 만족과 정체성 형성을 위해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 등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평화와 안녕 꾸러미(the right to peace)’는 개인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전쟁, 재난, 기근, 빈곤 등의 소극적 평화 및 동성애 혐오, 성차별, 인종주의 등 구조적 편견이 없는 적극적 평화에서 살아갈 권리들이 갖춰져야 한다. 또한 이 세 권리꾸러미는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the universal right to pursue a good life)’ 속에 수렴된다. 인권 문제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권리꾸러미는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또한 이러한 권리의 순환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2. 이론적 검토

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권은 세계화에 따른 빈부격차,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한 위협,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 위기 등의 문제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남반구와 사회운동 세력의 요구로부터 부상하였다. 세대별 인권개념은 환경권을 3세대 인권으로 구분하면서, 개인보다는 집단과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권리로 설명한다. 그런데 환경권 개념은 토지에 기반한 정체성, 생활양식, 언어, 관습 등 개인과 집단 모두에 관련된 권리뿐만 아니라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포괄한다. 즉, 환경권은 생존과 발전의 권리에 따른 보편주의·문화 다원주의 개념과 연결되면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소극적, 적극적 조치 모두를 요구한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권을 통해 일반적 인권 범주의 경계를 뛰어넘는 권리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1) 환경권의 형성

오늘날의 환경권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얻어진 결과물이다. 특히 세대별 인권개념이 형성된 역사적 경로를 살펴보면 3세대 인권은 케인스주의의 쇠락,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1970년대 제3세계 개발주의의 막바지에서, 즉 공교롭게도 세계화의 시작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남반구 국가 대표들의 3세대 집단 권리 제정 움직임이 있었고(Burke, 2010), 유엔은 이들의 대안적 발전의 비전을 수용했다. 3세대 권리의 강조는 부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과도한 개발주의에 대한 반발, 신자유주의의 2세대 경제적·사회적 권리 해체에 대한 반발, 부분적으로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운동이었던 3세대 집단 권리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1세대 권리와 2세대 권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문화와 환경 같은 서로 나눌 수 없는 재화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지구환경을 일종의 공유재로 본다면, 이 재화는 공적 재화처럼 모두가 사용 대상이 되는 ‘비배제성’, 그리고 동시에 사적 재화처럼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의 소비 기회를 줄이는 ‘경쟁성’의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Blau and Moncada, 2009: 123-124). 이러한 관점으로 지구 구성원 모두의 서식처인 자연을 본다면, 자연환경은 자본주의적 개발 앞에서 절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환경 보전은 건강한 개인과 모든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3세대 집단 권리는 취약한 집단만

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이익 또한 보장해 준다. 특히 공통의 이익과 공통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집단적 연대권’사상이 있어야만 서로 나눌 수 없는 문화적·환경적 재화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며 보존할 수 있다(마크 프레초, 220: 248-254).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권의 형성과정을 자연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접근방식은 실증주의적·기계론적, 자본주의적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를 ‘전통적 접근방식’이라고 한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생태주의, 환경정의, 유기적 지속가능성, 인류세, 지구법학 등과 같이 지구를 유기적 존재로서 인정하는 관점이다. 이를 ‘전환적 접근방식’이라고 한다.

가) 전통적 접근방식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 실증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17세기 말 이후, 당시에는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은 쪽만 존재했다(에릭 홉스봄, 2009). 로크는 자신의 노동을 자연과 섞으면 그때부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을 기술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국주의자로 하여금 자유주의 소유권 이념을 형성하게 했다. 이는 서구에 의한 비서구권의 지배, 정복, 식민화로 현실화되었고 생태학살과 토착민 학살을 초래했다(조효제, 2020: 97).

자본주의는 착취와 경쟁으로 잉여가치를 축적하고 확장해나가는 구조를 가진 하나의 가치체제다. 자본 팽창과정은 주식시장의 운영 원리와 같다. 자본은 이윤 확대를 위해 단기적 전망에 따라 시장구성원에 투자와 인수합병을 재촉한다(존 벨라미 포스터, 2007: 25, 62). 이러한 자본 축적 형식 속에서 자연의 본원성은 제거되며, 애초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생태계가 누군가의 ‘권리’로 치환된다. 같은 원리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은 화석연료 수요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지구 자원의 고갈을 초래한다.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오늘날의 기후붕괴, 태고의 열대우림 절멸, 사막화, 대기과 토양오염, 빈곤의 원인인 인구증가, 전염병의 원인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자본 축적 양식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주의자들은 생태적 관점에서 자연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학을 비판해 왔다. 이에 환경경제학자들은 자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환경을 시장체제에 좀 더 완전히 통합시키는 환경경제학 하위분야를 구

성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자연환경은 ‘자본의 저장소’로, 저장품들을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코드화하여 자연을 ‘자본화’할 수 있다(존 벨라미 포스터, 2007: 47-48). 이러한 관점은 세계은행에서 연례 발행되는 〈세계개발보고서(199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발과 환경’을 주제로 한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는 “환경과 인간 발전이 환경 상황을 개선시키며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개발정책 입안에 환경이 고려되어야”하고, 특히 “편익과 비용을 신중하게 평가할 때 환경피해가 덜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의 영역을 자본의 저장소에서 자본 그 자체로 확장한 것이다. 이로써 환경보호는 자본 축적의 한 형태가 된다. 이는 그동안의 자본 축적 ‘수단’을 대체할 뿐, 근본적 축적 ‘구조’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 ‘탄소중립경제’라는 이름으로 성장의 한계를 우회해서 다른 성장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는 대다수의 그린뉴딜 정책(홍덕화, 2020), 북반구의 탄소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위기를 남반구에 떠맡기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또는 탄소상쇄 정책, 나아가 기후위기를 안보위기로 받아들이며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투쟁은 모두 자본주의로 촉발된 생태 제국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조효제, 2020: 105-111). 이렇게 전통적 접근방식 속에서 형성된 ‘실증주의적·기계론적 지속가능성’은 첫째, 사실상 모든 환경비용을 이윤을 만드는 경제의 맥락에 내부화하며, 둘째, 환경비용을 내부화할 때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제한적 생물권만을 다룸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오염의 전체 규모 계산에 대한 쟁점을 회피한다(존 벨라미 포스터, 2007: 63).

오랜 기간 인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사회구조를 합리화해 왔기에 경제적 논리로 자연을 이해하였다. 이러한 사회체제 속에서 환경보호는 지구의 자원을 착취하는 인간의 자유와 즉각적 물질 획득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모두를 제한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존 벨라미 포스터, 2007: 88). 그러나 환경문제는 이러한 환원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순환적인 자연생태계의 관점에서 다뤄져야만 한다.

나) 전환적 접근방식(transformative Approach)

환경 담론에서 ‘자연의 지배’, ‘자연의 가치화’는 주요한 논쟁거리이다. 이 두 가지 논제들은 근대성에 관한 생태학적 논의를 요청한다. 자연의 지배는 인간해방과 자아실현이라는 계몽의 이상들과 관련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이러한 의문들을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관한 고찰로 이어갔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간의 분리를 비판하면서 내적 관계들의 변증법에 주목하였다. 자연의 가치화는 고전경제학에서의 자원 개념에 대한 논의로부터 촉발되었다. 여기서 자연은 자

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적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자연 그 자체가 아닌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치를 부여받는 대상이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역사지리적 유물론과 사회생태적 프로젝트의 정치경제학으로써 위의 두 논제를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환경 변화의 변증법 속에서 소외와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와 생태적 프로젝트, 공통성과 차이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최병두, 2000: 253-255). 여기에 환경문제에 대한 전환적 접근방식이 제시하는 해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과 자유에 대한 기계적 개념을 포기하고 ‘보편적 자유’에 근거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존 벨라미 포스터, 2007: 98).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강설하는 ‘실증주의적·기계론적 지속가능성’과는 달리, ‘유기적 지속가능성’ 담론은 가난한 나라를 위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많이 가지는 사회가 아닌 충분히 누리는 사회’라는 생태적 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윤이나 생산보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장기적 안전이 중시되며, 빈곤한 사람들이 우선 고려된다(존 벨라미 포스터, 2007: 131). 따라서 빈곤 감축은 인권실현을 위한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발전권’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전권의 성장 경로는 인권 및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유엔개발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1986)’은 서문에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1993년 발전권은 비엔나 제2차 세계인권회의를 통해 인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1990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 보고서>와 함께 부상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담론과 결합되어 2016년에는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제 국제사회의 개발 개념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변화와 인권의 실현을 증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인권에 기초한 접근법’이 각광받고 있다(양영미, 2011: 12-13). 발전권의 맥락 속에서 개발은 개개인의 인권을 하나씩 끌어 올린다기보다 총체적 인권 증진을 지향하는 의미로 쓰인다. 인간 조건의 물질적 증진을 향한 열망과 자유와 존엄을 향한 열망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발전권의 목적이다(보르 안드레아센·스티븐 마크스, 2010: 15). 이는 인권이 이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시한 탄압 패러다임에서 웰빙 패러다임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양영미, 2011: 14).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안에서 개발에 대한 논의는 개인과 집단이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연결된다. 제3세대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 집단으로서의 연대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에 기초한 접근법(RBA, Rights Based Approach)’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인권이 계속해서 자기 확장을 이뤄나가는 유기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장 현실 속의 모든 문제를 인권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지만, 인권의 대단한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미래에는 우리 생활을 구성하는 더욱 많은 것들이 인권의 문제로 포괄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을 특정 시기의 담론으로 한정하기보다 이러한 인권의 포용성을 바탕으로 실재하는 권리의 최소 수준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리를 탐구해 나갈수록, 세대를 뛰어넘은 인권 증진과 향유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환경권의 핵심을 이루는 지구환경에 대한 최신 논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대기화학자 파울 크루첸(Paul Crutzen)은 2000년 ‘국제 지권-생물권 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을 통해 “우리는 인류세(anthropocene)에 살고” 있음을 선언하였다. 인류세는 지질학적 세기를 뜻하는 말로, 홀로세(holocene) 시대를 사는 인간이 지구의 지질시대를 바꿀 만큼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질학적 시대는 지각변화와 생물종의 변화 양태로 구분된다. 많은 학자가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17-18세기 산업혁명 시기를 지목한다.⁵⁾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가 지구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세 담론의 장에서 생태계와 사회체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회생태체계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생물학과 생태학의 발전에 따라 제기된 생명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개체를 중심으로 생명을 이해하면 죽은 물질을 구분할 수 있지만, 지구-우주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해석하면 개별 생명체와 물질 환경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며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다(구도완, 2020: 36). 이렇게 근대의 합리성을 넘어 가이아(gaia)를 고려하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즉 생태적 합리성을 실천하는 전환적 접근은 실제 적용될 수 있는가?

‘커먼즈’ 논의는 이러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만한 자구책을 제시한다. 기후위

5) 인류세 시작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7-8천 년 전 인류의 농경 시작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유럽인의 아메리카 이동으로 초래된 대절멸과 이로 인한 자연 삼림의 증가가 촉발한 기온 하강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조효제, 2020: 94), 증기기관 발명으로 등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기준으로 하는 입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확대로 이루어진 ‘대가속(The Great Acceleration)’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국제적 권리조건’에 관한 논의를 참작하여 산업혁명 시기를 인류세의 출발로 본다.

기와 관련해 형성된 대기커먼즈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자. 홍덕화(2020: 208)는 물리적 기반시설을 지역공동체와 등치시키지 않는 새로운 사유를 전제한 커먼즈를 제안한다. 가령 그동안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환경문제로 여겨져 온 화석연료 사용과 생산을 물리적 층위, 논리적 층위, 내용적 층위 등 다차원적인 것으로 구분할 경우, 특정 영역에서는 국가 스케일의 에너지 체계가 유지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계획, 생산, 운영, 이용집단을 일치시키지 않고도 에너지 커먼즈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개발 담론에서의 의무담지자-권리청구자의 지정 필요성의 논리와 그 궤를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인권의 통합적 접근 또한 이와 같은 층위의 분할과 통합 논리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간의 권리와 그 외 나머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서는 인간의 권리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적 관점에서 정당화해 왔던 경제발전을 통한 인간 복리의 증진을 넘어 인권 담론은 기후위기와 인류세라는 위기를 반영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지구학자 토마스 베리(Thomas Berry)는 ‘우주론’을 통해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닌 각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진화해 나가는 주체들의 친교 과정임을 전제하면서 생명중심적, 지구중심적 규범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간이 지구로부터 나왔다면 인간 체제 또한 지구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지구에 대한 모든 인간 활동의 기준은 지구라는 전체 공동체를 다스리는 원리로부터 세워져야 한다. 베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물의 존재이익(interests in being), 나아가 우주 모든 성원의 권리를 주창한다. 그는 ‘지구법학’⁶⁾을 통해 지구공동체의 모든 요소가 ‘존재할 권리, 서식할 권리, 지구의 진화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박태현, 2020: 17-26). 이를 위해 의식과 의지라는 행위주체성(Agency)를 가진 주체인 인간은 지구 또는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지구법학의 흐름은 실제 2009년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의 채택(제63/278호), 2015년 지구법학 정신을 담은 지식 플랫폼 ‘하모니 워드 네이처(HwN)’의 결의(제70/208호)로 이어졌다. 2015년 12월에는 지구법학이라는 용어가 유엔총회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하였다. 또한 이 대화를 바탕으로 지구법학 사무총장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지구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구속력을 가진 ‘세계지구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Mother Earth

6) 법학에서 법적 주체(법인격)는 법학적 사고의 기본 단위이다. 법적 주체만이 법적으로 인식된다. 과거에는 사람만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졌지만, 점차 경제적 효율 등의 이유로 사람 이외에 ‘법인’의 형태로 법적 주체 대상이 확대되었다. 법적 주체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현재의 법체계가 불변의 자연적 진리가 아니며 역사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현재의 환경적, 생태적 필요성에 의해 법적 주체는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지구법학에서는 권리의 주체성을 자연으로 확대한다(강정혜, 2020: 213-216).

Rights)’ 제정 운동 또한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정혜진, 2020: 126-135).

이상의 논의를 통해 생태계를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그것의 경제적 이용가능성에 초점을 둔 다양한 관점을 ‘전통적 접근방식’으로, 근대성에 관한 생태학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평등과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공동의 노력(sustainable ecological transition)을 ‘전환적 접근방식’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문제,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 인류세, 커먼즈, 지구법학 등의 전환적 담론은 자연과 생태의 권리를 포괄하는 인권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다음의 논의에서는 정치·경제·사회·생태의 근본적 구조 변화에 공헌하면서, 사회세계의 도덕적 영역과 자연세계의 물리적·생물적·지리적 영역 사이의 문턱을 조절할 법적 규범으로서의 ‘환경권’을 살펴본다(조효제, 2020: 229).

2) 환경권의 종류

가) 환경권의 정의와 내용

환경권의 실질적 이행은 규범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동안 환경권은 국제인권 규범을 환경문제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가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규범의 제도화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절차적 권리에 관한 것인데, 이는 국가 별로 생태적·사회경제적 조건, 환경오염 유발원이 달라 실체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규정하기 모호했기 때문이다(Anderson, 1996;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23).

국내법상 환경권은 별도의 법적 주체로써 고려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별 환경법이나 판례를 통해 독자적 영역과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다수의 법학자는 환경권을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권영성, 2010),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김철수, 2013), ‘좋은 환경을 향유하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구하는 권리’(구병삭, 1990) 등으로 정리하는 데 동의해 왔다. 위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환경권이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며, 인간 생존에 절대적이고,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천부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다.

이를 수렴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권을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그런데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법률유보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는 1980년 제8차 헌법개정 당시 도입된 환경권 개념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기보다는 당시 국제정세에 따르기 위한 조치로써 마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경제발전을 우선했던 국가성장 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서 환경권은 국가의 의무나 보장범위에 대한 언급 없이 소극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최근 헌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지구법학 담론은 근본적으로 국민국가 단위의 영토를 기반으로 마련된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근대 이후 자유주의 헌법 체제의 실패가 지구 생태 위기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 주장한다(김헌준, 2020: 167).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각계 법 전문가들은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2016)>을 통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더불어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또한 장래[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공동 생명체로서 동물은 부당한 고통과 대우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이익을 위하여 동물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입법과 행정,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오동석, 2020: 178-179). 개인과 집단이 최대한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 환경문제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책임과 행동의 필요성을 명시한 위 내용은 인류 역사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자유·평등·연대·민주주의·참여·평화·생태계 보전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강조한다.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기점으로 환경권 관련 논의가 확산되었다. 2004년 기준, 191개 UN 회원국 중 109개 국가가 환경 또는 천연자원 보호를 헌법에 명시해두고 있다(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대표적으로 에콰도르는 헌법 전문에 “자연의 다양성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양식의 공존 질서”를 명시하여 좋은 삶의 방식(the good way of living)이라는 의미의 ‘부엔 비비르(Buen Vivir)’를 성취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도를 반영하였다. 법적으로 자연은 ‘존재 자체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 ‘회복될 권리’를 갖는다.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천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복잡하고 서로 상반되기도 하는 국내외적 논의와 규범 및 조치를 수렴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권으로서의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as a human right)을 ‘개인 및 공동체, 지구 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최대한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이자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 또는 훼손을 예방할 인간의 의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VI장에서는 집단을 위한 3세대 환경적 권리와 개인을 위한 1세대, 2세대 권리를 묶거나 분리해 특정한 권리꾸러미를 도출한다.

나) 인권정전과 환경권

국제인권규범은 국가주권주의를 토대로 구성되어온 전통적 국제법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범적 관계에 과제와 지향점을 제시해왔다(신윤진, 2020: 208). 그런데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에 있어 절차적 권리가 강조될 경우 실제 인권을 형성해 나가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가 어려워진다. 법률적 논의에 치중된 권리 증진 방안은 기존 인권 담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게 만든다. 이제 인권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는 유엔기구,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사회운동조직, 지역사회단체, 기타 사회적 행위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모두 각자 수행하는 캠페인이나 정책,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덕적·정치적 기준으로 국제 조약, 선언, 발표 등의 인권 문헌들을 활용한다. 따라서 국제인권규범의 성격을 포괄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인권 동력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이 요구된다. 마크 프레초(2020: 324-325)는 인권정전(正典)이라는 개념으로써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인권 문헌들을 통칭한다.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 이들을 돕는 단체, 이들에 공감하는 연구자와 법률가 등은 인권정전을 해석하여 권리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권리 동맹들은 현존하는 인권 문헌의 장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권 정전의 내용, 해석, 실행에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구성인(構成因)이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권정전을 활용하여 사회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권리 담론을 제시할 것이다.⁷⁾ 아래에서는 인권과 환경권에 대한 인권정전의 흐름을 살펴본다.

환경권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본 연구의 정의에 따른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확정한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7) Francioni(2010)는 환경보호에 대한 현재의 인권적 접근을 지속하되 보다 상상력과 용기 있는 인권 법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이주영, 2017: 49). 규범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환경과 인권에 대한 다각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질을 측정가능한 수치로 치환하여 권리의 보장 수준을 재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인식과(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인권과 환경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의 상호관계를 확정하는데 따르는 인식론적 고민 때문이다. 유엔에서도 실질적 권리로써 환경권을 주창하기보다는 환경과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해 왔다(이주영, 2017).

세계인권선언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25조)’에서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 보장의 필요를 언급함으로써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기본적 권리로써 처음으로 인권과 환경의 관계가 인정된 것은 1968년 UN 총회였으며(Res. 2398(XXII), 환경권은 이후 1972년 개최된 제1차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이하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 현실화되었다(이은기, 2015: 326). 이 선언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생태계의 구성원인 인간의 의무이며, 국가 및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인간 생활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개괄적인 환경권의 형태를 제시한다.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유엔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리우선언을 채택하여 스톡홀름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두 선언에 포함된 규범적 내용의 중요성을 강화하였다(Handl, 2012: 3).

위의 두 선언은 당시 관습적인 국제법을 반영하면서 미래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규범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인권과 환경권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법적·정치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김홍균, 2008: 3).⁸⁾ 그러나 외교 회의 선언의 특성상 두 선언은 실질적인 환경 대책을 마련할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리우선언은 깨끗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도 주지하지 않은 채 인간을 개발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스톡홀름 선언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김홍균, 2008: 60). 생태중심주의, 지구법학 등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스톡홀름 선언과 리우선언은 모두 인류의 번영을 위한 환경보호를 선언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의 산물로 여겨진다. 이에 리우 회의 이후 국제시민사회는 민간차원의 ‘지구헌장’을 구상하여 유엔 공식 헌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윽고 1997년, ‘지구헌장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00년에는 지구헌장(Earth Charter)이 합의되었다. 인간을 위한 객체로써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8) 유엔환경개발회의는 리우선언과 함께 ‘의제 21(Agenda 21)’, ‘생물 다양성 협약(Biodiversity Convention)’, ‘기후변화협약(Climate Change Convention)’ 등을 채택하여 분야별 환경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환경권 이행의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을 탈피한 이 현장에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구생태계 보존과 자연에 대한 존엄성, 인권, 경제적 정의, 평화문화, 개인과 사회,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환경과 인권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세 가지 국제규약, 즉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프리카 헌장(African(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산살바도르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Social and Cultural Rights(or Protocol of San Salvador))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세 문헌은 기존의 인권 정전과 같이 환경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의 환경 담론을 고려한 환경권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Sands, 2003: 294).

원칙선언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보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국제인권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CESCR은 다자간조약으로써 국가가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인권의 온전한 향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특히 도달가능한 최고상태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조건 및 환경 등의 개선을 언급한다. 최근 ICESCR 제15조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와 관련해 과학적 진보는 일반 복지를 증진하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배제해야 하고, 사회적 불평등 극복을 고려한 국가의 정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과 지침이 마련되었다(ICESCR, 2020). ICESCR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되면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으며, 3세대 인권의 대두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식민지 해방 이후 탈식민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아프리카는 국가 간 분쟁을 줄이고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적 인권헌장인 아프리카 헌장을 추진하였다. 환경권을 최초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의를 지니는 이 헌장은, 인권 보장을 위한 각종 보장조치 및 권리들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장기구로서 아프리카 인권재판소와 같은 구체 절차를 규정해 두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집단적 권리로서 환경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 국제협약과의 유기적 연관성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고유의 전통과 풍습의 보존을 중시하는 환경권의 특성은 제61조⁹⁾와 같은 의무를 필요로 한다. 아프리카 헌장은 환경과 발전

9) 아프리카 헌장 제61조의 원문은 이러하다. “제4장 적용 가능한 원칙. 제61조. 위원회는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원국들이 명백히 승인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약,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아프리카의 관행, 일반적으로법으로서 수락된 관습,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물론, 판례와 학설 등을 법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을 분명하게 연관시키고 있으며, 발전을 환경권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또한 환경권의 범위를 개인과 집합, 모든 이의 것으로 확장시킨다(김홍균, 2008: 61).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졌지만 유럽의 영향을 받아 법학이 발달했던 미주에서는 국제인권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해 1945년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선언 내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이 미흡했음을 인지하고 1988년 산살바도르 의정서에 합의하였다(김철수, 2020: 244). 산살바도르 의정서는 권리가 입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해두고 있다(김홍균, 2008: 61).

1998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는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적절한 삶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환경 관련 의사결정에서의 대중 참여, 정의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리우에서 세워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제10대 원칙’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다. 위의 선언 및 규약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세계자연헌장(1982), 헤이그환경선언(1989), 독립국의 토착민과 부족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1989), 국제자연보호연맹 환경과 개발에 관한 초안(1995) 등을 통해 인권과 환경권의 관계 및 권리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1994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UNCHR)가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The Ksentini Principle)을 통해 인권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하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에는 보다 분명한 환경권의 형태가 제시되었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여 인권을 20세기의 주요 테마로 만든 것처럼, 최근 국제시민사회에서는 지구환경의 위기에서 ‘세계지구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Mother Earth Rights)’을 통해 지구와 생태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정혜진, 2020: 136). 이 선언은 법적 주체로써 자연을 적극 수용하며, 권리의 범위를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한다.

고려한다.”

3. 본론

가.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조건

권리조건은 현재 권리의 상태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준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을 통칭하는 것으로, 권리 상황에 대한 비판이나 요구가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을 의미한다. 권리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리 증진에 대한 요구 또는 변화-권리주장과 권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구조적 개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샤이가 말하듯 인권은 ‘역사의 과정이 축적되어 스스로 생명력을 지니게 된 독자적인 종 자체’(미셸린 이샤이, 2010: 34), 즉 과거의 총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종합하고 해체할 때 권리조건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환경권을 결정하는 국내외적 권리조건 of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IV-1~2), 이어서 공시적 관점을 통해 지역적 권리조건 of 상태를 진단한다(IV-3).

1) 국제사회의 구조적 조건

석유와 천연가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도시화를 촉진시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핵심이었다. 예긴은 1950~60년대 경제 호황이 저렴한 석유 가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분석한다(대니얼 예긴, 2017: 250). 석유는 전후 재건에 필요한 화학비료, 식료품 운송,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1970년대에도 대다수 선진 공업국들의 필수 자원으로 이용되었다.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은 점차 국제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대니얼 예긴, 2017: 20-23). 가령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제1차 석유파동은 에너지 자원과 국제 정치경제 간의 긴밀한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다.

한편 환경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전방위적으로 확장되면서 환경 관련 국제협약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현재까지 체결된 다자간 환경협약은 1,397건, 양자간 환경협약은 2,296건에 이른다(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2021년 6월 25일 접속).¹⁰⁾ 국제경제기구들도 자유무역 원칙에 더해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WTO는 설립협정 전문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상응하는 세

10)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Environmental agreements currently in the database.” 2021년 6월 25일 접속, URL: <https://iea.uoregon.edu/iea-project-contents>

계 자원의 최적 이용을 허용하고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각국이 자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을 보호, 보전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으며, UN도 기후변화협약 제3조 5항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국제 교역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UNFCCC, 1988). 그러나 국제환경법과 국제무역법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으로, 법률의 목적과 질서 체계가 상이하기에 정치·경제적 이익의 내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이찬송·윤순진, 2010).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형성된 탄화수소 사회(Hydro-carbon Society)에 대한 인식은 환경보호 인식의 성장 및 환경운동의 대중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대니얼 예긴, 2017: 632). 과거 과학·기술주의적, 경제학적 환원론에 갇혀있던 기후변화 문제는(서영표, 2016: 139), 이제 근대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작된 생태주의 철학, 시민사회의 성장된 역량(박선아, 2017), 지구생태계 붕괴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논의와 조용하면서 주류 담론으로써 성장하게 되었다.¹¹⁾ 탄소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기업활동과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기후위기 속에 함축된 부정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가치판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조효제, 2020: 15).

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조건

위에서 살펴본 국제적 차원의 권리조건들은 국내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상황과 평행한 시간상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에 장단기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을 제정하여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 달성’ 목표 아래 인권과 혁명 과업을 연결지으며 국민 통합 원리로서 인권을 활용했다. 국가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보장된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기존에 장면 정부가 기획했던 경제개발 정책을 수정하고(조희연, 2016: 40), 미국의 정책자문 지원을 통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의

11) 전지구적 환경정책 및 환경담론과 함께 성장한 현대 기후과학은 인간 삶의 형태에 대한 근본적 차원에서 논의를 가능하게 만들어 새로운 정치적 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김기윤, 2014). 이찬송·윤순진(2010) 또한 기후변화 본래의 지구적·광역적 특성이 기후레짐을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경제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질적 형식을 구비했다(정영화, 2012: 140). 이렇게 산업구조 근대화와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 사회변화의 중심에는 ‘계획’으로 요약되는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했다. 이는 오늘날 충남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저해 또는 증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당시 이행되었던 주요 조치들 가운데 지역 인권 상황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 여럿을 묶어 살펴본다.

첫째, 중화학공업 및 산업단지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산업단지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엽으로, 당시 경제개발 전략은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경공업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은 저숙련 여성노동자 확보가 용이한 서울과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산업발달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제도 및 시설이 증가했다. 정부가 목표했던 경제성장 수준에 최대한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원료 공급이 용이한 에너지원이 필요했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지향했던 박정희 정부는 비용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했다(맹준호·김태윤·서동화, 2014: 182). 석탄화력발전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발전 방식으로 여겨졌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전원개발로 초래되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79)」을 제정하고, 동력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건설계획 재가를 곧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률의 인허가 취득으로 인정하였다. 사업은 오로지 동력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국가 고위공무원에 의해 계획되고 수립되었다. 전력수급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지자체 사업 검토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의도였다(김우창, 2016: 198).

셋째, 개발 이익을 위해 가장 많이 남용된 것은 토지였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실시되었던 다양한 토지 정책들은 매번 해당 재산권 보유자의 희생을 수반했다. 「토지수용법(1962)」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명시되었어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었어도 국가 중심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사적소유권의 존속보장원칙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사업시행자 다수가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후 막대한 개발 이익을 독점하였다. 수용재결을 당한 사람들에게 수용보상금이 주어졌지만 기존의 생활이나 경제적 이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박지혜·신지형·최재홍, 2019).

넷째, 민족주의 정서 및 개발 이데올로기 등 신념체계가 강고해졌다. 경제개발 계획이 후발국의 경제개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

전 이후의 일로, 위의 네 가지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가동원체제¹²⁾의 근저에는 당시 제3세계 국가에 퍼져있던 경제적 민족주의 정서가 깊게 깔려있다. 1960년대 당시 수출 위주의 공업화는 탈빈곤과 선진국 추격 발전의 열망을 담은 것이기도 했지만, 미국발 세계 경제 질서 재편 요구, 즉 반공자유주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김동춘, 2018: 268).

정리하자면, 1960~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배경에는 ‘계획의 실시’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국민들의 공감대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는 한국전쟁 전후 형성되기 시작한 경제개발 신화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박태균, 2001).

1980년대 후반은 수출 및 외자에 의존하면서 노동 억압을 기초로 발전한, 국가-재벌 주도로 이루어진 기존 국가동원체제의 각 요소들이 붕괴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로 침체된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은 국내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중복투자와 수출부진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를 감행해야 했고(구본홍, 1999), 경제인들은 정치권력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여 위기를 피하려 했다(장준오, 2001: 53). 국가가 주도했던 자본의 축적체제는 그 조정권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편입됨으로써 민간으로 위임되었고 국가경제는 급속도로 세계시장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세계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권리조건이 형성되었다.

첫째,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계화와 결합되었다. 1986년 정부는 산업간 과잉설비 및 사양산업을 정리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 법제를 통폐합하고,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합금철, 직물, 염색가공업, 비료제조업, 신발 등의 사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합리화(구조조정)했다.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산업공간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 특성상 세계화로의 편입을 가속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었다.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산업의 세계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지역은 가능한 빨리 전통적인 경제적·문화적 관습을 떨쳐내면서도 새로운 규범에 편입될 수 있는 목표를 세웠다.

둘째, 산업의 세계화에 따라 전국에 산업단지 및 발전시설이 증가하면서 지역

12) 유철규(2004)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인정하면서 한국에서 국제적 압력이 구체적인 정책 형태로 실현되는 데 ‘국가동원체제’라는 특정한 경제적 매커니즘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국가는 사회의 각종 자원을 동원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국가동원’이라고 한다. 여기서 ‘동원(mobilization)’은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의미한다. 동원은 국가가 자본을 유통하고 노동을 억압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이용했던 ‘잘살아보세’와 같은 구호, 즉 반공규율 및 강성국가의 사회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본의 축적조건과 연관되어 있다. 축적은 물질 자본뿐만 아니라 하나의 체제를 상징하며,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내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다. 1990년 들어 산업단지 개발제도가 확립되면서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토지자원 동원체제는 점차 해제되었고, 토지 민영화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1994)」 및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이 지정되었다(김태승, 2004). 이 시기 충청권에는 국내 전체 건설 비중의 6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산업단지가 세워졌다(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21년 7월 21일 접속). 기업의 사업 종목 선택 또한 자유화되었다. 국내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대기업들은 앞다퉈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수도권과 가깝고 물류 이송에도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갖췄던 충남 서산시 대산읍 지역에 개발붐이 일기 시작했던 것도 이때부터였다.

당진화력은 1차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 건설되었다. 1·2호기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1989년으로, 1990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거쳐 1999년 준공 및 가동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2002~)은 기본적으로 국가계획의 성격을 가지나, 전력 생산은 하나의 사업으로 여겨졌다. 이미 2001년부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부문이 분리된 상태에서, 전력시장 가격체계 자체가 석탄 화력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김광구·김동영·이선우, 2010), 군소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 민간 발전소들이 집중되었다. 대표적으로 당진화력, GS EPS 복합화력발전소, 현대그린파워 등이 운영되고 있는 당진에 동부그린발전소의 추가 입지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다.¹³⁾

셋째, 지역 내 사회문제는 과거 형성된 국가동원체제의 이념과 결합해 지역주의를 강화하였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에서 시행된 지역 균등 개발정책은 이촌현상 및 도시 내 사회적 계층을 형성했다. 이에 더해 1987년 대통령 선거 및 1988년 국회의원 총선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호남, 충청에서의 지역주의는 정치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산업시설 입지 등 지역개발에서 국가의 동원체제, 즉 지역 간의 분할을 이용한 배제적 해게모니가 도입되었고 계급의식 성숙도가 낮은 지역사회에서 이는 ‘국가의 일이니 참아야 한다’, ‘우리 지역이 국가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해야 한다’는 동원의 기초적 인식을 형성했다. 이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자신들의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반발하는 기본적인 사고체계로 작용하게 되었다.

나. 지역사회의 구조적 조건

산업 및 공업입지가 초래하는 지역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1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이고 상호연관된 변동이다(진종현·정석호, 2012).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고유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의 구조적 조건을 크게 환경·지리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2) 구조적 조건

가) 환경·지리적 조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국가의 전방위적 정책은 충남 서북부지역에 산업 시설이 연달아 들어서게 만든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넓은 구릉지 및 바다와 접해 있다는 지형적 이점, 염가의 간척지, 넓은 미개발지, 수도권과의 높은 접근성과 같은 지리적 특성은 원유 및 원자재 이송의 편리성과 대외무역의 용이성, 부지 가격, 공정상의 편의성 등 비용절감을 우선적 가치로 두는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입지 조건이었다.

한편 시설 입지와 동시에 이 지역의 생태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이 중 29.1%는 당진시에서 발생하며(한국환경공단, 2013), 당진화력, 현대제철, 현대그린파워는 전국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 10위 권에 속한다(당진신문, 2020). 전국에서 황산화물, 암모니아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도 충남이다. 이 중 48.2%는 당진시와 서산시에서 나온다. 당진시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비산먼지를, 서산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 대기오염물질은 당진화력과 같은 공공발전시설(에너지산업연소)과 산업시설 내 공정로 및 연소시설(제조업 연소 및 생산공정)이 운영되는 전 과정에서 배출된다. 국내 대기환경기준 내에서 관리·측정되고 있는 위의 대기오염물질 이외에도 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RAC(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벤젠, 다이옥신 등의 유해인자가 상시 배출된다. 특히 석탄 연소 후 남은 석탄재(ASH)를 저장하거나 운반할 때, 또는 덤프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에서 중금속 성분이 섞인 비산먼지가 끊임없이 생성된다. 석탄재가 물과 함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하면서 지하수와 토양도 중금속에 오염된다(명형남, 2016). 바다와 인접해있는 당진화력은 전국에서 4번째로 발전 온배수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다. 이는 인근 해양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김, 미역 등의 조류 양

식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며, 인근지역은 물 부족을 겪거나 산업시설 배출 폐수로 막심한 피해를 입는다(이인희, 2015).

산업시설의 입지로 인해 발생하기 시작한 오염은 일차적 환경문제일 뿐이었다. 대규모 산업시설의 운영은 관련 업종 및 부대시설의 증가를 요구한다. 송전설비, 도로,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은 이차적 환경문제를 초래했다. 자원 수송을 위해 도로가 확장되면서 화물트럭이 증가했고 대량의 비산먼지가 생성되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또한 늘어났다.

나) 정치·경제적 조건

1970년대 말, 당진군과 서산시에는 산업시설 입지가 결정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시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업 유치 과정에서 난개발과 투기를 우려하거나 지자체장의 행동과 결정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인권이 억압되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적극적 의사표현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체로 경제개발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발전소나 산업시설 건립계획이 공시되었지만 정보 열람 기한이 존재했고,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환경운동 분야에서도 당시 석탄은 생소한 분야였고, 따라서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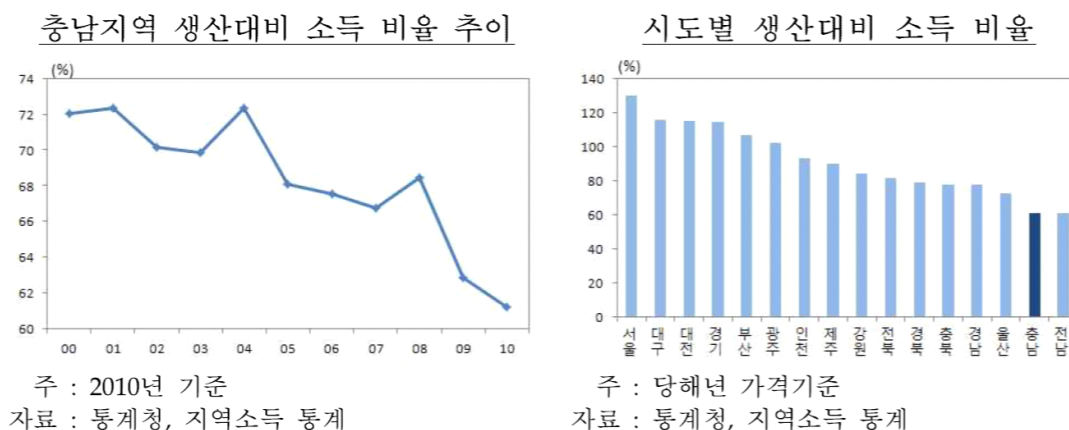
많은 주민이 몇 대에 걸쳐 터를 잡고 살았던 토지에서 반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국가가 지역 단위로 책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았다. 당시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보상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예로부터 전해진 지역 고유의 풍습이나 주민들의 삶의 양식은 연이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철저히 붕괴되었다. 1차 산업의 핵심이었던 어업은 간척지의 조성, 온배수의 영향으로 거의 사라졌고 대신 넓은 농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직물 다양성이 존중되는 기존의 전통적 농업 방식은 거의 불가능했다. 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농작물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판매량 감소를 우려해 농가와 지자체, 정부 모두 관련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다. 판매되지 않은 농작물은 기업이 사들이기도 했다.

어업 불가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토지 수용으로 살 곳을 잃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다른 마을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은 지역내총생산이 해당 지역의 생산액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지역의 소득이나 지역 간의 소득격차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박경, 2011). 지역에서 발생한 부와 지역 경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을 비교하여야 한다(정재준,

2018).¹⁴⁾ 생산과 소득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생산액 유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이 가파르게 성장했던 2000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은 72% 수준이었다. 그런데 2010년에는 61.3%로 크게 감소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처하게 된다. 이는 충남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일부가 지역 내로 유입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안세현, 201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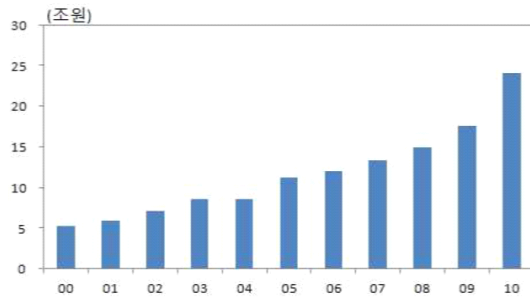
* 출처: 안세현, 2013.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그림 3-1〕 생산대비 소득 비율

유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충남지역 소득 순유출규모, 인접지역 수도 순유입규모 추이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 5.2조 원 수준에 불과하던 충남의 순유출규모는 2010년 24조 원에 다다랐는데, 같은 기간 서울, 경기와 대전의 경우 순유입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지역을 충남지역 소득 유출의 주경로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안세현, 201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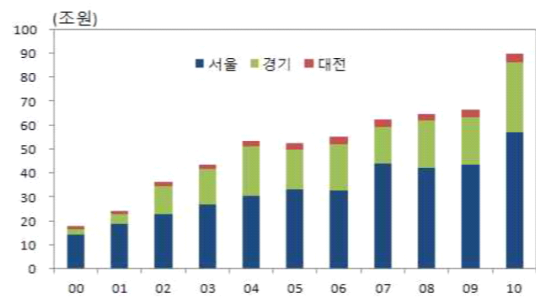
14)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첫째, '지역내총생산>지역총소득'의 경우 지역 내 소득이 지역 외부에서 순유입 되는 것이다. 둘째, '지역내총생산<지역총소득'의 경우 지역 내 소득이 지역 외부로 순유출되는 것이다(정재준, 2018: 322).

충남지역 소득 순유출규모 추이



주 : 명목 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인접지역 소득 순유입규모 추이



주 : 명목 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 출처: 안세현, 2013.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그림 3-2] 소득의 순유출규모와 순유입규모 추이

당진화력 인근 지역은 지원금 분배 형평성과 지원금 분배 주체인 개발위원회의 정당성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년 넘게 지급된 지원사업비는 지역의 거주환경을 일정부분 증진시켰을 뿐, 지역사회의 소득 및 환경 격차를 잠재울 수 있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담보로 개선된 생활환경은 오히려 지역 주민 간의 분열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발전소 지원사업비 그게 산업부에서 발전소 같은 경우는 당진시로 그 예산이 내려와요. 그런 경우 분배를 또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원 대상은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있고 이내의 지역과 그 지역에 속한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문면 전체적으로 받고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그 다음에 안산시 거기도 바로 5km이내의 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배분은 석문면 개발위원회에서 충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거리는 발전소로부터 이격거리, 면적은 그 마을의 전체적 면적, 그다음 인구수, 거기에 가중치를 뒀서 계산해서 그 당시 19개 마을 분배를 했죠. 그러니까 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 요소가 돼요. 마을별로도 그렇고. 왜 우리 마을이 적냐 또 한편에서는 저기 10, 15킬로 떨어진 마을까지 왜 개네까지 다 나눠 가져야 하느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쪽 명시가 되어 있어. 뭐 복지사업, 소득증대 사업, 무슨 생활개선 등등 쪽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해. 그런 역량, 사업적인 역량이라든지 그런 걸 가진 사람이 마을에 몇 명이나 있냐 그런거지. 사업을 해서 사업의 이득을 나눠가질 수는 있는데 예산 자체를 나눠가지도록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법에서. [참여자8]

한편 민간기업들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서산은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주로 민간차원의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져 왔다. 공단 설립 이후 수십 년간 분쟁을 거듭하며 조성된 기업-주민 대표단 간의 협의 방식은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했다. 산업단지 관리주체 또한 실질적 관리주체인 서산시, 제도적 관리주체인 충남도로 양분되어 안정적 행정 집행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법적 구조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 행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건강권, 재산권 등 다양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느꼈지만 특정 업체에서 실제 해당 물질이 배출되는지, 어떠한 유해요인이 건강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 또한 거의 이루어진 바 없었다.

면 단위 개발위원회는 마을로 내려오는 지원사업비의 운용 주체이다. 각 마을 별로 선출된 이장이 면단위 개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며, 총회를 통해 위원장 등이 선출된다. 공금의 운용이 개발위원회에 맡겨지면서 개발위원회의 영향력이 점차 강력해지는 한편,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공공 목적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착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강봉조, 2021). 이에 대한 지자체의 중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2014년부터 자원 남용 방지를 위해 지역 소재 자원 이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되자, 충남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용해 치적을 홍보하거나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내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로 인해 징수된 세금이니만큼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도입 당시부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화력발전세를 일반회계에 포함시켜 사용처를 별도로 기록해두지 않았다. 2014년부터 총 734억 7천 4백만 원이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유종준, 2018).

지역자원시설세를 군수 쌈짓돈처럼 쓰거나 대부분 치어 방류하거나 주민들에게 선심성 행사를 자기 군에서 하는 것처럼 생색내기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누이 얘기해도 행정도 맞들인 거죠. 그렇게 썼던 돈이 있고 정치적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없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다보니 쉽게 바꾸지 않더라고요.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비용도 높여라 요구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참여자4]

다) 지역 주민의 인식과 사회적 조건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화력발전소 입지가 결정된 것은 1990년의 일이다. 정부는 건설사업 세부추진계획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수행 주체였던 동력자원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12개의 발전기를 설치할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모두에게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된 것은 아니었다. 시설 착공 전 정부는 주민들에게 건설 용량에 대한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였고 토지 수용 절차에 몰두했다. 그리고 주민 대부분은 4호기를 마지막으로 발전소 건설이 마무리될 것이라 인지했다. 10년 동안 발전소가 증설될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예측하지 못했다.

면접참여자들은 당시 당진군의 경제적 처지가 상당히 곤란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의 도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에는 지역 내 시설 입지 이후 발생할 환경오염이나 사회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거의 하지 못했고, 대신 공통적으로 수용 및 보상 절차가 반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어 자신들의 토지 및 재산이 ‘거의 강제적으로 수용 당했다’ 인식하고 있었다.

정보의 불투명성 문제는 산업시설 입지 후에도 지속되었다.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면 열람이 가능했지만 그것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가까스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의 공문서가 많았고, 설명회 등은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거주공간 바로 옆에 유해 물질 배출업체가 생긴다는 소식 대부분은 기업의 입주가 결정되었을 때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행정적 처리가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항의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주민과 기업 모두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일이었다. 이에 기업과 행정기관은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우선 비공개적으로 입지를 계획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

산업시설 입지는 대개 환경영향평가를 동반하였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매우 저조했는데, 이들이 실제 거주하며 체감한 다양한 경험과 기억들은 과학적 측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나 기업이 주민들에 건강영향 평가를 수행했지만, 주민들은 그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자료를 본인이 원할 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결과를) 우리가 보여달라면 보여주나? 안보여줘. 그 데이터를 우리 좀 보여달라는거지. 우리 눈으로 보게. 그러니까는 우리 암만 모르는 사람들 잉? 뭐가 나빠 뭐가 나빠 보면 알

수 있잖어. 암만 해가면 뭐혀. ○○보건환경연구소라고 써 붙였대. 차에 보니께.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는데 뭐혀. [참여자기]

주민들은 상시가 아닌 특정한 날, 특정한 기간에만 측정되고 기준치와 같은 인위적인 법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또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주관자가 조사 주체자를 선정하고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상의 한계는 불신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주민들은 조사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자체적으로 모아온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환경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발전소나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공공시설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는 대부분 행정의 참여가 수반된다. 그러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배·보상의 경우, 행정의 참여여부는 사안의 공공성 또는 협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비용이나 절차 등에 대한 공인된 기준이나 법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적 한계가 없는 상태에서 배·보상은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사업자의 실리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제 제기의 강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졌고, 비용을 더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주민도 생겨났다. 약 30년 동안 배·보상 줄다리기를 이어오면서 주민-기업 사이는 서로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대립적인 형태로 굳어졌다. 환경오염과 안전 위협이 누적되면서 주민들은 고향을 잃었다는 상실감, 원하지 않았던 토지 수용이라는 기억을 배·보상 금액과 등치시켰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지원도 불만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또한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기업이 주민 갈등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선임하여 주민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한다.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 주민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사고로 인한 충격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모든 수단을 한순간에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를 회상하는 주민들 대다수는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적시적절한 안전조치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대피해야 했고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마을에 돌아와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해야 했다. 또한 기업이나 지자체로부터 최소한의 생활 수단을 지원받기 위해 민원과 항의를 제기해야 했다. 사고 이후에도 기업과 지자체, 관련부처 간 어떠한 협력 및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 오히려 [참여자 9]는 외부에 문제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책임기관들이 사고의 진상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 일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 3시 쯤 됐는데 갑자기 뽕 하더라고요. 그냥 어마어마한 굉음 소리가 나면서 집이 이제 흔들리죠 빠바바바박 하고. ...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 때 당시 ○○한테 전화를 했어요. ○○ 민원담당이 받더니 자기들도 회의 중이라 바쁘대요. 여기 나와서 뭐 설명해 줄 분이 없대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화나있고 막막한 상황에서.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고에 대해서나 앞으로 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 요구한 게 일단 다 날아갔으니까 잠자리가 없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일단 잠잘 곳을 일단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제 밥 먹을 데도 없으니 식사할 수 있는 걸 좀 해다오. 처음에는 그것도 잘 안 받아 주더라고요. 우리보고 대산이나 서산에 아무데나 가서서 모텔에서 주무시든 어디 가서 주무시고, 영수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요구한 걸 여러 가지 중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자기들이 해주겠다.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나중엔 나몰라라 하겠다. 왜냐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전형적인 무책임한 발언이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매뉴얼부터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참여자9]

3) 실재적 조건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알아야 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거주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조건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파악하였다.

정신과 신체적 평안은 환경권을 다루는 대부분의 국제적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인간은 자신의 터전에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설문응답자 43명(33.1%)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신체적 평안에 대해 ‘문제는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건강하지 못해 걱정된다’는 부정적 응답을 한 사람은 총 87명(66.9%)에 달했다. 설문응답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표 3-1〕 설문응답자의 건강상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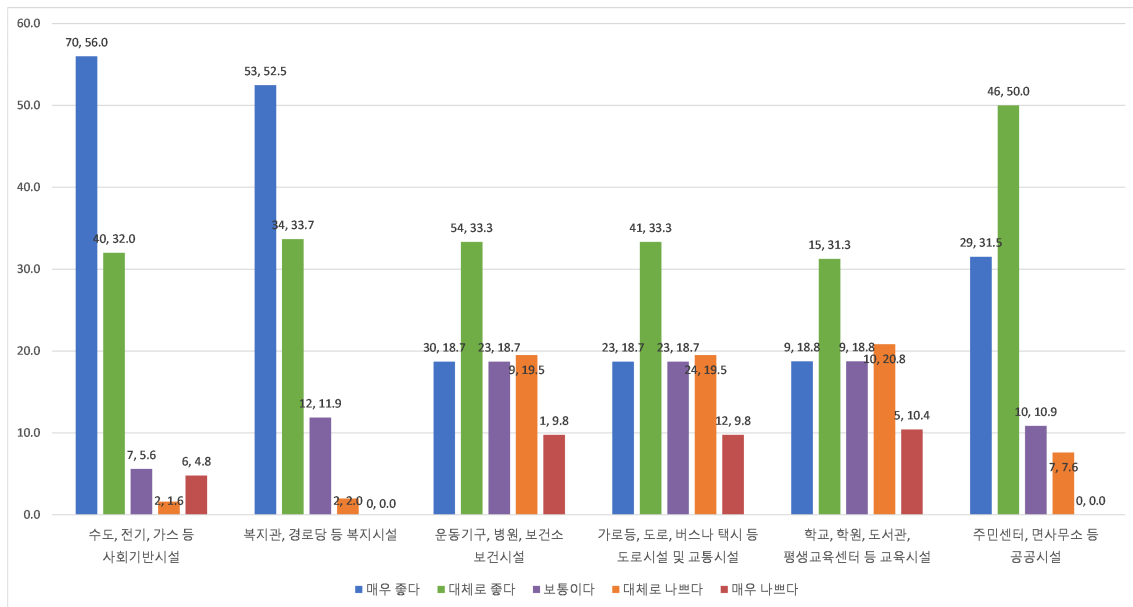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건강하다	43	33.1
문제는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43	33.1
건강하지 못해 걱정된다	44	33.8
합계	130	100.0

환경권에 내포된 ‘만족스러운 생활조건’은 자신의 발전에 유리하고 적절한 환경 수준과 생활조건의 지속적 개선가능성에 좌우된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총 여섯 가지의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였다.

우선 수도, 전기,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은 안전하고 정돈되어있는지, 복지시설 및 보건시설, 도로 및 교통시설은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지 묻고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사회기반시설은 ‘매우 좋다 70명(56.0%), 대체로 좋다 40명(32.0%)’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좋다 53명(52.5%), 대체로 좋다 34명(33.7%)’로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도로시설 및 교통시설로, ‘매우 나쁘다 12명(9.8%), 대체로 나쁘다 24명(19.5%)’였다.

환경권의 실현에 있어 교육시설이란 각종 지식뿐만 아니라 인권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공간이다. 공공시설 또한 개인이 환경과 관련한 정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공공서비스 공간이다. 설문응답자들은 학교, 학원,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시설 및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은 대체로 시설 만족도에 대해 ‘매우 좋다, 대체로 좋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설문 문항이 비교척도가 아닌 일반적 만족도를 다루는 응답임을 고려할 때,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는 응답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보통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항목은 보건시설, 도로시설 및 교통시설, 교육시설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V장에서 다룬다.



〔그림 3-3〕 거주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 만족도(명, %)

온전한 대기, 토지, 해양 등 자연환경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현재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또한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려하며 이용되어야 한다.

설문응답자 91.4%는 마을의 자연환경이 ‘나쁜 편이다(117명)’라고 응답하였다.

〔표 3-2〕 마을의 자연환경 상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좋은 편이다	5	3.9
나쁜 편이다	117	91.4
생각해 본 적 없다	6	4.7
합계	128	100.0

마을 인근의 발전소 또는 산업시설이 어떤 부분에 가장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서, ‘대기, 해양, 토양 등 자연환경(86명, 68.8%)’이라 답변한 설문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사회에 대한 답변인 ‘지역발전 및 성장(9명, 7.25%), 지역상권 등 경제(15명, 12.0%)’는 그다음으로 높았다.

[표 3-3] 발전소 및 산업시설이 미친 가장 큰 영향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지역발전 및 성장	9	7.2
지역상권 등 경제	15	12.0
대기, 해양, 토양 등 자연환경	86	68.8
가족, 이웃 등 사람들과의 관계	1	0.8
기타	14	11.2
합계	125	100.0

인권 침해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환경 인식을 묻는 질문 중 마을환경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항목 ‘①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② 피해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③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피해를 받았다’는 3가지 답변을 ‘피해있다’로, ‘④ 피해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를 ‘피해없다’라고 구분했을 때 설문응답자의 90.5%가 ‘피해있다(114명)’라고 응답하였다. ‘피해없다’는 응답은 9.5%(12명)였다.

[표 3-4] 마을환경으로 인한 피해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피해있다	114	90.5
피해없다	12	9.5
합계	126	100.0

마을의 자연환경 상태 응답에 따른 피해 인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23.716$, $p=0.001$ 로 유의수준 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마을의 자연환경 상태에 대한 응답은 피해 인식여부와 관계가 있으며, ‘나쁜 편이다’라는 답변에 대해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피해를 받았다’는 경우가 72명(61.5%)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경우도 27명(23.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리하자면 설문응답자들은 거주지역에 발전소 및 산업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자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를 체감할수

록 마을환경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5] 마을의 자연환경 상태 응답에 따른 피해 인식 여부(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피해를 받았다	피해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합계
좋은 편이다	1(20.0)	1(20.0)	0(0.0)	3(60.0)	5(100.0)
나쁜 편이다	27(23.1)	10(8.5)	72(61.5)	8(6.8)	117(100.0)
생각해 본 적 없다	2(50.0)	1(25.0)	0(0.0)	1(25.0)	4(100.0)
합계	30(23.8)	12(9.5)	72(57.1)	12(9.5)	126(100.0)
$\chi^2(p)$	23.716(0.001)**				

$p^* < 0.05$, $p^{**} < 0.01$, $p^{***} < 0.001$

나.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주장과 권리효과

권리주장은 권리조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권리침해를 인식한 주민 모임,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각종 지역단체 등 권리보유자가 국가, 정치적 권위 체 또는 기업과 같은 의무담지자에 구체적인 언어로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정전에 기반한 문항으로 작성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권리주장, 즉 인권의 언어로 해부하여 분석한다.

또한 이후에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효과를 살펴본다. 권리주장을 통해 제기된 요구들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기존 권리 상태를 갱신하며, 이는 다시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면서 어떤 집단은 추동력을 얻게 되지만, 그와 경합했던 다른 집단은 힘을 잃게 될 수 있다. 권리는 집단 사이의 관계, 나아가 권리 주장자와 국가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권리효과라고 한다(마크 프레초, 2020: 328).

- 1)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속에서 발전할 권리

가) 권리주장

환경권은 모든 이가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세대의 권리 또한 해치지 않는 건강하고 온전한 생태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

권리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각 조사대상지마다 인접한 산업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오염원에 책임을 묻는 답변은 ‘발전소 때문에’, ‘제철단지 및 산업단지 때문에’로 구분하였다. 환경오염 그 자체만을 문제 삼을 경우 ‘환경오염의 심화 때문에’라는 응답으로 분류하였다. 오염원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인식하는 것과 환경오염 그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응답자가 피해에 대해 대응하거나 책임을 묻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아래 [표 3-6] 거주지별 마을의 환경이 나쁜 이유를 교차분석한 결과, $\chi^2=50.580$, $p=0.000$ 로 유의수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대립가설을 통해 거주지와 마을의 환경이 나쁜 이유에 대한 응답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진화력 및 송전탑 문제로 오랜기간 갈등했던 지역인 당진 석문면 교로1리(5명, 4.6%), 교로3리(4명, 3.7%), 삼봉4리(12명, 11.0%) 설문응답자들은 마을환경이 나쁜 이유를 환경오염 상태를 통해 느낄 뿐만 아니라 발전소라는 특정 오염원 때문이라고도 여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진 송악읍 고대1리(8명, 7.3%), 고대2리(9명, 8.3%), 서산 대산읍 독곶1리(6명, 5.5%), 화곡1리(5명, 4.6%) 설문응답자들은 환경오염의 심화뿐만 아니라 제철단지나 화학단지로 인해 환경악화가 초래된 것이라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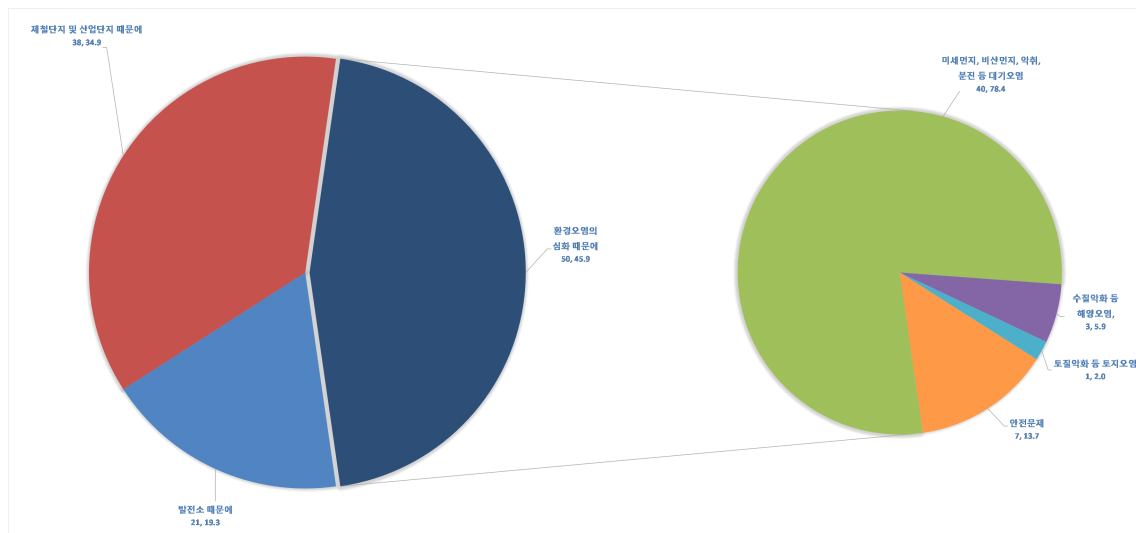
[표 3-6] 거주지별 마을의 환경이 나쁜 이유(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발전소 때문에	제철단지 및 산업단지 때문에	환경오염의 심화 때문에	합계
고대1리	0(0.0)	8(7.3)	5(4.6)	13(11.9)
고대2리	0(0.0)	9(8.3)	4(3.7)	13(11.9)
교로1리	5(4.6)	2(1.8)	1(0.9)	8(7.3)
교로3리	4(3.7)	2(1.8)	6(5.5)	12(11.0)
삼봉4리	12(11.0)	5(4.6)	10(9.2)	27(24.8)
독곶1리	0(0.0)	6(5.5)	5(4.6)	11(10.1)
화곡1리	0(0.0)	5(4.6)	16(14.7)	21(19.3)
기타	0(0.0)	1(0.9)	3(2.8)	4(3.7)
합계	21(19.3)	38(34.9)	50(45.9)	109(100.0)
$\chi^2(p)$	50.580(0.000)***			

$p^* < 0.05$, $p^{**} < 0.01$, $p^{***} < 0.001$

‘환경오염의 심화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던 설문응답자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마을환경 상황의 악화를 느끼는지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78.4%(40명)가 ‘미세 먼지, 비산먼지, 악취, 분진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꼽았다.



* 서술형 응답을 범주화

[그림 3-4] 마을의 환경이 나쁜 이유-환경오염의 심화 때문에 상세(명, %)

인간 안녕의 보장은 환경권의 속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신체 및 정신적으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권리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표 3-1] 설문응답자의 건강상태에서 ‘문제는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건강하지 못해 걱정된다’고 응답한 설문응답자들에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질환은 ‘통풍, 만성 관절염 등(49명, 38.3%)’, ‘고혈압, 당뇨병(17명, 13.3%)’이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유의하여 살펴볼 응답은 ‘암(16명, 12.5%)’로, 많은 설문응답자들이 본인은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 대부분이 암 투병을 하거나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표 3-7〕 질병의 종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통풍, 만성 관절염 등	49	38.3
고혈압, 당뇨병 등	17	13.3
비염·천식 등 기관지 질환	10	7.8
안구 질환	1	0.8
피부 질환	3	2.3
두통, 뇌 질환	6	4.7
우울증 등 정신질환	2	1.6
암	16	12.5
기타	24	18.8
합계	128	100.0

정신적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설문응답자들은 대체로 ‘보통이다(68명, 39.3%)’라고 응답했다. 많은 응답자가 작은 마을에서 노년을 보내 평안하다고 답변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을환경 때문에 겪는 불편을 호소했다. 이 경우 부정적 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통이다, 외롭다, 우울하다, 기타’의 항목으로 응답을 구분하였다.

〔표 3-8〕 정신적 건강 상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행복하다	28	16.2
편안하다	30	17.3
보통이다	68	39.3
외롭다	4	2.3
우울하다	18	10.4
기타	25	14.5
합계	173	100.0

자원의 이용과 이익의 공평한 분배는 개인과 집단이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환경을 만드는 요소이다.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이 환경권의 속성 중 ‘만족스러운 생활 조건 속에서 발전할 권리’에 대한 권리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응답자들에게 악화된 마을환경으로 인해 ‘가장 피해받은 대상’을 물었을 때, 대부분이 ‘이웃과 우리 마을’을 꼽았다.

[표 3-9] 가장 피해받은 대상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나와 가족	4	3.5
이웃과 우리 마을	107	93.0
충남 지역	1	0.9
국가	1	0.9
기타	2	1.7
합계	115	100.0

‘가장 피해받은 내용’은 ‘대기, 토지, 바다 등 자연환경(79명, 42.7%)’이며, ‘건강상태(58명, 31.4%)’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두 번째로 많았다. ‘농업, 어업, 축산업 등 생계 수단(31명, 16.8%)’에 악영향을 받았다는 응답도 세 번째로 많았다.

[표 3-10] 가장 피해받은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건강 상태	58	31.4
마실 물, 식품 등 먹거리 상태	4	2.2
농업, 어업, 축산업 등 생계 수단	31	16.8
주택, 토지 등 재정적 부분	2	1.1
대기, 토지, 바다 등 자연환경	79	42.7
가족이나 이웃 등 사람 간 관계	2	1.1
기타	9	4.9
합계	185	100.0

이러한 답변을 정리하면 설문응답자들은 마을환경을 이용해 나오는 이득은 주로 기업이나 산업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나빠진 환경 상황 때문에 피해를 주로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실제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 수준을 측정한 결과,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은 여러 주거 인프라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거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 만족도에 대한 답변인 ‘매우 좋다, 대체로 좋다’를 긍정적 응답으로,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를 부정적 응답으로 각각 합산하여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은 항목은 보건시설(29.3%), 도로시설 및 교통시설(29.3%), 교육시설(31.3%)이었다.

설문응답자가 ‘보통이다’, 또는 부정적 응답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묻자 20명(33.3%)이 ‘대형트럭 등 위험하고 좁은 도로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보건시설의 미흡함 또는 낮은 접근성(10명, 16.7%)’을 문제 삼은 응답자도 두 번째로 많았다. 산업시설이 몰려있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8명, 13.3%)’이 심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설문응답자들은 산업시설과 이어진 큰 도로, 전기 등 발전소 및 산업시설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발전을 위한 병원 등 보건 및 교육시설 등은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거나 시설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연구’를 통해 석문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해안관광산업도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도 등이 신설되어 기간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가 상수도, 의료, 교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미흡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당진시, 2015) 도-농간 격차로 인해 낙후되었던 지역 상황에 더불어, 각종 산업시설로 인해 ‘대형트럭 등 위험하고 좁은 도로환경’, ‘교통체증’ 등 보행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 이용에 불편한 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버스 등 대중교통의 낮은 접근성	5	8.3
대형트럭 등 위험하고 좁은 도로환경	20	33.3
교통체증	8	13.3
보건시설의 미흡함 또는 낮은 접근성	10	16.7
교육시설의 부재 또는 낮은 접근성	7	11.7
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부재 또는 미흡함	6	10.0
기타	4	6.7
합계	60	100.0

나) 권리효과

그동안 위와 같은 지역 내 환경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전략이 모색되었다. 이인희(2014)는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가 지원사업 및 세수 증대라는 긍정적 영향과 환경피해 및 연안 어업피해 등 부정적 영향 모두를 주었다고 조망하면서, 환경피해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증세, 지역 전력가격 차등화 등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2013년 충남도청은 처음으로 도내 주요 환경오염지역인 발전소 인근 4개 지역, 당진철강단지 및 서산석유화학단지 주변 등에 거주하는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결과를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건강조사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위해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과 토의, 조사 과정에서의 개별적 주민 면담, 건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도민 차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소통방안을 고민하며 보다 개방적, 민주적 변모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문가와 행정가 등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던 연구가 주민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로 바뀌면서 절차적 수준에서의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보장방안이 점차 개선되었다.

이와같은 개선방안이 집행에도 불구하고 당장 건강과 환경 위해요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수립해달라는 투쟁을 지속하였다. 주민들은 이주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경제성의 부족’에서 찾는다. 기업들이 인근지역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더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필요도, 이주라는 선례를 남길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을 곤란에 빠뜨린 것은 정부였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적 조치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가령 친환경 메커니즘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실질적으로 이를 구현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많은 부분을 영리기업의 기술과 자금에 의존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규제를 활용하면서, 기업의 생리에 대한 고려 없이 벌금을 매겨(혹은 이에 의존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선진적 정책을 홍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실리를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속성이 지역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정부의 정책이 이런 식인 게 굉장히 많아요. 폐기물이 이제 발생하면 최근에 폐기물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몇 년 전에 생겼어요. 재활용을 권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걸 톤 당 만원을, 돈을 내라는거죠. 기업이요. 그럼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매립이나 소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재활용하는 방법을 그럼 정부에

서 강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그건 모르겠고 일단 돈 내. 이렇게 이제 입안이 되는거죠. [참여자6]

국가주도식 경제성장 정책, 집약적 기업 유치는 시민들이 국가나 기업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한편, 기업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힘든 구조 또한 형성하였다. 이는 충남 서북부지역 내 갈등이 초래되는 주요한 요인이다.

2)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개발 및 발전할 권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환경약자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보호 및 지원

가) 권리주장

천연자원 및 생태환경을 이용한 개발에서 모든 자원은 고갈 위험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얻어낸 부와 수익은 자유롭고 공평하게 처분되어야 한다. 천연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환경권의 다양한 속성 중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개발 및 발전할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응답자들에게 마을환경으로 인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50명(42.0%)의 응답자가 ‘기업이나 산업체’가 이득을 본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 38명(31.9%)의 기타 응답에서는 ‘없다 또는 모른다(10명)’,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4명)’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웃과 우리 마을’이라는 응답은 21명(17.6%)이었다. 기업이나 산업체가 토양, 해양 등 자연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덕분에 마을이나 지역의 상권, 일자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표 3-12] 마을환경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대상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이웃과 우리 마을	21	17.6
충남 지역	4	3.4
충남 이외 지역	2	1.7
국가	4	3.4
기업이나 산업체	50	42.0
기타	38	31.9
합계	119	100.0

환경권을 다루고 있는 여러 원칙과 협약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속성을 담고 있어 여타의 국제 인권 문헌과 차이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자의 생활방식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과학과 기술 발전의 혜택을 이용하여 평등하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을 마련하여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지속가능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과학과 기술발전 등의 혜택을 누리며 손쉽게 환경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설문응답자들은 주로 환경이나 마을 소식과 관련된 정보를 ‘마을 이장, 청년 회장 등 이웃(54명, 47.4%)’으로부터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많았던 ‘기타(35명, 30.7%)’ 응답에는 ‘직접 알 수 있다(17명)’, ‘사람들(11명)’로부터 듣는다, ‘국가나 환경단체(5명)’가 알려준다는 답변이 있었다. ‘뉴스나 인터넷(15명, 13.2%)’으로부터 전달받는다는 응답은 전체 순위 중 세 번째로 많았다.

[표 3-13] 마을환경에 대한 정보 출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충남도,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6	5.3
산업단지 등 기업에서	1	0.9
뉴스나 인터넷에서	15	13.2
마을 이장, 청년회장 등 이웃이	54	47.4
가족이	3	2.6
기타	35	30.7
합계	114	100.0

환경권은 환경약자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보호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약자들의 의견표출과 활동을 좀 더 능동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의사표현을 하게 만든 동기’를 묻는 문항을 통해 공동체 보전을 위한 주체적 활동의 원동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3-14] 의사표현을 하게 만든 동기에서 알 수 있듯 설문응답자들이 시위나 저항, 이웃들과 논의를 했던 주된 이유는 ‘이주지원 또는 배·보상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18명, 48.6%)’였다. 또한 ‘자신과 이웃, 마을공동체의 생존과 터전을 위해서(12명, 32.4%)’라는 응답은 두 번째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설문응답자들의 응답 속에는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살아온 가족, 이웃들에 대한 걱정과 관계에 대한 답변이 존재하고 있었다.

[표 3-14] 의사표현을 하게 만든 동기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이주지원 또는 배·보상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18	48.6
건강악화, 농작물, 환경오염 등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5	13.5
자신과 이웃, 마을공동체의 생존과 터전을 위해서	12	32.4
기타	2	5.4
합계	37	100.0

나) 권리효과

리우환경회의(1992)의 개최와 리우선언의 채택, 기후변화협약(1994)과 교토의정서(1997)의 발효, 이에 더해 당시 불안정했던 국제유가 상황은 자원 이용에 대한 국내외적 경각심을 일으켰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전부 개정하고(1991), 1993년 제1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1992~1997)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1차 계획의 목표가 에너지의 총체적 절약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었다면, IMF외환 위기 이후 시행된 2차 계획에서 정부는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을 구축하고자 했다. 3차 계획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0년에는 지자체 중심의 투자 확산, 수요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향식 참여, 에너지 전환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6차 계획이 실시되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함께 탈핵·탈석탄, 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의제가 정치·사회·경제 분야 전반에 떠올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도는 그중에서도 탈석탄을 위한 에너지 전환 담론, 정책 대안, 사업추진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평가받는 곳이다. 충남도가 수립한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전략은 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4개년 계획(2014~2018),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2015~2020), 충남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발전계획(2016~2030),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전략(2016~2030), 충청남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2017~2021) 등 다채롭다. 2017년 도는 ‘2050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을 기획해 도민 참여를 통한 비전을 수립했다. 2018년에는 국제 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Under2 Coaliton)과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 방안을 강구하였다. 2019년에는 동아시아 도시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탈석탄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을 공언하기도 했다. 특히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탈석탄 금고’¹⁵⁾는 다른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총 150조 원에 이르는 연간 금고 재정 규모가 그 영향력을 일부분이나마 설명해 준다(원세연, 2020).

충남도 내에서도 당진시는 환경위기 대응이 비교적 빠른 지역이다. 당진시는 2020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기후에너지과 예산을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송악읍 고대리 일원 배전선로 지중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운영, 수소전기차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임아연, 2021), 설계수명을 다하는 당진화력 1~4호기를 2030년까지 차례로 폐쇄하고 2,000MW의 발전용량분은 LNG발전을 통해 대체한다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임아연, 2019). 이러한 정책 이행 과정에서 당진시에너지센터, (사)당진시개발위원회,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과 함께 시민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원순환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박경미, 2020).

한편 기업은 행정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름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대기오염, 분진 등을 저감할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법적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감시설, 매뉴얼 등의 적합성도 재차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ESG)이라는 경제성장중심 패러다

15)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이 재정운용기관을 선정할 때 석탄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대체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정책이다.

임의 전 세계적 전환에 맞추어 지역 상생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로 인식하는 사업장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사회공헌사업 실시 전에는 최대한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내 소통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대폭 확충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치다.

이후 기업의 대응 방식이 이전과는 다소 달랐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금전적 배상을 했던 관행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사회라는 무대에 등장해 공정성에 대한 이해와 물리적 한계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대화를 시작하고자 했다. 적대적이었던 사업장 인근 및 지역 거주민과의 관계를 극복하고 공존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사고 발생 시 즉각적 대처가 용이하도록 소방서, 방제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상황판단관 등을 양성하기로 하거나,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2020년, 충청도 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 속한 기업들은 도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업들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전환적 조치 대다수는 행정적, 정책적 규제와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진다.

인권 및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에 협력하는 것은 환경권 보호책임을 가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정책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환경오염 피해의 책임 및 배상과 관련된 국제법 발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갱신안을 유엔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하면서 그 전 정부부터 세워졌던 수치를 다시 사용하여 기후변화의 위급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최우리, 2021). 같은 해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나 탈탄소 산업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고, 탄소 순배출제로를 달성할 명확한 시기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정상훈, 2020).

산업시설과 석탄화력발전이 밀집해있는 충남 서북부지역은 이러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대응 의제의 핵심인 불평등, 차별 등의 문제가 현실화하여 나타나는 곳이다. 2020년 전국에서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 도시는 충남 당진이었다. 리스트 상위 10곳 중 5곳은 충남 도내 지역인데, 이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반면 감축 정도가 가장 낮은 10위권은 서울과 경기도 내 지역이었다. 서초구, 강남구는 하위 1, 2위에 속했다(윤지로, 2020). 이러한 불평등은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 동원의 과정이 모두 중앙 정부 주도의 계획수립, 하향식 이행방식으로 추진되어 발생한 결과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권 아래에서 지방정부는 권한과 재정의 한계로 인해 지역에너지 주권의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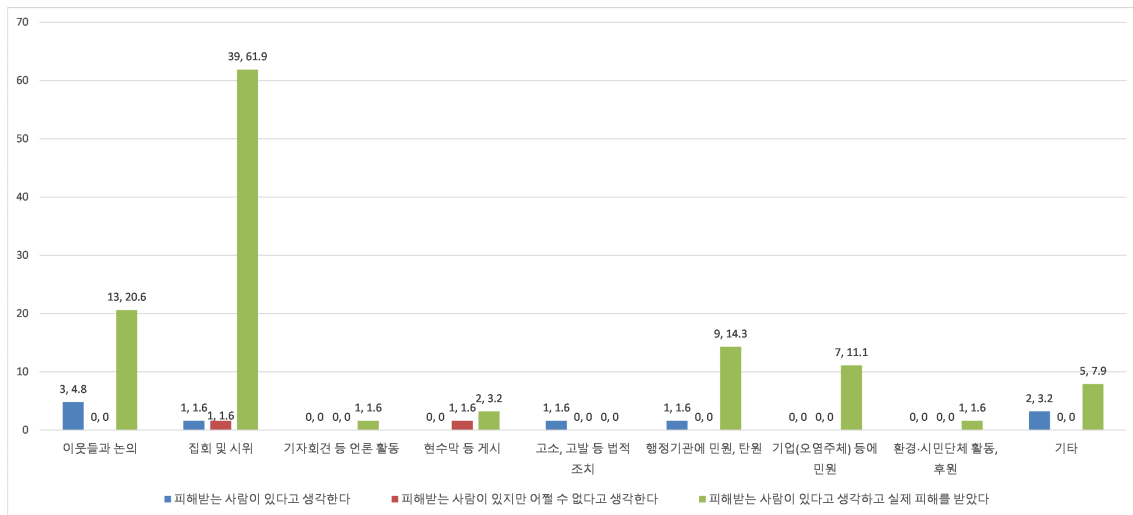
을 제한받았다. 한국 사회에서의 기후정의 실현은 이러한 역사적,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이안 앵거스, 2012).

3)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에 저항·의견을 표현할 권리

가) 권리주장

세대별 인권 범주를 아우르는 환경권 속에는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환경권의 속성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의 결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에 대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저항의 실천은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의 보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 환경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수렴되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환경권은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에게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마을의 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의견을 표현하거나 저항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다중응답분석 결과,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피해를 받았다’고 답한 39명(44.8%)의 설문응답자가 ‘집회 및 시위’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피해를 인식하는 경우보다 실제로 오염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행동으로 이어진 응답빈도가 높았다. 이는 다른 항목과 비교했을 때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피해를 받았다’ 항목에서 ‘이웃들과 논의(13명, 14.9%)’, ‘행정기관에 민원, 탄원(9명, 10.3%)’, ‘기업(오염주체) 등에 민원(7명, 8.0%)’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은 데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 다중응답분석

* 퍼센트 및 합계는 반응 기준

[그림 3-5] 피해받은 경우 의견을 나타낸 방법(명, %)

‘피해있다’고 응답한 설문응답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는지 물었을 때, ‘배·보상 요구’가 13명(2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타 대책마련’을 요구한 비중은 10명(21.3%), ‘이주요청’은 7명(14.9%)였다.

[표 3-15] 의사표현의 내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이주요청	7	14.9
배·보상 요구	13	27.7
건강악화에 대한 책임 및 건강검진 실시 요구	8	17.0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요구	9	19.1
기타 대책마련 요구	10	21.3
합계	47	100.0

궁극적으로 이러한 마을환경에 대한 책임 소지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과반이 넘는 설문 응답자들이 가장 큰 책임은 ‘기업이나 산업체(82명, 55.0%)’에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가(37명, 24.8%)’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두 번째로 높았다.

〔표 3-16〕 마을환경에 대한 책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나와 가족	1	0.7
이웃과 우리 마을	5	3.4
충남 지역	8	5.4
국가	37	24.8
기업이나 산업체	82	55.0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1.3
기타	14	9.4
합계	149	100.0

4) 권리효과

산업시설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주목할 점은 주민, 시민단체, 노동자, 전문가, 행정,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한 대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2019년 서산시 일반산업단지 내 한화토탈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폭발 사고 이후, 사측이 민관 협의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플랜트노동조합, 한화토탈노동조합, 대산읍이장단, 지곡면주민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사고원인 조사에 함께하는 이 과정은 사고의 지리적 범위를 산업단지 인근을 넘어 서산시 전체로 확장하였고, 지역 주민 모두가 공통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가 한화토탈 사고 이후에 민간감시단 꾸려질 때 목표가 그런거였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걸 좀 더 환경이나 안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혹시 지원이나 이런걸 하더라도 뭐 개인이나 마을에 보상하는 차원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이후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말 대산 쪽에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의료 관련된 거라도 제대로 있던가 뭔가를 해보자. [참여자4]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지원받아 2018년 출범한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는 주요 업무인 대기질 측정을 주민참여 하에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지며(심규상, 2018), 조사 관련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실제 근 몇 년간 비산먼지가 개선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임아연, 2020a). 센터

내 환경전문가들은 주민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설명회 등을 상시 개최하고, 정보매체를 다양화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소통방식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제도적으로 환경운동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진시는 전국 시군구 중 최근 5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당진시 최대배출원은 현대제철 사업장이었는데, 그동안 별도의 전문 감시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에 2016년부터 이루어져 왔던 당진화력발전소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립 움직임을 통해 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인지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현대제철 사업장의 감시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윽고 2019년 해당 지역구 의원, 당진시장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제8조(민간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었고 2020년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산업시설의 입지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기조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 관료적 위계질서 속에서 유해시설로 인한 문제가 보고하기 어렵고 책임 소지를 다뤄야 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그것의 예방과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공무원 사회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과거에는 어떤 문제 어떤 유해시설 이런 거조차 들춰내는 것조차 굉장히 민감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이걸 들춰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들춰내면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에 이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되게 민감한 문제고 고생해야 하고 시달리고.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전국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이제 들춰내서 오히려 이걸 잘 예방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또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거다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공무원도 바뀌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렇게 흐름이 바뀌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참여자11]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환경 교육 강사양성, 시민참여 지속가능 발전소, 에너지센터 등의 설립은 시민들의 전반적인 환경 인식을 높였다. 발전소, 송전탑, 산업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직접 뛰어들어 투쟁 속에서 탈석탄·탈핵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 자신이 처한 환경문제의 핵심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은 마을 내 투병 또는 사망 인원, 해양 및 토양오염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기록했다. 유사한 문제로 투쟁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와도 연대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들을 통해 주민들은 모든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 에너지 및 자원의 대량생산과 소비, 나아가 재벌과 같은 특정 계급에 집중된 자본의 축적에 따른 것임을 통감하며 자신들을 지속가능한 환경 전환의 주체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산업시설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 주민들의 뜻이 담긴 운동을 전개할 방도를 고민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실제적 소통방안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현안이나 시설 입지에 대해 알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하며 충분한 열람 기간을 둔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소통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산업시설 입지 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차 논의한다면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행정에 있다고도 말한다. 공권력을 가진 행정이 주도한다면 보다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우리가 결국 요구하는 건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주민 갈등과 이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져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이 정말 견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서 알게 되면, 거기서 붙은 갈등은 해결하기 어렵거나 돌이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몇 퍼센트 이상 진행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더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여나가는 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달라라는 거죠. [참여자4]

5) 환경을 이유로 강제퇴거 되지 않고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권리, 모든 재난에 대한 원조를 받을 권리

가) 권리주장

환경권에 관한 여러 국제 원칙과 협약들은 인간에게 환경피해 및 환경 위협이 초래되었을 경우, 행정 및 사법 절차에 의거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제 및 보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해두고 있다.

권리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응답자에게 환경문제로 인해 배·보상¹⁶⁾을 받거나 협의한 경험이 있는지 묻고 이를 지역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chi^2=53.453$, $p=0.003$ 으로 유의수준 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립가설이 채택

16)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나 피해에 대한 대가를, '보상'은 수용 및 국유화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지역별 배·보상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합계에서 보여지듯 배·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51명(42.9%)로 가장 높고, ‘배·보상을 모두 받았다’는 응답은 대체로 저조했다.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삼봉4리’에서 17명(14.3%)이 응답하여 가장 높았다.

‘배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서산일반산업단지 인근 마을인 독곶1리(7명, 5.9%)에서 가장 높았고 인근 마을인 화곡1리,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단지 사이에 있는 마을인 고대1리와 고대2리에서도 배·보상에 대한 응답이 존재했다.

[표 3-17] 환경문제로 인한 배·보상 경험(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배상을 받은 적이 있다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	배상과 보상을 모두 받은 적이 있다	배상이나 보상을 협의한 적이 있다	없다	전체
고대1리	4(3.4)	3(2.5)	0(0.0)	0(0.0)	7(5.9)	14(11.8)
고대2리	2(1.7)	2(1.7)	0(0.0)	1(0.8)	7(5.9)	12(10.1)
교로1리	1(0.8)	7(5.9)	0(0.0)	0(0.0)	4(3.4)	12(10.1)
교로3리	0(0.0)	7(5.9)	0(0.0)	0(0.0)	2(1.7)	9(7.6)
삼봉4리	0(0.0)	17(14.3)	0(0.0)	0(0.0)	14(11.8)	31(26.1)
독곶1리	7(5.9)	4(3.4)	0(0.0)	0(0.0)	2(1.7)	13(10.9)
화곡1리	3(2.5)	4(3.4)	1(0.8)	2(1.7)	14(11.8)	24(20.2)
기타	0(0.0)	3(2.5)	0(0.0)	0(0.0)	1(0.8)	4(3.4)
합계	17(14.3)	47(39.5)	1(0.8)	3(2.5)	51(42.9)	119(100.0)
$\chi^2(p)$	53.453(0.003)**					

$p^* < 0.05$, $p^{**} < 0.01$, $p^{***} < 0.001$

[표 3-17] 환경문제로 인한 배·보상 경험 응답에서 배·보상을 받거나 협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설문응답자들에게 ‘배·보상 절차에 참여했던 경험’이 어땠는지 묻자, ‘보상금 수령’을 했다는 응답이 25명(51.0%)로 가장 많았고, 앞서 언급되었듯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동기금(8명, 16.3%)’을 받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배상금 수령’ 또는 ‘명절선물, 경조사, 관광 등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각 5명(10.2%)로 나타났다.

[표 3-18] 배·보상 규모 및 내용에 대한 응답 상세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보상금 수령	25	51.0
배상금 수령	5	10.2
관리비, 전기세 등 절감	2	4.1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동기금	8	16.3
명절선물, 경조사, 관광 등 지원	5	10.2
건강검진	1	2.0
시설 지원 및 건립	3	6.1
합계	49	100.0

* 서술형 응답을 범주화

‘배·보상 당시 및 이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설문응답자들의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었다. ‘배·보상금의 규모나 방식으로 인한 이웃 간 관계 및 마을공동체의 분열’이 10명(47.6%)로 가장 많았고, ‘정부 또는 기업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8명, 38.1%)은 그다음으로 많았다.

[표 3-19] 배·보상 당시 및 이후 상황에 대한 응답 상세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배·보상금의 규모나 방식으로 인한 이웃 간 관계 및 마을공동체의 분열	10	47.6
정부 또는 기업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신	8	38.1
건강검진, 농작물 피해보상 등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무시 또는 불이행	3	14.3
합계	21	100.0

나) 권리효과

배·보상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심층면접을 분석한 결과,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개인 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주민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을 끌며 투쟁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이면 보다 넉넉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 다수의 동의 끝에 기업의 지원금으로 공

익재단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더라도, 행정 또는 시민단체 등이 이를 꾸준히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 협의 이후에도 재단 기금 운용 자체를 문제 삼거나 자신이 사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부적 갈등이 꾸준히 발생한 탓이다.

(시민단체가) 지속가능상생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매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되지는 않아요. ○○○○연합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가진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연합은 지역의 환경이나 건강,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공복리, 복지 이쪽에 함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딴 데 쓰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요. 가령 면 체육대회라던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항상 갈등이 있어요. [참여자3]

기업들은 당초 입지 결정을 앞두고 환경오염 저감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 경제 성장 필요성에 대한 강조 등 다양한 공약을 통해 지역 주민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 수행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합의 내용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 현안이 많은 지역 특성상 시민들의 지속적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설혹 합의서가 있더라도 그것이 지역 여론 형성 또는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 방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이 지역 일자리 확대를 내걸고 입지를 한 경우,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었다. 채용 조건에 미달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은 이러한 문제를 거의 방조했다. 현재 행정, 기업, 시민단체, 주민, 언론 등 모두가 과거 합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행 정도와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았고,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행정의 주의로 전문가가 소환되거나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의 사용 또한 엄격한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지원금은 각 마을별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로 지급되는데, 그 사용처가 개발위 지도부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위의 권력이 강해졌다. 또한 지원금을 둘러싼 이권 및 세력 다툼이 빈번해졌다. 사단법인인 개발위원회를 통솔할 행정적 권한은 충남도에 있으나 무용한 상태였다. 주민들의 부패와 공동체의 와해를 충남도와 지자체가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위는 사단법인이거든. 사단법인의 관리는, 지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도가 승인권자야. 충남도가 관리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충남도가 지정한 사단법인이 도에 얼마

나 많겠어. 그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 석문개발위원회에 조직적으로 경찰서, 시청, 충남도청, 주요 관공서들 있잖아, 검찰청 이런 데 꾸준히 로비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로비스트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이 있다고 들었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도 근거와 정황이 나오고 신문 1면에 7, 8주 동안 때리고 이래도 경찰이 수사를 안 해.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 끊임없이 개발위 투명해져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사실상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개발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그게 가장 극심해. 그니까 현 개발위 집행부를 내리고 내가 하겠다는거지 뭐. [참여자2]

다.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꾸러미

지금까지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 지역의 ‘권리의 난제’를 다층적 형태의 ‘권리조건’, 환경권을 내재한 ‘권리주장’, 제도와 권력관계의 변화로 드러난 ‘권리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렇게 권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화하는 형태를 ‘권리의 순환’이라고 한다. 이 과정은 권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현존하는 인권정전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영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크 프레초(2020: 288-289)가 제시한 세 가지의 권리꾸러미에 더해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두 가지의 권리꾸러미를 추가하고 각 항목 아래에 권리보유자, 인권담지자의 역할을 제시하여 권리의 난제를 돌파할 방안을 모색한다.

그에 앞서 의무담지자와 권리보유자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우리는 인권정전에 대해 살펴보면서 국제사회, 국가, 기업을 의무담지자로 상정하였다. ‘유엔기구들의 공통 이해를 위한 개발협력에 관한 인권 기반 접근법(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Agencies, 2003)’에 근거할 때, 의무담지자는 권리보유자의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권리보유자는 계속해서 권리를 발굴하고 증진을 요구할 수 있다.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 지역의 주된 의무담지자는 마을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마을환경에 대한 책임’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기업이나 산업체, 국가’가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가장 많은 책임을 가진다고 보았다. 심층면접 분석을 통해 보면 ‘피해보상’이라는 틀을 벗어날 경우 책임의 범위는 ‘모든 사람, 그냥 무심하게 사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 그리고 ‘정책입안자, 당진시와 당진시장, 충청남도과 충청남도지사’와 같은 정책 승인 및 이행자, 경제발전의 부산물인 불평등을 이용하는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늘어난다. 또한 권리조건 분석에 따르면 의무담지자는 ‘국제사회, 북반구, 선진국 초국적 기업,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확대된다.

권리보유자는 '마을의 자연환경 상태 응답에 따른 피해 인식 여부(교차분석)'에서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114명(90.4%)의 주민들, 이에 더해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지역공동체 와해로 고통받는 주민, 정부나 기업 지원을 받는 수혜자'와 같은 지역 주민, 또한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모든 사람'이 권리보유자에 포함된다. 권리조건 분석에 따르면 권리보유자는 '남반구, 제3국가, 개도국, 기후난민, 미래세대'까지로 확장된다. 인권정전에서는 '지구, 생명공동체, 생태환경'도 권리보유자로 인정한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모두 권리의 난제를 해결할 '이해관계자'이자, 환경권에 대한 책임 및 의무-권리를 가진 대상들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개체의 노력이 강조될 경우, 권리의 책임이 모호해지고 개선방안도 지엽적 사안에 국한되기 쉽다. 바로 이 지점에서 커먼즈의 논리가 필요하다. 모두가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가지되, 인간이 한계지은 지역별 구획을 뛰어넘은 물리적 층위, 논리적 층위, 내용적 층위와 같은 다차원적 접근을 상상함으로써 진보된 환경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기후 커먼즈로써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대기를 이용하는 공동체'를 하나의 층위로 설정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시기, 사용연료의 종류와 수송 및 이용과정 등으로 실질적 범위와 대상을 조건 지을 수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대기환경권'을 또 하나의 층위로 둔다면, 기후위기는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고의적 후손살해 범죄에 해당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의 양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권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범죄 가해자로 규정해 형사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다(조효제, 2020: 118). 이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연장선에서 권리의 층위로 묶어낸 '권리꾸러미'를 이해해야 한다.

1) 건강 장수 권리꾸러미: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요한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

'건강 장수 권리꾸러미'는 모든 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전에 기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공평하고 적절한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누리며, 오염, 환경파괴,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보호권리와 수급권리이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근거한 앞선 분석에 따르면, 건강 장수 권리꾸러미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장', '환경보호를 고려한 자원이용'의 보호 권리,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

강을 향유할 권리’, ‘만족스러운 생활조건 속에서 발전할 권리’와 같은 수급 권리를 포함한다.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및 산업시설 입지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기, 해양, 토양 등 자연환경’에 대한 악영향이었다. 노화 이외에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큰 걱정거리 또한 악화된 자연환경에 있었다. 만족스러운 생활 조건은 일생동안 일궈온 재산, 노동, 일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프라, 인간관계 등이 보장될 때 갖춰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재산권’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수급권리이다. 송전탑이 세워지거나 선하지가 되면서, 거주지 바로 옆에 산업시설이 생기면서 기존보다 하락한 재산 가치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권’의 침해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엔 전통적 경제활동이었던 수산업이 불가능해지면서 농업으로 생계 수단을 변경하거나,¹⁷⁾ 터전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운 산업체 노동자들은 인근 마을에 거주하기도 하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전통적 방식으로 자연을 이용하여 탄소발자국이 낮고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를 활성화시켰던 농·수산업이 무너지고, 산업시설로 인한 제조업 및 건설업, 비정규 노동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조건을 형성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까지 추구할 권리의 기반이 저해된 것이다. 이는 인간 발전에 필수적인 보건시설, 도로시설 및 교통시설, 교육시설과 같은 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거주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 만족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에 심층면접 참여자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권리라 하겠다.

앞서 언급된 ‘정의로운 전환’ 담론을 통해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보완할 수 있다. 기후붕괴를 가속하는 화석연료 사용과 회색토건산업을 감축·중단하고, 그에 따른 노동의 지역화, 일자리 전환 및 재배치, 지역 주도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생태계 보존 또한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기반할 때, 이러한 권리보유자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무담지자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의 의무와 책임

17) 김은진(2018)은 한국의 농업이 식량 생산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탓에 농민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도,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농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공공성은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구호 수준에 머무른 이유이기도 하다.

1.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서의 건강권 인정
2.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및 산업 위생 모든 부문의 개선
3.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 이행
 -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보건진료 제공 및 보건 서비스 확장
 - 질병에 걸리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정신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산업시설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스트레스, 트라우마 치료와 이웃 및 지역공동체 복구를 위한 상담과 치료 이행
 - 건강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교육 시행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상의 요구 충족
4. 친환경·재생에너지 사용 권리 보장
 -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시설의 감축·폐쇄와 친환경·재생에너지 사용 정책 강화
 - 대규모 발전시설의 축소·폐쇄
 -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 개인, 공동체의 에너지 사용 감축 및 에너지 소규모 생산 방안 모색과 지원
5. 도시 녹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도시 녹지 취약성 평가지표 마련

○ 기업의 의무와 책임

1.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서의 건강권 인정
2.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및 산업 위생 모든 부문의 개선
3. 지역 주민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 이행
4. 직장에서 최대한의 안전과 위생 보장
 - 직업병 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 항만 운송, 청소, 경비 등 분진과 탄가루가 발생하거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호흡 및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예방과 적절한 치료 및 대처를 위한 교육 시행
5. 친환경·재생에너지 사용
 -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시설의 친환경·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관련 기술발전에 적극 협력

2)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꾸러미: 자신의 재능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꾸러미’는 국제적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부와 천연자원을 공평하고 자유롭게 처분하고 이익을 얻으며, 모든 이가 발전의

주체로써 적극 참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인간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권리와 수급권리이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근거한 앞선 분석에 따르면,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꾸러미는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기업, 각종 국제기구의 지원 및 협력’,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시행’, ‘온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및 정책 시행’, ‘환경위험 교육 및 과학, 기술, 문화의 공평한 발전을 위한 조치’의 보호 권리,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개발 및 발전할 권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과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환경약자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보호 및 지원’과 같은 수급 권리를 포함한다.

오랜 기간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에 거주한 심충면접 [참여자1]은 ‘나랏일’, ‘국가 권위주의’ 등과 같은 단어로 산업시설 입지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설명하였다. 경제성장이 우선되는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불가능했다. 구연창(1986;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27)은 자본주의적 체제하에서 발생한 해악을 그 체제에 입각한 논리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환경행정의 빈곤이 그동안 환경파괴를 긍정하는 이론을 합리화해 왔다고 본다. 환경행정의 빈곤은 시민법적 원리를 수정하는 새로운 이론과 절차를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이의 실례가 된다. 가령 기후위기 국면에서 기후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 대책 및 지역 행정의 관료주의적 타성은 빈곤 및 사회 불평등, 차별과 같은 구조적, 지속적, 사회·경제적 차원을 반영한 21세기형 의제를 지역 공공정책에 도입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조효제, 2020: 241). 정치체제가 민주화되고 분권화될수록, 사회기능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될수록 기존 통치체제에 대한 변화 요구는 활발해진다. 그중에서도 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는 종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지역발전 부문이다(김용웅, 2002).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환경권 보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 또한 ‘발전권’에 있다. 특히 지역 발전을 목표로 조성 및 이행되는 ‘지원기금’은 발전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지역 주민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공적기금의 사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지역공동체에 맡겨짐으로써 공평한 이익분배가 어려워졌고, 이에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지역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방조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시기와 절차의 비민주성으로 의도와는 다르게 발전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 중 하나가 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한 낮은 이해는 국가의 일방적 규제로 이어져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부담을 지웠다. 기업은 환경오염을 저감할 책임을 가지고 있

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규제를 받는 일차적 대상이기도 하다. [참여자6]은 법적, 행정적 규제가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행되고 있으며, 이에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지역의 전력자립도로 드러나는 ‘불평등’은 지역 주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큰 위해요소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권의 증진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다. 심층면접 참여자 대다수는 자연과 더불어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앞선 논의와 방안들이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에너지’는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면서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너지는 지역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하게 하는 에너지 민주주의에 근거한 개념으로, 에너지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지역 주민의 에너지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외부효과를 줄여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같은 공간에 통합시킨다. 또한 지역에너지 생산활동에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에너지 생산비용이 지역사회에 순환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한다(한재각·이정필, 2014). 이러한 방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노력의 책임은 국가 및 기업 모두에 있다.

○ 국가의 의무와 책임

1. 중앙 정부 주도의 경성에너지체제의 완화 및 해소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공급체계 마련, 지역에너지사업 실질화
- 사회불평등과 차별, 취약계층 및 소수자를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조정 및 이행
- 수도권 외 지역의 에너지 체제 재구축 및 정책 결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재·개정, 지자체에 에너지 정책 결정 및 집행 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¹⁸⁾
- 석탄화력, 원자력 감축 및 철회,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탈피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석탄화력 및 원자력 에너지 감축, 전력 중심 산업구조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 변경
-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산업체 금융 투자 및 지원 중단

18) 이정필·이진우·한재각(2011)의 제언을 참조.

- 지원기금 등 공공재원 이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협력 및 자치조직의 민주화
- 지역 단일 조직 중심으로 이행되는 지원기금 지급 및 배분 결정에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 또한 빈곤, 사회불평등, 차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동 원칙 확립
- 원활한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적인 지역 지원정책의 실현, 이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의식 및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지원사업 계획¹⁹⁾
- 행정조직, 행정담당자,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및 조치 이행

-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적, 지속적 관점 수립

2. 정부로부터 독립된 환경갈등해결 전문기구 설치²⁰⁾

- 갈등해결업무 전문 수행기구 설치, 갈등해소전문가 양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조장하는 사회적·문화적 인프라 구축
- 민주주의, 개방적 의사결정 방식에 근거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²¹⁾

- 단위사업의 상위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행정체계 마련, 각 지역 및 국가적 수준의 종합적 환경정보체계 확립
- 사회적 영향평가 부문을 대폭 보완, 중장기적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방안 마련²²⁾
- 평가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에서 사업승인기관으로 변경하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실질적 참여 방안 확보
- 평가 결과에 대한 공공청문회 개최 의무화,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한 이의신청 루트 마련

4. 환경과거사조사(가칭)에 대한 법제 또는 행정적 근거 마련²³⁾

19) 권오택·신만중(2017)의 제언을 참조.

20) 배명순(2014)의 제언을 참조.

21) 박상철(1997)의 제언을 참조.

22) 강용주·김기수(2014)의 제언을 참조.

23) 세계자연의권리연합(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은 2013년 국제자연의권리재판소를 설치하고 성문화된 규칙에 따라 자연의 권리 침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에코사이드(ecocide)는 재판소가 다루는 특정한 범죄에 속한다. 이러한 자연의 권리에 대한 국제운동의 핵심엔 교육이라는 대안적 서사가 존재한다(데이비드 보이드, 2020: 266). 본 논문에서는 일종의 '환경과거사조사'를 제안하면서 환경파괴에 대한 사법적 책임과 처벌의 기초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한다.

- 산업시설 입지 당시 만연했던 비민주적 실태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마련
- 5. 여성, 청소년 등 환경약자의 생활방식 보호 및 사회적 참여 지원
- 6.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처 간 소통과 협력 증대, 정책의 일원화²⁴⁾
- 7. 지역 발전과 관련된 공공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제 구축
- 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통합형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
- 9. 지역 내부 역량과 잠재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 지역발전으로의 정책 전환
- 1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시행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과 기술 육성 방안 모색

○ 기업의 의무와 책임

1.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기업의 인권 책임과 관련한 의무 이행
 -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및 발전권 등을 포함한 기업 인권 보고서 의무 발행 및 공개
 - 여성, 청소년 등 환경약자의 생활방식 보호 및 사회적 참여 지원
 -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과 기술 육성 방안에 적극 참여
2. 이해당사자와의 민주적 협의를 거친 배·보상의 이행 및 진실된 사죄와 소통
 - 사고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마련된 민관정 협의체 적극 참여

3) 평안할 권리꾸러미: 전쟁, 범죄, 구조적 폭력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

‘평안할 권리꾸러미’는 지구생태계의 건강을 고려하면서 의무담지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협력 방법을 강구하고 권리보유자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환경재난에 대한 공평한 보상 및 원조를 제공받으며, 환경 및 무력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사법적, 행정적 절차 접근성을 향상하여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보호권리와 수급권리이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근거한 앞선 분석에 따르면, 평안할 권리꾸러미는 ‘환경오염 피해의 책임 및 배상과 관련된 국내 외 법제 발전에 적극 협력’, ‘무력 및 환경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 조치’의 보호 권리, ‘환경을 이유로 강제

24) 김용웅(2002)의 제언을 참조.

퇴거 되지 않고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권리', '재난 등의 이유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원조받을 권리'와 같은 수급 권리를 포함한다.

평안한 일상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보다 과거의 평안한 일상이 파괴되었다는 데 있다. 국가 및 기업은 그동안 국책사업의 명목 또는 배·보상을 이용하여, 투명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방식을 통해 주민들을 터전에서 몰아내거나 이간질하고 지역공동체를 와해하였다. 인권정전은 '개인적, 집단적으로 발전할 권리'와 '가치관, 전통, 제도 등 생태적 사회의 지속성을 도모할 책임과 권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이나 토지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해친 행위는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심사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공동체가 강제적으로 파괴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

○ 국가의 의무와 책임

1.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 조치

- 법적 한계를 벗어난 비윤리적 방식으로 마을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을 책임
- 각 문화권 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속시키고 자연 및 사회환경에 대한 권리를 차별 없이 부여할 책임

2.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보상, 원조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법제 발전에 협력할 책임²⁵⁾

-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고 용이한 권리구제를 위해 공익사업법상 사업 인정과 수용재결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입법적 조치 마련
-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 및 절차 접근권 강화, 공공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공익사업에 대한 인정 기준을 관련 법률에 명시
- 공공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제도, 공익사업 관리 심의기구 신설과 같은 행정적 조치
- 사업인정 의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3.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근거한 기후정책 시행²⁶⁾

-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영향평가제도 실시

25) 박지혜·신지형·최재홍(2019)의 제언을 참조.

26) 박시원(2021)의 제언을 참조.

○ 기업의 의무와 책임

- 환경피해의 원인제공을 하지 않을 의무
- 환경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대한의 보상과 원조 방안을 마련하고 복원에 협력할 책임

4) 환경행동과 발전 권리꾸러미: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 저항, 의사 표현하는 데 필요한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

‘환경행동과 발전 권리꾸러미’는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기술을 배우면서 발전과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개인 및 타인과의 결사를 통해 환경을 보호 및 보존할 수 있는 보호권리와 수급권리이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근거한 앞선 분석에 따르면, 환경 행동과 발전 권리꾸러미는 ‘환경위험 교육 및 과학, 기술, 문화의 공평한 발전을 위한 조치’, ‘환경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의 보호 권리, ‘환경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 ‘환경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와 같은 수급 권리를 포함한다.

‘환경행동(environmental behavior)’은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실천과 더불어 환경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환경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금지현, 2013). 이 용어는 주로 환경교육 분야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의 전략과 행동을 일컫기 위해 ‘책임 있는 환경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과 함께 사용되어왔다.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의 환경행동은 환경권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특히 권리보유자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에 저항하며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의무담지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때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민원과 저항, 투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있어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물리적 갈등 발생 이전에 현존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보다 평화적으로 인권 증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논의되었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본격적인 권리 증진 과정인 갈등 해결 거버넌스는 대체로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자발성, 중립성, 비밀유지(비공개)라는 조정의 핵심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 당사자들의 주체적 해결 의지, 대화와 협상을 중재할 중립적 조정자의 참여, 당사자들의 자율적 대

화를 위해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은 갈등 해결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박수선, 2015).

정부는 갈등 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설명회, 토론회, 교육, 홍보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전개하여 권리보유자의 ‘알권리’, 즉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접 [참여자2]도 당진시가 2021년 2월부터 도입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시스템²⁷⁾을 언급하여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권리’에서 파생된 ‘정보접근권’은 이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조 1항²⁸⁾과 제6조, 오르후스 협약 제4조와 제5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특히 환경변화로 가장 영향받는 여성, 아동, 고령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참여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박병도, 2019: 131). 국가가 의사결정 참여를 주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권 의무로,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갈등 해결의 핵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²⁹⁾

특히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오염 및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아래로부터 구성된 새로운 지식으로써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환경문제 전문가와 결정자들도 환경문제에 취약한 개인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조효제, 2020: 38). 즉 투명하고 정확하면서도 정보에 접근하는 대상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보유자들은 공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³⁰⁾ 공공의 참여가 정책 결정 및 이행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7) 전국최초로 시행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시스템 ‘미리미리 알리미’는 주요 행정정보 및 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위험물 및 유해물질 처리시설 등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입지가 시작될 때 인근 지역민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전송한다(김영민, 2021).

2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약칭 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조 1항에는 “기후체계와 기후변화, 그리고 여러 대응 전략의 경제적·사회적 결과와 관련된 과학적·기술적·기능적·사회 경제적 및 법률적 정보의 포괄적, 공개적 그리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고 협력”해야 함이 적시되어 있다. 제6조에는 “(1) 기후변화와 그 효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개발과 실시, (2) 기후변화와 그 효과에 관한 정보에의 공공의 접근, (3) 기후변화와 그 효과에 대응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개발하는 데 대한 공공의 참여” 등이 명시되어 있다.

29) 미국은 송전선로 도입 시 정부 독립기관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또는 준사법기관인 주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가 참여하여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한다. 독일은 송전선로 설치 사업 시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한다. 또한 2005년부터 연방 「에너지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려는 경우, 개인의 권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 의사를 반영하는 ‘계획확정절차’를 진행한다. ‘계획확정절차’란 ‘에너지경제적인 필요성’과 ‘긴급한 수요’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 전력망에 대한 수요계획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하상균, 2014).

30) ‘의사결정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1조, ICCPR 제25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2013년 UN총회 결의안 67/210(General Assembly Resolution 67/210)에서는 의사결정에의 공공 참여는 “완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참여”와 “의미 있는 협의”를 요구하며, 이는 최소한 (1) 환경적인 영향의 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발표, (2) 이러한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추후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와 언어를 제공), (3)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공표되었다(조운재, 2019).

○ 국가의 의무와 책임

1. 갈등 완화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 도입

- 산업시설 건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주민동의 절차 규정을 도입하여 주민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주민동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치³¹⁾
-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시스템, 환경이용용도 공시제(가칭) 도입

2. 정보접근권과 의사결정권의 보장³²⁾

- 정부기관과 국민 간 의견 교환이 가능한 소통 환경 조성 및 제도화
- 효과적 소통을 위해 대상에 따른 차별적 소통 전략 수립
- 정보의 양, 개방성, 이해가능성, 균형성, 선정성 등을 고려한 정보접근권의 확보
-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권한 부여

○ 기업의 의무와 책임

- 정부의 갈등 완화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에 적극 참여
-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접근권 및 의사결정권의 보장

5) 자연의 번성 권리꾸러미: 자연 고유의 내재적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 조성하는 데 필요한 보호 권리와 수급 권리

‘자연의 번성 권리꾸러미’는 다양성을 지닌 지구와 생명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자원을 이용하며,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모든 지속가능한 방법을 취해야 할 보호권리와 수급권리이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근거한 앞선 분석에 따르면, 자연의 번성 권리꾸러미는 ‘지구와 생명 공동체를 보호할 의무’, ‘환경보호를 고려한 자원이용’, ‘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적 대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시행’, ‘온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및 정책시행’의 보호 권리,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같은 수급 권리를 포함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에너지, 식량, 교통, 주거, 생산, 소비 등 활동 대부분의 영역에서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탄소인간(Homo Carbonicus)이 되어 버렸다(조효제, 2020). 탄소인간을 만들어내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을 구성하는 하나의 생물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31) 김광구·김동영·이선우(2015)의 제언을 참조.

32) 이지윤·차용진(2019)의 제언을 참조. 언급된 내용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둔 양방향 의사소통과 상호 간 민주적 합의 과정으로서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방안을 반영한 것임.

인정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의 난제’가 시작되는 가장 아래로부터, 즉 지역에서부터 이행되는 전환적 조치는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실질적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지구적인 것은 지역적 차원에서 상상될 때 현실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

1. 환경오염 개선 및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조치 시행³³⁾

-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대규모 발전단지 및 산업시설의 집적, 장거리 송전망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모색 및 지원
-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균형개발 등에 필요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

2. 석탄화력발전소 및 송전시설, 에너지 불평등 관련 정책 및 조치 시행

- 충남도 차원의 화력발전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 화력발전소 배출 대기 오염물질의 기준치 이상 배출 억제 방안 마련
- 화력발전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 마련
- 사업자에 발전 온배수의 해양배출 이전 온배수의 온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강제³⁴⁾, 발전 온배수의 심층취수 및 배수 등 기술적 대안들을 도입. 또한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시설을 확대하고 농업 부문에 적용, 온배수 배출세 등을 징수하여 활용시설의 보조, 해양 피해 복구 비용에 충당
- 환경오염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회 처리장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지자체에 양도하는 등의 방안 모색
- 충남 내 전력설비 집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충남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발전 및 송변전설비가 유발하는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의무담지자에 요구
- 충남 등 특정 지역의 전력설비 집중을 막고 수도권에 부하 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력정책 및 시장제도의 개선 요구
- 지역별 전력가격 정산체제로의 전력 가격체계 개편, 전력요금 차등 등 관련 연구 지속 및 여론화, 전력가격 차등화 공론화

33) 이인희(2015)의 제언을 참조.

34)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발전 온배수를 저수지에 저장한 후 온도가 하락하면 해상에 방류한다(이인희, 2015).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권리의 난제로 설정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제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과 환경권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환경권이 세대별 인권개념을 가로지르는 통합적 구조를 내재하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초월한 ‘집단으로서의 연대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추동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특히 권리의 난제를 해소하는 데 인권 통합적 접근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권리조건, 권리주장, 권리효과에서 분석된 경험연구의 결과를 권리꾸러미에 기반하여 정리해보고, 미래에 형성될 인권의 조건에 영향을 줄 요인들을 예상해 봄으로써 권리의 순환이라는 분석틀이 어떻게 사회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도출하는지 살펴본다.

가. 권리조건

첫째, ‘건강장수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입지한 석유화학공단,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으로 급속한 생태계의 변화를 겪었다. 전통적 방식의 어업과 농업이 중단되었고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나빠졌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지역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 유치를 허용했다. 그러나 개발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잉여가치는 자본가 또는 수도권으로 편입되었고 이로 인한 지역 간, 주민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화석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는 대규모 전력생산 시설 또한 전력생산의 비용과 편익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환경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이정필·이보아, 2013). 산업시설의 밀집은 일용직 노동자, 1인 가구 밀도를 높였으며 교육, 보건, 문화 등 발전을 상대적으로 저하시켰다. 지역 정주 인구의 감소는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이어졌고 지역을 자생시킬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도시화 정책은 지역에 각종 위험을 외주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둘째, ‘인격의 온전한 발달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 초기부터 산업 시설들은 지역 천연자원 등을 독점하여 자원의 공평한 이용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약속, 금전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행이 미흡하였고 정부, 지자체 등은 산업시설 환경보전 약속 이행 실태 및 오염 감시

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지 수용, 산업체 건설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자연환경의 적극적 파괴를 용인하였다.

셋째, ‘평안할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 수립된 제반 정책들로 주민들은 몇 대에 걸쳐 내려오던 토지뿐만 아니라 고향, 이웃들, 친구들을 잃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보상은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사업자의 실리적 수단이 되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도의 기금을 받았지만 역시 집행 방안을 둘러싼 공동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나 지자체는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후속 대처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한편 기업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에 각종 장학금, 주민 생활 및 보건을 지원하였다.

넷째, ‘환경행동과 발전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에 다양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화력발전소 입지 초기 별도의 의견 수렴이나 공유 절차가 없었으며 주민들은 석탄으로 인한 위해를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정보 전달과 공유가 미흡한 상태에서 주민과 기업은 첨예한 대립을 반복했고, 이는 기업이 주민에게 별도의 공지 없이 행정과 비밀리에 입지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었다. 주민들은 산업시설 입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 과정과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람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료가 제공되었고 설명회, 공청회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 기업, 주민, 지자체 또는 정부 간 의사소통 체계 또한 미흡해 주민들은 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섯째, ‘자연의 변성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여 추동된 경제 발전 패러다임에 기원한 것이었다. 세계화의 이름으로 각국에 도입된 경제개발정책은 국가와 지역 고유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행되었기에 형평성, 정의, 지속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었다. 해방 이후부터 미국 등 강대국의 압박과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속에서 계획적으로 자원 착취와 이용을 요구받았던 한국 사회 또한 국민 대부분이 국가가 주도한 성장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였고, 토지와 자원의 이용을 합리화하였다. 결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이촌향도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인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의 수준을 다르게 만들었고, 이는 에너지 소비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해물질의 최대배출원인 대규모 산업시설과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충남 서북부와 같이 인구가 적고 취약계

층이 몰려있는 지역에 집중된 이유다.

나. 권리주장

첫째, ‘건강장수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설문응답자 대다수가 마을의 자연환경이 나쁘다고 응답한 가운데 자연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발전소 및 산업시설로 인식되고 있었다. 마을의 환경이 어떤 요인으로 나빠졌냐고 물어봤을 때, 미세먼지, 비산먼지, 악취, 분진 등 대기오염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노화로 인한 질환을 제하면 암 투병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염·천식 등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건강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노화, 발전소와 산업시설로 인해 나빠진 마을환경을 주로 꼽았다.

둘째, ‘인격의 온전한 발전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설문응답자들은 기업이나 산업체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교육시설, 보건시설, 도로시설 및 교통시설과 같은 주거 인프라는 비교적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평안할 권리 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설문응답자들 중에는 배·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은 대체로 금전적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이 비용은 개인 이주 비용, 토지보상비용, 마을 기금을 포괄하였다. 주민들은 재난에 대한 원조로 배·보상금 수령, 마을공동체 공동기금, 명절 선물 및 경조사 지원 등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넷째, ‘환경행동과 발전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주로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요구했던 것은 배·보상이 가장 많았다. 설문응답자들이 시위나 저항, 이웃들과 논의를 했던 주된 이유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이는 자신과 이웃, 마을공동체의 생존과 터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다섯째, ‘자연의 번성 권리꾸러미’에서 보면, 주민들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연보호 및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였다.

다. 권리효과

첫째, ‘건강장수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환경 위협에 맞서 충남 도청은 도내 주요 환경오염지역을 중심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요인에 대한 환경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공급자의 요구에 맞추어 진행되었던 연구를 수요자 중심의 연구로 전환하면서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및 지자체의 미숙한 거버넌스는 지역 내 불평등을 더욱 부추겼다. 인권 증진을 위한 책임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환경취약지역 내 많은 기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고 및 안전 관리와 대처에 안일하였고, 민주적 논의로의 진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금전 지급으로 재난 피해를 무마하려 하였다.

둘째, ‘인격의 온전한 발전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국정 과제에 공식 도입함에 따라 충남도 또한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각종 계획 및 전략, 탈석탄 동맹 가입, 기후 비상 상황 선포 등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또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최신설비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한 실질적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권을 저해하는 상황 또한 발생시켰다. 한국 정부의 단기 이익 중심적 정책의 역효과는 충남 서북부지역에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이 밀집해 있는 당진은 전국에서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줄여야 하는 도시로 꼽혔고,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은 에너지와 자원의 생산지와 사용처가 다른 에너지 불평등, 토지와 대기 등의 생태자원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셋째, ‘평안할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공동체 갈등의 촉발제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한 행정적 개입은 매우 미흡하였다.

넷째, ‘환경행동과 발전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인근의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상황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켰다. 또한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 풀뿌리 시민운동 영역 또한 에너지 불평등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하였다.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커다란 사고를 겪은 이후 지역 주민들은 기업, 노동조합, 마을구성원, 시민단체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공통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연대감을 형성하였고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실제적 소통방안의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에도 환경오염이나 신체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적시 적소에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지 않았다.

다섯째, ‘자연의 변성 권리꾸러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권리조건과 권리주장에 따라 권리효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향상 또는 저해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의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 요인은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환경위기 간의 근본적인 갈등에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정책적 전환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이익 관념을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하다. 생활 속 녹색 규범을 확대하고 생태적 관점으로서의 사회적 전환을 이루는 것은 위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할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거버넌스의 확대, 정보의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확보, 시민사회의 성장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 제언: 예상되는 권리조건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권리조건이 형성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인권 매커니즘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안에 있어 가장 심각한 권리의 박탈을 경험하는 대상은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이다.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로 초래된 환경위기 속에서 이들은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에 가장 빨리 노출된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인권침해의 핵심적인 권리보유자로서 인권침해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인 권리라는 언어를 가진다. 자신의 피해를 권리로써 주장하는 것은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는 마치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해 명확한 병명을 파악하고 처방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재산권이나 생존권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한정된 이해는 그동안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들의 수많은 권리침해 사항을 담아내지 못해왔다.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집단 대응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서 주민들은 환경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명확한 피해를 설정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환경권이라는 언어를 통해 의무담지자에게 침해당한 권리의 복원과 증진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인권침해 상황을 발생시킨 궁극적인 가해 주체는 국가이지만, 가해가 형성되는 구조는 세계체제 내에 존재하며, 지배적인 주류담론으로써 세계체제는 국가에 수용되어 가해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체제 합리화의

수단이 된다. 정부는 제도적 가해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은 실제적 가해의 역할을 행한다. 인권의 의무담지자인 국가는 제도 입안 및 실행 과정에서 피해를 억제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재원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체제 유지를 위해 특정 이데올로기를 수호할 목적으로 인권침해를 암묵적으로 정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설계된 폭력’이라 부르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특정 지역에 기후위기 원인시설을 밀집시켰고, 지역 주민들의 각종 권리를 침탈해왔다. 이러한 연쇄적 인권침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는 전통적 개발 패러다임 속에서 이행되었던 산업화·도시화 정책과 환경보전 정책의 실패를 직시하고, 환경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생태적 관점으로 기존의 개발담론을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탈석탄 및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인권에 기반한 민주적 방식으로 불평등 저감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거버넌스를 이행할 때 가능할 것이다.

셋째, ‘권리의 난제’로 여겨지는 오랜 인권 문제의 해결은 인권이 존재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창조하는 인권당사자, 즉 권리보유자와 의무담지자가 현재의 진동을 바꾸어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할 때 가능해진다. 이들의 진동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인권의 관점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권리의 순환’과 ‘권리꾸러미’ 개념은 인권의 관점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접근방식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 원인시설 인근지역의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나아가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가치나 제도적 관행을 생태적 원리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가는 생태적 관계를 중심으로 권력을 재배분하고 ‘국가정치의 생태적 지배영역’을 지구적·지방적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 시민사회, 시장 영역의 행위자가 기존의 배타적 권위관계를 버리고 동등한 관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대와 결합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안별, 영역별로 협의하고 해결하는 녹색 거버넌스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조명래, 2002: 59-61). 리우 지구정상회담의 혁신적 구호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 act local)’라는 언명을 몸소 실천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정책적 전환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를 통해 국가이익 관념을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지역 주민들이 생태계 파괴와 환경피해 맞서 적극 행동했던 이유는 대책마련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환경운동과 인권운동은 같은 선상에 놓여 있으며, 연대

만이 거버넌스의 확대, 정보의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확보, 시민사회의 성장 등과 같은 사회적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현실에서는 더디게 느껴질 지라도,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유엔 등 각종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선언, 논평 뿐만 아니라 인권정전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원칙에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인권에 대한 지식이 망라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 또한 평범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인권정전이라는 구체적 문서에 근거해 권리로써 언어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인권 증진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인권의 증진은 권리화된 언어를 바탕으로 시작되며, 이것은 행동으로 표현될 때야만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정혜. 2020. “지구법학과 경제법.” 강금실 외.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강용주·김기수. 2014. “수온환경변화에 따른 생물분포와 어업피해결정을 위한 임계환경변화량이론의 재조명.” 『수산경영론집』 45(1): 1-16.
- 강진숙. 2017. “공동체 미디어의 담론흐름과 연구경향: 학술논문의 주제, 방법,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1(1): 9-39.
- 구도완. 2020. “생명, 자유, 공동체를 위하여” 구도완 외. 『생명 자유 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 서울: 도서출판 풀씨.
- 구본홍. 1999. “한국사회에서 정치부패와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6공화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병삭. 1990. 『신한국헌법론』. 서울: 일신사.
- 구연창. 1986. “환경행정의 민주화.” 『환경정보』 8(24): 2-5.
- _____. 신만중. 201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7(2): 180-204.
- 권영성. 2010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광구·김동영·이선우. 2015. “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21-44.
- 김기윤. 2014. “기후과학의 생산과 수용을 통해 살펴 본 현대과학.” 『철학논총』 77: 43-63.
- 김동춘. 2018. “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경제와사회』 118: 240-276.
- 김용웅. 2002. “지역발전과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국토』. 2-3.
- 김우창. 2016. “절차적 정의의 관점으로 밀양 송전탑 분석: 형식적인 참여와 강요된 합

- 의.”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6(10): 189-209.
- 김은진. 2018.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보상제도의 필요성.” 『환경법과 정책』20: 193-220.
- 김철수. 2013. 『헌법학신론』. 서울: (주)박영사.
- 김태승. 2004. “토지자원의 동원과 국가개입방식의 변화.” 유철규·송홍선·김기원 외.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산업화 이념의 재고찰과 대안의 모색(Ⅰ)』. 서울: 함께읽는책.
- 김현준. 2020. “지구법학과 경제법.” 강금실 외.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홍균. 2008. “국제환경법에서의 환경과 인권.” 『인권과 정의』385: 56-71.
-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구도완. 2005. 『환경권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단국대학교 의료원 환경보건센터·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2014. 『충청남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충청남도.
- 당진시. 2015. 『당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 대니얼 예킨. 2017. 『황금의 샘: 석유가 탄생시킨 부와 권력 그리고 분쟁의 세계사』. 김태유·허은녕 옮김. 서울: 라의논.
- 데이비드 보이드. 2020.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 파주: 교유서가. 이지원 옮김.
- 마크 프레초. 2020. 『인권사회학의 도전』. 조효제 옮김. 서울: 교양인.
- 맹준호·김태윤·서동환. 2014. 『화력발전소 회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연구(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명형남. 2016.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충남발전연구원.
- _____. 2014.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 그리고 건강.” 『열린충남』. 충남연구원.
- 박경. 2011.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공간과 사회』. 2011(3): 83-113.

- 박상철. 199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시원. 2019.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환경법과 정책』. 23: 37-69.
- _____. 신지형·최재홍. 2019. 『갈등예방을 위한 토지 공용수용 법·정책 개선 방안 연구』. 녹색법률센터.
- 박태균. 2004. “1950,60년대 경제개발 신화의 형성과 확산.” 유철규·송홍선·김기원 외.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산업화 이념의 재고찰과 대안의 모색(1)』. 한신대학교.
- _____. 2020. “지구법학과 경제법.” 강금실 외.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보르 안드레아센·스티븐 마크스. 2010.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지침서』. 양영미·김신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 배명순. 2014. 『환경시설 입지와 관련한 갈등의 완화방안』. 충북연구원.
- 서영표. 2016. “기후변화 인식을 둘러싼 담론 투쟁: 새로운 축적의 기회인가 체계 전환의 계기인가.” 『경제와 사회』112: 137-173.
- 신윤진. 2021.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역외 인권의무.” 『인권연구』4(1): 101-176.
- 안세현. 2013.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양영미. 2011. “인권을 생각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제개발협력』 2011(1): 11-26.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주요통계』.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 오동석. 2020. “지구법학과 경제법.” 강금실 외.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유철규. 2004. “한국자본주의 발전구조의 성격과 연구방법론.” 유철규·송홍선·김기원 외.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산업화 이념의 재고찰과 대안의 모색(1)』. 한신대학교.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홍천: 아르케.

- 이안 앵거스. 2012. 『기후정의: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맞선 반자본주의의 대안』. 김현우·이정필·이진우 옮김. 서울: 이매진.
- _____. 2015. “환경인권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37(2): 321-352.
- 이인희. 2013b.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충남발전연구원.
- _____. 2015. “발전소 및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와 지자체의 대응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2015: 2065-2097.
- _____. 오혜정. 2013.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 이정필·이진우·한재각. 2011. 『지역 에너지 자립을 모색한다: 지역 에너지 총량제와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이주영. 2017.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10(2): 33-57.
- 이지윤·차용진. 2019. “기후변화 위험커뮤니케이션이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19: 1812-1839.
- 이찬송·윤순진. 2010. “기후변화의 국제정치경제: 기후변화레짐 내 환경-무역 갈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21(3): 163-193.
- 장준오. 2001. “부패: 1980-90년대 정경유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01(1): 11-171.
- 정상훈. 2020.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린피스』. 7월 16일.
- 정영화. 2017.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법제의 분석과 전망.” 『동북아법연구』10(3): 35-69.
- 정재준. 2018.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 유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 321-334.
- 정혜진. 2020. “지구법학과 경제법.” 강금실 외.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조명래. 2002.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36(2): 47-68.

- 조윤재. 2019. “기후변화와 인권: 환경파괴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외법논집』43(2): 115-144.
- 조효제. 2018. “인권실현의 통합적 접근.” 『인권연구』1(1): 37-71.
- _____. 2020. 『탄소 사회의 종말』. 파주: 북이십일 21세기 북스.
- 조희연. 2016.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서울: 역사비평사.
- 존 벨라미 포스터. 2007.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추선영 옮김. 서울: 책갈피.
- 진종헌·정석호. 2012. “공단입지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민의식연구: 서산시 대산읍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6(4): 429-444.
- 최병두. 2000. “데이비드 하비의 환경정의론과 <희망의 공간>.” 『공간과사회』14: 244-270.
- 최정석. 2018. “석탄화력발전소 입지지역의 환경피해 보상정책의 개선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5): 157-174.
- 하상균. 2014. “공공 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밀양 송전탑 건설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21(2): 79-103.
- _____. 이정필. 2014. 『영국 에너지전환과 공동체에너지의 의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외국문헌

- Agyeman, Julian. 2005. *Environmental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Blau, Judith and Moncada, Alberto. 2009. *Human Rights*. New York: Routledge.
- Burke, Roland. 2010. *Decolonization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ands, Philippe. 2003.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인권정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산살바도르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Social and Cultural Rights(Protocol of San Salvador)). 1988.

세계지구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Mother Earth Rights).

아프리카 헌장(African(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지구헌장(Earth Charter). 2000.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1998.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ance on the Human Environment). 1972.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The Ksentini Principle)). 1994.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ESCR. 2020. “General comment No. 25 (2020) on science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ths(article 15 (1) (b), (2), (3) and (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ndl, Gunther. 1992.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Stockholm Declaration), 1972 and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2021년 1월 12일 검색. URL: <https://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4>

OHCHR.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UN. 1968. “Res. 2398(XXII). Problems of the human environment.” General Assembly-Twenty-third Session.

____.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UNFCCC”

UNEP. “The Environmental Rights Initiative.” 2018년 03월 06일 수정. 2021년 09월 16일 검색. URL: <https://www.unep.org/resources/factsheet/environmental-rights-initiative-fact-sheet>

UNHRC. 2011. “Analyt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HRC) “General Comment No.36 on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Right to life.” 2021년 1월 7일 검색. URL: <https://www.ohchr.org/en/hrbodies/ccpr/pages/gc36-article6righttolife.aspx>

4. 언론보도

김영민. 2021. “[당진]시, 문자서비스 '미리미리 알리미' 시행.” 『투데이충남』. 2월 16일.

당진신문. 2020. “전국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권에 당진소재 업체 3곳.” 『당진신문』 10월 29일.

박경미. 2020. “[당진형 그린뉴딜 추진 현황] 시민사회·기업·공무원이 함께 하는 그린뉴딜.” 『당진시대』. 10월 19일.

강봉조. 2021. “당진시 석문면개발위, 총회 앞두고 후보자 자격논란 일파만파.” 『내외신문』. 2월 26일.

송병훈. 2019. “서울 등 주요도시 ‘전력 사용량은 많고, 발전량은 적다’.” 『에너지데일리』 3월 18일.

심규상. 2018. “충남 화력발전소 대기질 주민이 측정...미세먼지 등 확인.” 『당진시대』. 12월 15일.

연합뉴스. 2019. “[잇단 사고 커지는 불안] ② '안전 위협'...4년간 화학사고 23건.” 『연합뉴스』. 5월 23일.

원세연. 2020. “온실가스 배출 1위 충남 ... ‘탈석탄 정책’으로 탄소중립 선도.” 『대한민

국 정책브리핑』. 12월 18일.

유종준. 2018. “고통의 대가 ‘화력발전세’, 시장·군수 씹짓돈으로?” 『오마이뉴스』. 1월 21일.

윤지로. 2020a. “‘퇴출 에너지원’ 화석연료 산업...‘좌초자산’ 천문학적[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세계일보』. 7월 12일.

_____. 2019.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 않기로.” 『당진시대』. 8월 23일.

임아연. 2020a. “배추 비산먼지·강하분진 피해 크게 개선” 『당진시대』. 11월 23일.

최우리. 2021. “온실가스 배출총량 같은데...‘감축목표 1차 상향’ 팩트체크 해보니.” 『한겨레』. 4월 23일.

5. 통계자료

한국전력공사. 2020. “2020년도판 한국전력통계(제89호).”

6. 웹사이트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물질.” 2020년 10월 21일 접속,

URL: https://www.airkorea.or.kr/web/airMatter?pMENU_NO=130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사고현황 및 사례.” 2021년 3월 18일 접속,

URL: <https://icis.me.go.kr/search/searchType2.d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Environmental agreements currently in the database.” 2021년 6월 25일 접속, URL:

<https://iea.uoregon.edu/iea>

-project-contents

부록1. 인권정전이 정하는 인권과 환경권에 대한 ‘책임 또는 의무-권리’ 목록

이 글에서는 인권과 환경권에 대한 인권정전의 각 항목을 의무담지자-권리보유자, 즉 ‘책임 또는 의무³⁵⁾-권리’의 형태로 정리하여 살펴본다.

먼저 인간과 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의 26가지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원칙1)
- 지구의 능력과 야생동물, 천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자원을 이용할 책임(원칙2, 원칙3, 원칙4, 원칙14, 원칙15)
- 생태계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자연의 정화 능력을 넘는 오염을 중단하고 오염을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할 책임(원칙6, 원칙7)
-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구 상태를 조성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경제적 지원 및 조치(원칙8, 원칙9, 원칙10, 원칙11, 원칙12, 원칙13)
- 기본인권에 대한 편견 없이 인간 환경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펼 책임(원칙16)
- 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국가기관을 수립하고 임무를 위임할 책임(원칙17)
- 환경위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교육하고 관련된 과학과 기술을 공평하게 사용할 책임(원칙18, 원칙19, 원칙20)
- 오염피해자 및 개발도상국 등이 환경피해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받고 최선진국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법 등 협력 방법을 강구할 책임(원칙22, 원칙23, 원칙24)
-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보장하고 핵무기와 대량학살무기를 즉각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원칙25, 원칙26)

스톡홀름 선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인간 삶에 행복과 존엄을 주는 환경 안에서 자유, 평등, 합당한 삶의 지위를 영위할 기본권(원칙1)
- 고갈 위험에 대비하는 지구 자원의 사용, 모든 인류의 공평한 자원 이용, 또

35) 국제선언 속 법적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구분한다.

한 자국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원칙5, 원칙21)

- 오염 관련 정당한 저항에 대한 지원(원칙6)
- 환경문제에 대해 교육 받고 언론 등으로부터 환경 개발 및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자연정보 취득(원칙19)
-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원칙20)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서 제시된 27가지 원칙의 내용을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간을 중심으로 하며 환경보호, 빈곤퇴치, 평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1, 원칙4, 원칙5, 원칙6)
- 자국의 자원 개발 시 자국 외 지역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원칙2)
- 세대 간(현재세대-미래세대)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하면서 환경을 개발할 책임(원칙3)
-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 회복시키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협력할 책임, 동시에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을 고려한 선진국의 더 많은 책임(원칙7, 원칙14, 원칙18, 원칙19, 원칙27)
-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제거, 적절한 인구정책 촉진 및 효과적인 환경 법칙 규정 마련(원칙8, 원칙11)
- 환경악화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평등하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 증진(원칙12, 원칙16)
- 환경오염 및 위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법 발전에 협력할 책임(원칙13)
- 환경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 환경영향평가 실시(원칙15, 원칙17)
- 압제, 지배, 점령된 지역의 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원칙23)
- 상호의존의 관계를 형성하는 평화, 발전,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무력분쟁, 환경분쟁에 대한 평화적 또는 적절한 해결(원칙24, 원칙25, 원칙26)

리우선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의 향유(원칙1)
- 국제적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에 따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원칙2)
-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얻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력 형성(원칙9)

- 유해물질 처리 정보 및 공공기관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원칙10)
- 환경 관련 의사결정 참여(원칙10)
- 환경오염피해 시 구제 및 배상 등 사법적·행정적 절차 접근성 향상(원칙10)
- 여성, 청소년, 토착 원주민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지원(원칙20, 원칙21, 원칙22)

지구헌장에서 언급되는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다양성을 지닌 지구와 생명체에 대한 존중(원칙1)
- 이해와 동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생명 공동체의 보호(원칙2)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할 의무(원칙2)
- 늘어나는 자유, 지식, 그리고 힘과 함께 공익을 증진할 책임(원칙2)
- 정의, 참여, 지속성,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 건설(원칙3)
- 모든 사회에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 잠재력 실현 기회 제공(원칙3)
- 안락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증진할 생태적 책임(원칙3)
-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생태적 사회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가치관, 전통, 제도 등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전할 책임(원칙4)
- 모든 영역에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과 규제를 채택하여 개발 초기에 환경보존과 복원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게 할 책임(원칙5)
- 지구의 생명 부양계를 지키고 종 다양성을 유지하며 자연의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과 지구의 보호지역을 수립하고 지킬 책임(원칙5)
- 위기에 처한 종, 야생종, 유전자 변형 생물종 등에 대한 조절 노력과 생태계 건강을 관리할 책임(원칙5)
- 광물과 화석연료의 채취와 사용에 있어 고갈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원칙5)
- 환경보호의 최선책으로 유해요소(독성물질, 군사적 행동 등)를 제거하고 지식이 한정되었을 경우 예방적 접근을 시도할 책임(원칙6)
- 지구의 재생 능력과 인권, 사회의 안녕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 소비, 재생의 형태를 적용할 책임(원칙7)
-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책임(원칙7)
- 개발도상국 또는 각 문화권 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진척시키고 습득된 지식의 자율적인 교류와 폭넓은 적용을 촉진할 책임(원칙8)

-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기구가 투명하게 공익을 위해 행동할 책임,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원칙10)
- 지속가능한 개발의 선행조건으로서 성적 평등과 형평을 이룰 책임(원칙11)
- 토착민과 소수자들의 권리에 각별히 관심 쏟고 자연 및 사회환경에 대한 권리를 차별없이 부여할 책임(원칙12)
- 모든 단계에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기구들을 강화시키고, 조직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의사결정에 모든이의 참여를 유도해 정의를 구현할 책임(원칙13)
- 공교육과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통합(원칙14)
-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려로 대할 책임(원칙15)

지구헌장에서 드러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자연 자원을 소유하며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원칙2)
- 건강과 후손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원칙7)
- 유한한 지구에서 삶의 질과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원칙7)
- 모든 인간이 건강하고 안전한 물, 공기, 음식, 토지, 머물 곳, 공중위생을 보장받을 권리(원칙9)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교육받고 자원을 얻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할 경우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권리(원칙9)
- 모든 경제행위와 경제제도에서 부의 평등한 분배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보장받을 권리(원칙10)
- 관용, 비폭력, 평화의 문화를 증진시킬 책임과 권리(원칙1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일 국가 및 국제적 의무담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및 산업 위생 모든 부문의 개선(제12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유추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12조)
-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제11조)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제15조)

아프리카 헌장 속에 담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국민 건강 보호, 질병에 걸리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제16조)
- 인간 및 인민의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위원회 설립, 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자료 수집, 연구, 조사 수행, 심포지엄 및 회의 조직, 정보 보급, 정부에 의견 제시 및 권고(제30조, 제45조)
- 다른 국제협약,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아프리카의 관행, 법적 관습, 판례와 학설 등을 법 원칙 결정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고려(제61조)

아프리카 헌장에서 명시한 환경권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제16조)
- 생존의 권리, 불가양의 자결권(제20조)
-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제20조)
- 자국과 부와 천연자원을 자유롭게 공평하게 처분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 인류 공동의 유산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발전할 권리(제21조, 제22조)
- 자신에게 유리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발전해나갈 권리(제24조)

산살바도르 의정서에서 언급된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규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의 한도와 각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경제적, 기술적 국제협력 또는 입법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 채택(제1조, 제2조)
- 직장에서의 안전과 위생, 18세 미만자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하는 모든 작업 금지(제6조)
- 건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공약으로서의 건강 인정,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 진료 제공 및 보건 서비스 확장, 직업병 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교육 시행,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상의 요구 충족(제10조)

- 국가의 환경보호, 보전 및 개선 장려(제11조)
- 과학, 문화 등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조치 시행 및 국제적 협력(제14조)

산살바도르 의정서에서 명시한 환경권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향유를 의미하는 건강에 대한 권리(제10조)
-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모든 이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기본적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제11조)
- 최고 수준의 신체적, 감정적 및 지능의 개발을 향유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영양에 대한 권리(제12조)
- 과학과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제14조)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 속에 담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발전을 위해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 복지 향상 등 적절한 국가발전 정책을 이행할 의무(제2조, 제4조)
- 발전권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외적 상황을 형성할 책임, 국가 간 주권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을 촉진할 의무(제3조)
- 인종적 차별이나 지배와 점령 등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제거,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할 조치 수행, 완전한 군비축소(제5조, 제6조, 제7조)
-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 수단과 시설 제공(제4조)
- 교육, 보건, 식량, 주거, 고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 보장, 이익의 균등한 분배와 성평등 및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개혁수행(제8조)
- 발전과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모든 분야의 대중참여 장려(제8조)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환경권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향유할 권리(제1조)
-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인민의 자결권(제2조)
- 개인적, 집단적으로 발전할 권리, 또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할 권리(제2조)
- 발전의 중심적인 주체로써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제2조, 제3조)
- 발전과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모든 분야에 참여할 권리(제8조)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에서 밝히는 환경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개인 및 타인과의 결사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21조)
- 국가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온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 및 입법 차원의 다양한 조치 채택(22조)

또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에서 드러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시민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인권과 연계된 안전하고 건강하며 온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권리, 또한 그런 곳에서 살아갈 권리(1조, 9조, 10조, 13조)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결정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2조)
- 현세대의 필요를 평등하게 충족시키고 미래세대의 권리 또한 해치지 않는 적절한 환경에 대한 권리(4조)
- 국경 내외의 오염, 환경파괴, 지속적 발전 등을 위협하는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5조)
- 공기, 토양, 물,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과정과 영역을 보호하고 보존할 권리(6조)
- 환경침해로부터 자유로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에 대한 권리(7조)
- 자신의 안녕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8조)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이나 토지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 또한 퇴거에 관한 배상, 보상 및 관련 결정에 참여하고 협의할 권리, 환경피해 및 환경 위협에 대해 행정 및 사법절차로부터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받을 권리(11조, 20조)

- 자연 및 기술적, 인적 재해에 대해 시기적절한 원조를 받을 권리(12조)
- 원주민들이 토지, 지역, 자연자원, 전통적 생활양식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받을 권리(14조)
- 환경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정보 수집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며 시의적절하고 분명한 정보를 재정적 부담 없이 얻을 권리(15조)
- 환경에 대한 의견을 갖고 표현하며 사상과 정보를 배포할 권리(16조)
- 환경과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17조)
- 환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활동과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 제안된 계획의 환경적·발전적·인권적 결과를 사전에 평가할 권리, 결사할 권리(18조, 19조)
- 개인 및 타인과의 결사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권리(21조)

세계지구권선언에서 드러난 인권과 환경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인간 존재, 모든 나라, 모든 공적·사적 기관이 선언에서 인정된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게 행위할 의무(제3조 2항)
- 인간 존재, 모든 나라, 모든 공적·사적 기관이 이 선언에서 인정된 권리와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집행을 인정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제3조 2항)
- 이 선언에 따라 어머니 지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학습과 분석, 해석 그리고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참여할 의무(제3조 2항)
- 현재와 장래의 인간 안녕 추구가 어머니 지구의 안녕에 기여하도록 보장할 의무(제3조 2항)
- 어머니 지구권을 효과적으로 방어,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규범과 법을 구축하고 적용할 의무(제3조 2항)
- 어머니 지구의 생태적 순환과 과정, 균형의 통합성을 존중하고 보호·보전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회복할 의무(제3조 2항)
- 이 선언에서 인정된 내재적 권리의 침해로 발생된 손상을 회복하며, 그 침해에 책임 있는 자에게 어머니 지구의 통합성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책임을 부과할 것을 보장할 의무(제3조 2항)
- 어머니 지구와 모든 존재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인간과 기관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의무(제3조 2항)
- 인간의 활동이 종의 절멸과 생태계의 파괴 또는 생태적 순환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전주의적 조치와 제한 조치를 수립할 의무(제3조 2)

항)

- 평화를 보장하고 핵무기와 생화학적 무기를 제거할 의무(제3조 2항)
- 저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관습에 따라 어머니 지구와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관행을 증진하고 지지할 의무(제3조 2항)
- 어머니 지구와 조화하고 또 이 선언에서 인정된 권리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을 증진할 의무(제3조 2항)

또한 세계지구권선언에서 드러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제2조 1항)
- 존중받을 권리(제2조 1항)
- 자신의 필수적 순환과 과정이 인간에 의해 교란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권리(제2조 1항)
- 스스로를 규율하는, 특유하면서도 서로 관련된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제2조 1항)
- 생명의 원천으로서 물에 대한 권리(제2조 1항)
-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제2조 1항)
- 필수 건강에 대한 권리(제2조 1항)
- 오염물질과 유독 또는 방사성 폐기물에 의해 오염되지 아니할 권리(제2조 1항)
- 자신의 통합성 또는 필수 핵심적 기능을 위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전적 구조가 변경되거나 교란되지 아니할 권리(제2조 1항)
- 인간활동에 의해 이 선언에서 인정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충분하고 신속하게 회복될 권리(제2조 1항)

부록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배포된 150개의 설문지 중 유효설문건수는 131건이며,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당진시 석문면 삼봉4리(34명, 26.0%), 가장 낮은 곳은 당진시 석문면 교로1리(12명, 9.2%)였다. 응답자 중 여성은 63명(50.8%), 남성은 61명(49.2%)이었다.

[부록 2-1] 거주지별 설문응답자 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기술통계치
고대1리	16	12.2	N=131
고대2리	14	10.7	
교로1리	12	9.2	
교로3리	13	9.9	
삼봉4리	34	26.0	
독곶1리	13	9.9	
화곡1리	24	18.3	
기타	5	3.8	

[부록 2-2] 설문응답자 성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기술통계치
여성	63	50.8	N=124
남성	61	49.2	NA=7

연령대에 대한 유효 응답은 20대 이하부터 80대 이상까지이다.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3명(2.4%)으로 가장 낮았으며, 70대 이상이 35명(27.6%)으로 가장 높았다. ‘60대~80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실제 당진시, 서산시는 최근 10년간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한 고령사회이며, 조사지의 고령인구비율은 당진시 고대면 36.6%, 석문면 24.0%, 서산시 대산읍 16.9%³⁶⁾에 이른다(통계청 서산사무소, 2020).

36) 전국평균 고령인구비율은 16.3%. 2020년 6월 기준.

〔부록 2-3〕 설문응답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20대 이하	3	2.4
30대	5	3.9
40대	10	7.9
50대	11	8.7
60대	29	22.8
70대	35	27.6
80대 이상	34	26.8
합계	127	100.0

이어서 거주지역과 연령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미만의 기대빈도가 전체 셀의 89.3%를 차지함에 따라 60대 미만, 60대 이상으로 연령대를 범주화하고 피셔의 정확도 검정으로 유의확률을 파악하였다. 검정 결과 $p=0.510$ 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함으로써 거주지역별 연령대 분포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조사지역에서 60대 이상의 거주율이 높았다.

〔부록 2-4〕 거주지역별 연령대(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고대1리	0(0.0)	1(6.3)	0(0.0)	1(6.3)	4(25.0)	4(25.0)	6(37.5)	16(100.0)
고대2리	1(7.1)	0(0.0)	1(7.1)	1(7.1)	5(35.7)	3(21.4)	3(21.4)	14(100.0)
교로1리	0(0.0)	0(0.0)	2(16.7)	1(8.3)	2(16.7)	3(25.0)	4(33.3)	12(100.0)
교로3리	0(0.0)	1(8.3)	3(25.0)	1(8.3)	2(16.7)	4(33.3)	1(8.3)	12(100.0)
삼봉4리	2(6.1)	2(6.1)	2(6.1)	4(12.1)	6(18.2)	9(27.3)	8(24.2)	33(100.0)
독곶1리	0(0.0)	1(8.3)	0(0.0)	1(8.3)	2(16.7)	5(41.7)	3(25.0)	12(100.0)
화곡1리	0(0.0)	0(0.0)	2(8.3)	1(4.2)	7(29.2)	7(29.2)	7(29.2)	24(100.0)
기타	0(0.0)	0(0.0)	0(0.0)	1(25.0)	1(25.0)	0(0.0)	2(50.0)	4(100.0)
합계	3(2.4)	5(3.9)	10(7.9)	11(8.7)	29(22.8)	35(27.6)	34(26.8)	127(100.0)
fisher정확검정(p)	0.510							

$p^* < 0.05$, $p^{**} < 0.01$, $p^{***} < 0.001$

거주기간에 대한 유효응답범주는 ‘1개월에서 평생’까지이다. 설문응답자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30년 이상~평생’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67.0%를 차지했다.

[부록 2-5] 설문응답자 거주기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0.1~3년	6	4.7
4~9년	12	9.4
10~19년	9	7.0
20~29년	14	10.9
30년 이상	44	34.4
평생	43	33.6
합계	128	100.0

원활한 분석을 위해 ‘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응답을 구분하고, 거주지역과 거주기간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5 미만의 기대빈도가 전체 셀의 87.5%를 차지함에 따라 피셔의 정확도 검정으로 유의확률을 파악하였다. 검정 결과, $p=0.791$ 으로 귀무가설을 채택함으로써 거주지역 별 거주기간은 유사하며, 모든 조사지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30년 미만의 거주했다는 응답은 비교적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거주기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응답자 중 산업시설 입지 이전과 입지 후의 변화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권에 영향을 준 상황에 대한 기억을 보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응답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토착민의 수는 지역공동체 내부의 결합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부록 2-6] 거주지역별 거주기간(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0.1~3년	4~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평생	합계
고대1리	1(6.7)	0(0.0)	0(0.0)	2(13.3)	3(20.0)	9(60.0)	15(100.0)
고대2리	2(14.3)	2(14.3)	0(0.0)	2(14.3)	7(50.0)	1(7.1)	14(100.0)
교로1리	0(0.0)	1(8.3)	1(8.3)	1(8.3)	4(33.3)	5(41.7)	12(100.0)

교로3리	1(7.7)	2(15.4)	0(0.0)	1(7.7)	3(23.1)	6(46.2)	13(100.0)
삼봉4리	2(6.1)	4(12.1)	3(9.1)	4(12.1)	10(30.3)	10(30.3)	33(100.0)
독곶1리	0(0.0)	1(7.7)	2(15.4)	0(0.0)	4(30.8)	6(46.2)	13(100.0)
화곡1리	0(0.0)	0(0.0)	3(12.5)	4(16.7)	11(45.8)	6(25.0)	24(100.0)
기타	0(0.0)	2(50.0)	0(0.0)	0(0.0)	2(50.0)	0(0.0)	4(100.0)
합계	6(4.7)	12(9.4)	9(7.0)	14(10.9)	44(34.4)	43(33.6)	128(100.0)
fisher정확검정(p)		0.791					

$p^* < 0.05$, $p^{**} < 0.01$, $p^{***} < 0.001$

설문응답자가 다양한 생업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복응답을 통해 주된 생업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농업(빈도수 70, 42.2%)이었으며, 나이가 많아 직업을 갖거나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은 두 번째로 많았다(무직, 빈도수 19, 11.4%). 가사노동(빈도수 14, 8.4%)이나 슈퍼 및 가게(빈도수 14, 8.4%)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발전소나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빈도수 10, 6.0%)도 존재했다. 기타(빈도수 11, 6.6%) 응답 중에는 건설관련업(빈도수 5), 공단 협력업체 근무(빈도수 1), 부동산중개업(빈도수 1) 등이 있었다.

[부록 2-7] 설문응답자의 주된 생업활동(중복응답)

(단위: 빈도수,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무직	19	11.4	슈퍼 및 가게	14	8.4
가사노동	14	8.4	민박 및 펜션	2	1.2
농업	70	42.2	청소, 식당, 그물손질, 건설일용직 등 아르바이트	6	3.6
어선어업	7	4.2	트럭운전 등 운수업	1	0.6
양식어업	2	1.2	발전소 및 산업단지 내 기업 종사	10	6.0
맨손어업	9	5.4	기타	11	6.6
식당	1	0.6	합계	166	100.0

설문응답자들에게 마을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직책’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80명(63.5%)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책이 ‘있는’ 경우(46명, 36.5%), 여성은 주로 ‘부녀회장(15명, 75.0%)’, 남성은 ‘이장 또는 청년, 노인회장, 총무(16

명, 55.2%)’의 경험이 있었다. 성별과 직책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32.441$, $p=0.000$ 로 유의수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립가설을 통해 성별과 직책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직책을 가질 경우 주로 부녀회장(15명, 75.0%) 등에 한정되나,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촌지도자 등 농업 관련 직책(4명, 13.8%)’, ‘환경 대책 및 개발관련 직책(4명, 13.8%)’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임우연(201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충남지역 여성 어가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53.25%), 어촌계장 166명 중 여성은 2명(1.2%)에 불과했다. 어촌지도자 협의회, 어업인 후계자, 마을개발위원회 참여율 또한 3~5%대에 머물렀다. 도내 어촌사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부록 2-8] 사회활동 및 직책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46	36.5
없다	80	63.5
합계	126	100.0

[부록 2-9] 성별에 따른 직책 종류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부녀회장	15(75.0)	0(0.0)	15(30.6)
이장 또는 청년, 노인회장, 총무	4(20.0)	16(55.2)	20(40.8)
농촌지도자 등 농업 관련 직책	1(5.0)	4(13.8)	5(10.2)
환경 대책 및 개발 관련 직책	0(0.0)	4(13.8)	4(8.2)
기타	0(0.0)	5(17.2)	5(10.2)
합계	20(100.0)	29(100.0)	49(100.0)
$\chi^2(p)$	32.441(0.000)***		

$p^* < 0.05$, $p^{**} < 0.01$, $p^{***} < 0.001$

부록3. 충남 서북부지역 주민 환경 인식 설문조사지

번호

충남 서북부지역 주민 환경 인식 설문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현재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남 서북부지역(당진, 서산)의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파악하려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 처리되어 연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는지 아래에 표기해 주십시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설문 중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소속: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지도교수: 조호제(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교수)

연구자: 김민성(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통계법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조사날짜: 2021년 ____월 ____일

○ 조사지: 고대1리/고대2리/교로1리/교로3리/삼봉4리/독곶1리/화곡1리/기타()

I. 통계를 위한 질문입니다.

SQ1. 성별을 알려주세요.

-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

SQ2. 언제부터 이 지역에 살게 되셨나요?

- ① 태어나서 지금까지 ② 이주하여 정착(기간: 약 _____년)

SQ3. 연령대를 알려주세요.

-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⑦ 80대 이상

SQ4. 생계를 위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선순위 두 개를 ✓ 해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무직
② 가사노동
③ 농업
④ 어선어업
⑤ 양식어업
⑥ 맨손어업
⑦ 식당
⑧ 슈퍼 및 가게
⑨ 민박 및 펜션
⑩ 청소, 식당, 그물손질, 건설일용직 등 아르바이트
⑪ 트럭운전 등 운수업
⑫ 발전소 및 산업단지 내 기업 종사
⑬ 기타(_____)

SQ5. 마을이나 지역에서 말고 계신 직책이 있으신가요?

- ① 있다(직책명: _____) ② 없다

Ⅱ. 일상과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 ① 일, 직장, 학교 등에 간다
- ②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지낸다
- ③ 친구나 이웃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다
- ④ 집 바깥, 복지관, 경로당, 동네, 시내 이곳저곳을 다닌다
- ⑤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
- ⑥ 기타()

2.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 ① 건강하다
- ② 문제는 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2-1~2)
- ③ 건강하지 못해 걱정된다(☞ 2-1~2)

☞ 2-1. (불편하시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두 개를 ✓ 해주세요.

- | | |
|------------------|--------------|
| ① 통풍, 만성 관절염 등 | ② 고혈압, 당뇨병 등 |
| ③ 비염·천식 등 기관지 질환 | ④ 안구 질환 |
| ⑤ 피부 질환 | ⑥ 두통, 뇌 질환 |
| ⑦ 우울증 등 정신질환 | ⑧ 암(질환명:) |
| ⑨ 기타() | |

☞ 2-2. (불편하시다면) 건강악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개를 ✓ 해주세요.

- ① 노화
- ② 유전이나 고질병
- ③ 건강관리 소홀
- ④ 노동 등으로 인한 반복 작업 및 자세
- ⑤ 발전소, 산업시설로 인해 나빠진 마을 환경
- ⑥ 기타()

3. 평소 기분은 어떠신가요? 두 개를 ✓ 해주세요.

- | | |
|--------|---------|
| ① 행복하다 | ② 편안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외롭다 |
| ⑤ 우울하다 | ⑥ 기타() |

Ⅲ. 환경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우리 마을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매우 좋다~매우 나쁘다’로 정도를 평가해주세요.

구분	매우 좋다	대체로 좋다	보통 이다	대체로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해당 없음 ³⁷⁾
① 수도, 전기,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						
②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						
③ 운동기구, 병원, 보건소 보건시설						
④ 가로등, 도로, 버스나 택시 등 도로시설 및 교통시설						
⑤ 학교, 학원,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시설						
⑥ 주민센터,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 4-1. (보통이다~매우 나쁘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7) ‘해당없음’ 항목은 ‘매우 좋다~매우 나쁘다’ 정도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설문응답자가 관련 시설과 무관하거나 ‘모른다’는 응답을 했을 경우에 적용하였다.

5. 우리 마을의 공기, 바다, 토지 등 자연환경은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 ① 좋은 편이다
- ② 나쁜 편이다(이유: _____)
- ③ 생각해 본 적 없다

6. 우리 마을 주변의 제철소, 화학공장, 발전소 등 산업시설이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지역발전 및 성장
- ② 지역상권 등 경제
- ③ 대기, 해양, 토양 등 자연환경
- ④ 가족, 이웃 등 사람들과의 관계
- ⑤ 기타(_____)

☞ 6-1.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Ⅲ. 환경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4~6번에서 응답하신 '환경 상황'을 토대로 말씀해주세요.

7. 위와 같은 마을 환경으로 인해 누가 가장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나와 가족
- ② 이웃과 우리 마을
- ③ 충남 지역
- ④ 충남 이외 지역
- ⑤ 국가
- ⑥ 기업이나 산업체
- ⑦ 기타(_____)

8. 위와 같은 마을 환경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8-1~2)
- ② 피해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8-1~2)
- ③ 피해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피해를 받았다(☞ 8-1~4)
- ④ 피해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 8-1. (피해를 받는다면) 누가 가장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 | | |
|---------|-------------|
| ① 나와 가족 | ② 이웃과 우리 마을 |
| ③ 충남 지역 | ④ 충남 이외 지역 |
| ⑤ 국가 | ⑥ 기업이나 산업체 |
| ⑦ 기타() | |

☞ 8-2. (피해를 받는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순위 두 개를 ✓ 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① 건강 상태 | |
| ② 마실 물, 식품 등 먹거리 상태 | |
| ③ 농업, 어업, 축산업 등 생계 수단 | |
| ④ 주택, 토지 등 재정적 부분 | |
| ⑤ 대기, 토지, 바다 등 자연환경 | |
| ⑥ 가족이나 이웃 등 사람 간 관계 | |
| ⑦ 사람의 성장이나 발전 | |
| ⑧ 기타() | |

☞ 8-3.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순위 두 개를 ✓ 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① 이웃들과 논의 | ② 집회 및 시위 |
| ③ 기자회견 등 언론 활동 | ④ 현수막 등 게시 |
| ⑤ 온라인에 글·사진 게시 | ⑥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 |
| ⑦ 행정기관에 민원, 탄원 | ⑧ 기업(오염주체) 등에 민원 |
| ⑨ 환경·시민단체 활동, 후원 | ⑩ 기타() |

☞ 8-4. (피해를 받았다면)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나요?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9. 위와 같은 마을 환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순위 두 개를 ✓ 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① 나와 가족 | ② 이웃과 우리 마을 |
| ③ 충남 지역 | ④ 충남 이외 지역 |
| ⑤ 국가 | ⑥ 기업이나 산업체 |
| ⑦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⑧ 기타() |

10.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로 배상, 보상을 받거나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 배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나 피해에 대한 대가 지급

* 보상: 수용, 국유화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

- ① 배상을 받은 적이 있다(☞ 10-1~2)
- ②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 10-1~2)
- ③ 배상과 보상을 모두 받은 적이 있다(☞ 10-1~2)
- ④ 배상이나 보상을 협의한 적이 있다(☞ 10-1~2)
- ⑤ 없다

☞ 10-1. (배상 또는 보상을 받거나 협의한 적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 | | |
|--------------------|---------|
| ① 배상금 | ② 보상금 |
| ③ 저장고, 복지관 등 시설 건립 | ④ 이주 지원 |
| ⑤ 진료, 의료비, 의료기구 지원 | ⑥ 기타() |

☞ 10-2. (배상 또는 보상을 받거나 협의한 적이 있다면) 배상이나 보상 절차에 참여했을 때 어떠셨나요?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11. 마을 환경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으세요?

11-1. 어디에서	11-2. 방법
①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① 검색 등 직접 찾아본다
② 충남도,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② 집으로 직접 찾아온다
③ 산업단지 등 기업에서	③ 문자나 전화가 온다
④ 뉴스나 인터넷에서	④ 우편물이 온다
⑤ 마을 이장, 청년회장 등 이웃이	⑤ 공고문을 붙인다
⑥ 가족이	⑥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다
⑦ 기타()	⑦ 기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 모든 설문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